건축사

大韓建築士協会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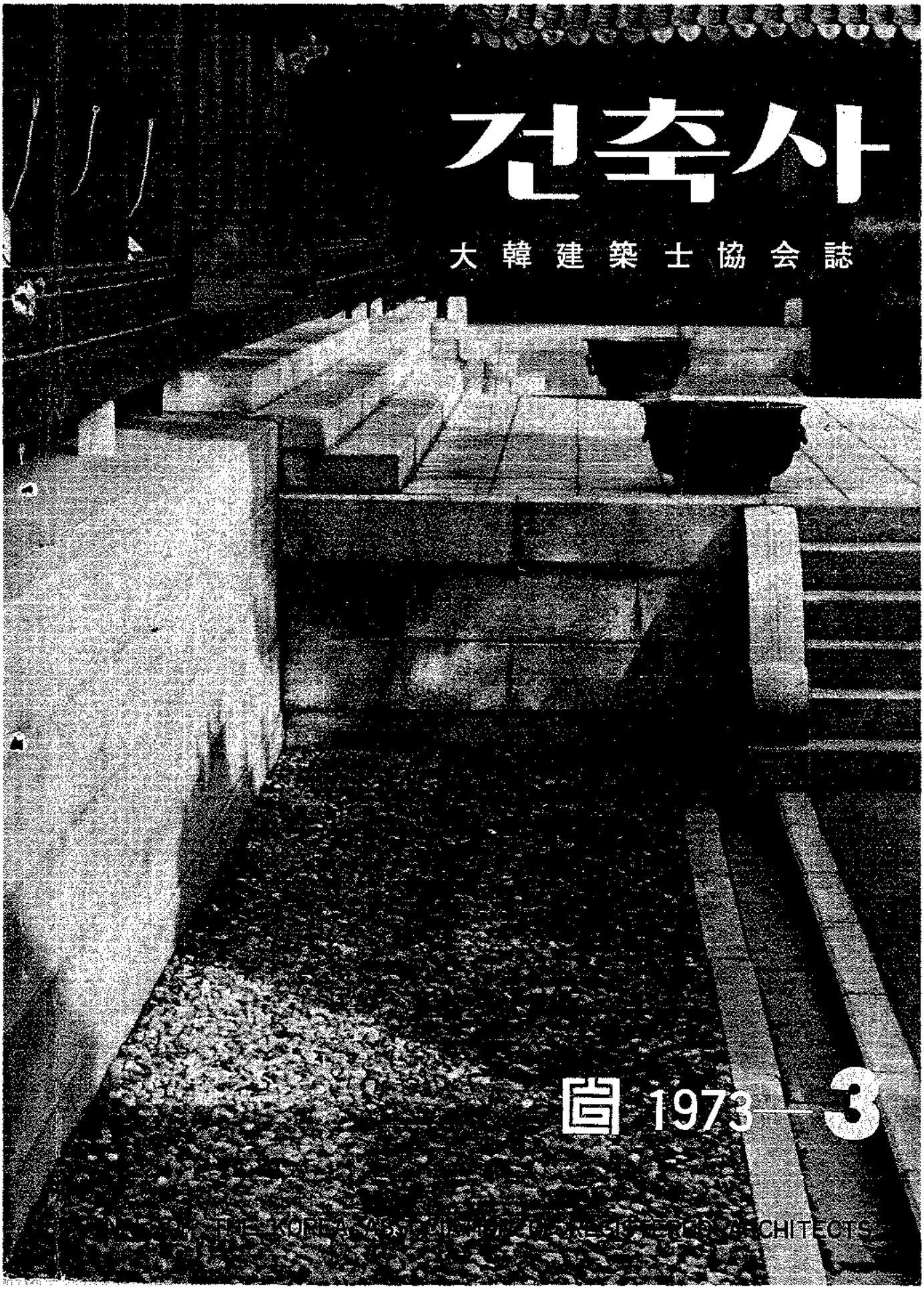

1973—3

THE KOREA ARCHITECT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난방 / 급탕겸용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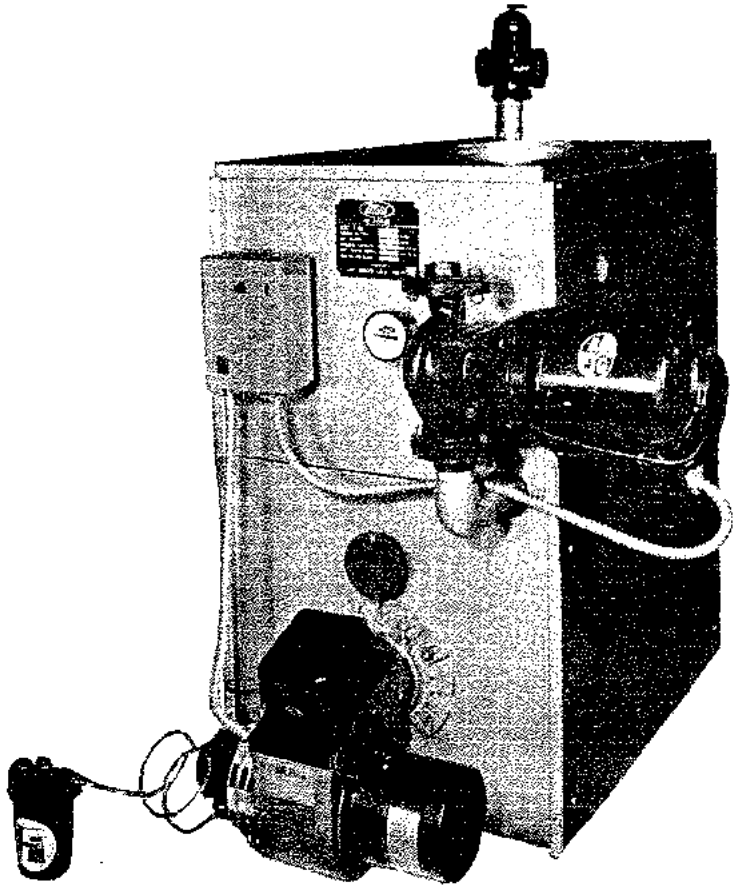

제조공급원

三 成 設 備 工 業 社

서울特別市 城東區 華陽洞 167～24號

☎ 55－1194·5519

待望裡에 드디어 建築界에 登場!

H－BAR式 T－BAR式 M－BAR式 輕量鉄骨天井틀

資材를 選択할 권한은 여러분들께 주어졌읍니다.
建築物을 火災로부터 解放시켜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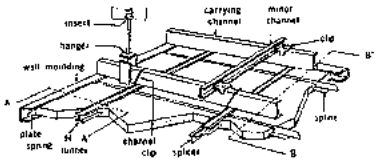

H－BAR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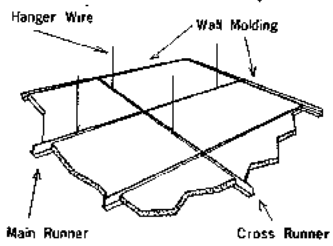

T－BAR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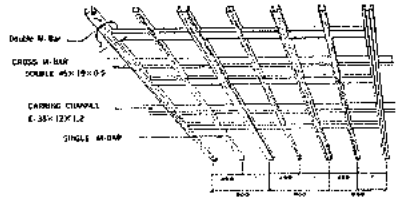

M－BAR式

用 途 빌딩·学校·病院·劇場
体育館·호텔·住宅·庁舍
講堂·其他

特 徵

① 不燃材料이므로 火災의 위험이 없다.
② 温度·湿度의 변화에도 變形이 없다.
③ 重量은 木材틀에 비하여 약 2/3 에 불과하다.
④ 組立式이므로 工期가 短縮된다.
⑤ 完全亞鉛鍍金이므로 腐蝕의 우려가 없다.
⑥ 堅固精密하며 壽命이 永久的이다.
⑦ 天井内外에 부수되는 모든 關聯工事의 施工에 便利하다.

(본사가 시공한 "남산맨숀아파트")

主要施工処

- 3·1로빌딩
- 정부종합청사
- 대한전자 부평공장
- 외환은행 부산지점
- 오산공군기지 막사
- 국립종합박물관
- 중앙제약
- 도큐호텔
- 한양식품공장
- 조선일보사
- 남산맨숀
- 센타빌딩
- 삼기물산공사
- 대구동산병원
- 세브란스빌딩
- 신탁은행 광화문지점
- 아카데미회관
- O. B. 맥주공장
- 무역회관
- 남산외인아파트
- 강원도청○○시설
- 팔당수력발전소
- 경북대학체육관
- 원호회관
- 마산문화방송국
- 한국조폐공사
- 대연각호텔
- 전매청중부지청

日本昭和造機KK와 技術提携

韓寶建設株式會社

本社및工場: 서울特別市 麻浦区 望遠洞五七番地
中央私書函5182号
☎ · 32－8288 · 34－1442

COPPER Z

코퍼— 제트 보일러

COPPER Z=銅水管三段式(Z式) 高性能特殊温水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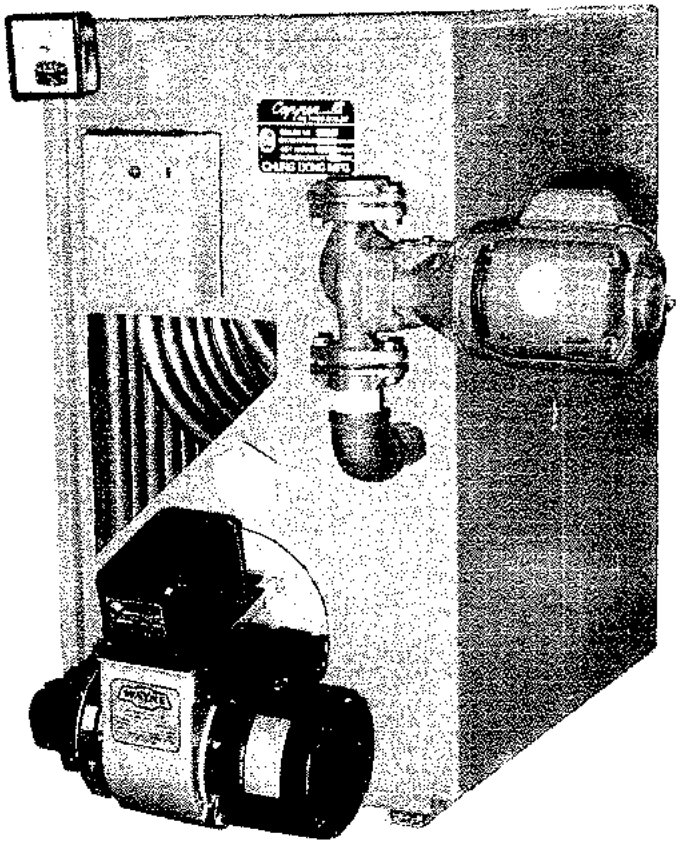

COPPER Z의 特性

1. 最大의 伝熱面積
2. 最長의 寿命
3. 最高의 熱伝導率

鋳 鉄	41	Kcal/mhr℃
鋼 鉄	46	〃
알미늄	175	〃
銅	320	〃

4. 特殊한 吸熱火室
5. 完全한 三段配煙
6. 炉와 配煙室의 特殊設計로 消除不要

東星設備工業社

서울特別市竜山区葛月洞 8 番地73号

TEL. 43-1576 27-8869

〈신발매〉

당신의 設計를 더욱 빛나게!

● 시멘트와 마벨코트만으로 건축미의 극치를

붓을 상하로
움직인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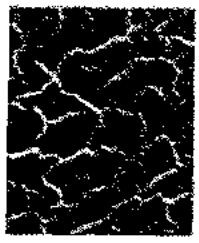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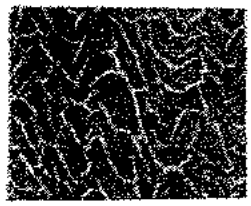

붓을 파형으로
움직인 예

耐燃性
內外
塗裝材

고운색·高尚한 質感·絵画的 패턴

마벨코트®

특성

■ **耐燃性입니다.** 引火性이 없고 強한 火焰에 닿아도 炭化하는 程度이고 延燃性이 없읍니다.

■ **絵画的으로 模様을 構図할 수 있읍니다.** 下塗에 対한 도요마—벨의 塗布方法에 따라 各種各色의 絵画的 模様을 構図할 수 있고 下地의 빛깔과 配色에 따라 아름다운 意匠을 構成합니다.

■ **耐候性, 耐摩耗性, 耐薬品性이 優秀합니다.** 安定된 合成樹脂이므로 変退色, 剥離, 亀裂되지 않고 耐알카리, 耐酸, 耐油性이 強합니다.

■ **接着性이 強하고 耐水性이 優秀합니다.** 接着性이 優秀한 特殊 樹脂로서 皮膜을 構成함으로서 接着力이 強하고 耐水性이 優秀합니다.

■ **速乾性이기 때문에 作業이 빠릅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영구적이다.

용도

● 建築의 內外装 ● 各種工業用 2次加工 ● 各種鉄板 ● 各種 물탈·부록·하드보드·스레트·피혁·푸라스틱

※ 마벨코트 下塗用은 防水의 効果가 큰 새로운 건축도장재 이다.

營業部 직통 (26) 1806·4509·8520 (27) 1730

日本東洋化成技術製 原料提供 / 도요마벨코트株式会社

韓国
総販

泰隆興業株式会社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46-8 (太光빌딩 201·202·203호)

建築士

'73
3

通巻 第53號

U. D. C. 69/72 (054~2) : 0612 (519)
1973년 3월 31일 발행

協会記事 …… (3)
建築界動靜 …… (6)

懸賞設計의 問題点

■ 懸賞設計 競技에 따르는 問題点과 우리 建築士의 자세 …… 金 熙 睿 …(14)
■ 懸賞設計에 대한 나의 所信 …… 金 正 澈 …(16)
■ 우리의 懸賞競技는 이런 길을 걸었다 …… 元 正 洙 …(17)
■ 作品과 審査 …… 尹 太 鉉 …(21)

現代教会建築 小考 …… 金 正 澈 …(24)

都市計劃에 있어서의 規制 및 統制② …… 申 東 海 譯 …(40)

콘크리트의 高強度化의 傾向 …… 吳 昌 熙 …(47)

베를린 필하모니 音楽堂 …… 울겐 · 에디케 …(50)

会員作品

● 別莊 …… 宋 基 德 …(34)
● 住宅 …… 洪 哲 洙 …(36)
● 住宅 …… 俞 景 哲 …(37)
● 내자호텔 …… 李 興 秀 …(38)

海外建築(劇場建築編)

● Iowa 州立大學 講堂 …… 外誌에서 …(54)
● Helsinki 콘서트 홀 …… 〃 …(58)
● Mannheim 劇場 …… 〃 …(62)
● Münster 劇場 …… 〃 …(64)
● Kassel 劇場 …… 〃 …(66)

建築法 解説① …… 張 泰 洙 …(67)
消防法 …… (75)

編纂委員会

委員長 安 瑛 培
委 員 金 萬 盛
安 仁 模
元 正 洙
劉 熙 俊
尹 太 鉉
李 丞 雨
李 昌 敏
李 興 秀
韓 鼎 燮

■ 表紙 : 昌德宮 宮殿 안의 大造殿
撮影 : 元 大 淵

1973年度 第一回

臨時総会 開催

3月 24日、建設会舘大講堂에서

本協会 1973年度 第一回 臨時総会가 지난 3月 24日(土)午前 10時 30分에 建設会舘 六層大講堂에서 全国代議員 175名 中 125名 出席裡에 始終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72年度 歳入歳出 決算 및 '73年度 追加更正予算案을 執行部의 原案대로 無修正 通過시켰다。

또한 会員은 二重職을 겸할 수 없도록 制定한 倫理規約 및 倫理委員会의 発議를 現行 5日에서 10日로 늘린 倫理委員会規程 等 改正案도 無修正 通過시켰다。

그리고 이날 対官庁 및 모범職員에 対한 감사패와 표창패도 수여 되었는데 그 名単은 다음과 같다。

(対官庁)

박 우 하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局 建築課長)
장 태 수 (建設部 住宅都市局 建築担当官室, 建築技佐)
김 영 철 (〃)
강 수 웅 (서울特別市 建築課 行政係 行政主事)
정 의 준 (江原道 建設局 都市計劃課 都市係長)
최 용 묵 (大田市 建設局 住宅課 建築係長)
최 수 일 (光州市 住宅課 建築係長)

(対 職 員)

고 진 학 (本協会 서울特別市 支部事務長)
김 용 진 (本協会 全南支部 事務長)
양 태 호 (本協会 済州道支部 〃)
강 숙 렬 (本協会 서울特別市支部 경리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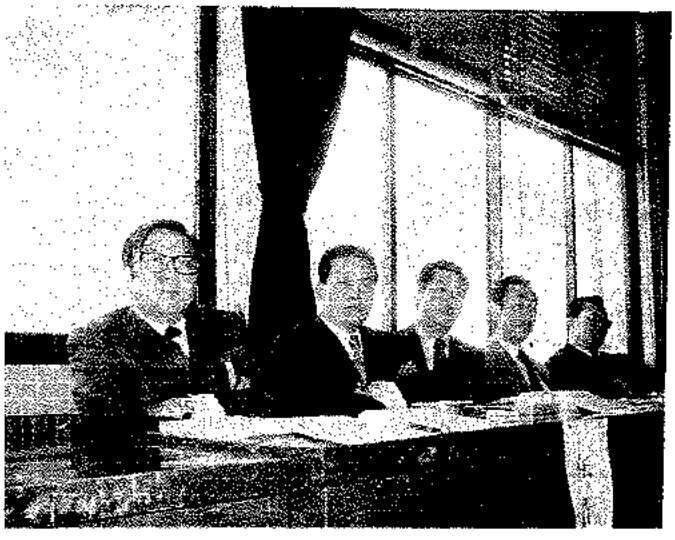

協会記事

제4회 이 사 회

일시 : 1973. 3. 12. 14 : 35

장소 : 협회 회의실

출석 : 회장 강대웅, 이사 구윤회, 김지태, 송관식, 오웅석, 안영배

참석 : 감사 윤희준, 서울시지부장 이규복

보고사항

1. 제1회 지부장회의 개최
   (Fy 72 결산(안), Fy 73 추가갱정예산 (안) 을 토의하기 위해 2.23 개최)
2. 건설부장관에게 무등록 건축사무소 시정조치 요청(3. 3)
3. 각시도지부 대의원 명단제출 촉구(3. 7)
4. 제1회 기획위원회 개최
   (Fy 72 결산(안), Fy 73 추가갱정예산 (안) 을 검토하기 위해 3. 9 개최)
5. 각 시도지부에 정회원 회비 납부 촉구(3. 10)

부의안건

1. Fy 72 결산(안)
   (원안대로 결의)
2. Fy 73 추가갱정예산(안)
   (원안대로 결의)
3. 윤리규약 및 윤리위원회 규정 보완(안)
   (원안대로 결의, 총회에 부의키로 함)
4. 2월분 현계표
   (원안 승인)
5. Fy 73 월별자금 사용계획
   (원안대로 집행할 것을 결의)
6. 회관 건립 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으로서 회장, 총무이사, 김지태, 송관식, 김원안으로 구성할 것을 결의)
7. 직원 및 관계공무원 표창 수여
   (협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표창키로 결의)
8. 총회일자 결정
   (3.24(토)에 개최키로 결의)
9. 총회예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결의)
10. 찬조회비 징수의 건
   (신입회원이 아닌 기 회원에게는 찬조회비를 징수치 못하도록 결의)

協會動靜

서울特別市支部

도서등록 강화에 대한 업무연락

도서등록강화의 일환책으로 오는 3월 1일부터는 도서등록시 보조원은 필히 본지부가 발행한 보조원 신분증 또는 수첩을 소지 제시하여야 등록을 필하여 주도록 간사회의에서 결의되어 시행코저 하오니 해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회원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환도 보조원으로 인정할 것이오니 신분증 미발급 받은 보조원은 시급히 발급받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연락 (국민주택 채권 첨가 매입에 관한 건)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6518호 (1973.2.26)로 공포 되였기 건축허가에 필요한 국민주택 채권 첨가 매입 대상 및 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필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보 73.26 제6386호(그 2)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표

첨 가 매 입 대 상	단위 : 원 첨가 매입 금액
건축허가 :	
가. 철근 및 철골조	
(1) 주택용(총연면적 165평방미터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0
(2) 주택산업병용(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 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2,000
(3) 상업 및 써비스(총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 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3,000
나. 연와조 석조	
(1) 주택용(총면적 165 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 165평방미터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2) 주택산업병용(총면적 165평방 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3) 상업 및 써비스(총면적165평방 미터이상 또는 총면적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2,000
다. 시멘 벽돌 부럭조	
(1) 주택용(총면적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2) 주택산업병용(총면적165평방 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165 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3) 상업 및 써비스(총면적165평방 미터 이상 또는 세대당 총면적165평방미터 이상)	3.3평방미터당 1,000

설계변동 동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설계변동 동의서 작성을 별첨 양식과 같이 변경하오니 각 회원께서는 업무 처리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 의 서

대지위치 :

건축주 성명 :

용 도 : 면적 :

상기 건에 대하여 본인이 설계도서 담당하였으나 타 회원이 설계 변경하여도 이의없기 동의하나이다.

197 년 월 일

동의자 사무소명 :

건축사명 : 인

귀하

건축법

법률 제2434호(72. 12. 30)로 개정된 건축법을 인쇄하여 배부하오니 필요하신 회원은 본지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크기 : 15.8cm×21cm

가격 : 150원

會員動靜

서울特別市支部

慶吊

李鐘泰会員(신창건축기술공단 대표)은 宿患中 지난 一九七三年 三月二日 自宅에서 別世.

羅相振会員(羅相振建築設計事務所 代表)은 宿患中 一九七三年 三月二十二日 午後四時 自宅에서 別世.

新入會員

박행일	(트란스 아세아 주식회사)	
	龍山区 漢南洞738－24	(54)-8212
윤태수	(송림건축연구소)	
	中区 저동2 가48-7	(26)-5460
이창고	(신일건축사무소)	
	城北区 三仙洞 5 가334	(93)6223
최상혁	(최상혁건축설계사무소)	
	東大門区 면목1동497－1	(97)1972
김동환	(한성건축연구소)	
	西大門区 합동 27의3	(74)8438

事務所移転

최정석 (원창건축연구소)
영등포구 화곡동342－54 (62)9011交144

이백길 (동방건축연구소)
종로구 도렴동132－2 (73)6726

김원모 (삼익건축설계사무소)
中区 茶洞58 (23)7694

안정환 (유진건축기술 공사)
永登浦区 사당동88 (69)4411交1312

임길생 (한국건축기술연구소)
中区 乙支路2 가 148－28 (27)4013

고주석 (고주석 건축조경계획연구소)
麻浦区 합정洞 368－9 (33)7170

유재현 (중진건축기술공사)
東大門区 신설동76－41 (93)1138

송기덕 (정일건축연구소)
종로6 가 289 (292)-3865-6
(동대문 종합상가A 동)

전우대 (태평종합건설)
西大門区 북변동144－65 (38)0808

구용환 (도일종합건축연구소)
城東区 홍인동122 (52)4615

이윤형 (그랜드건축연구소)
中区 忠武路2 가63－2 (22)2906

김진성 (삼광건축연구소)
永登浦区 永登浦洞2 가 195 (62)1800

김보현 (현대건축연구소)
中区 乙支路 2 가199－41 (28)5491

김창현 (신화건축공사)
中区 회현洞2 가6 (24)1300

休業会員

김봉용 (대영건축설계사무소)
永登浦区 사당동243 (69)9711교1290

김성은 (육일건축사무소)
中区 忠武路4 가36－43 (26)4070

민병구 (광덕건설공사)
城北區 번동607－2 (99)2695

再開業会員

김동표 (바램건축공사)
西大門区 응암동117－1 (39)0909

신정환 (대흥건축설계사)
麻浦区 麻浦洞155－1 (32)9022

済州道支部

事務所移転

梁昌完(一級) (東南建築設計事務所)
済州市 一從一洞1487 TEL3485

金泰益(二級) (新星綜合建築設計事務所)
済州市 三從一洞199의7 TEL2280

〈新刊案内〉

工事檢査의 實際(Ⅰ)
〔監理・施工・參考資料〕

譯 者：大韓建築士協會 京畿道支部 事業部
發行所：理 建 社
總 販：昌林工學社
TEL. 33－6887, 26－3832
값 5,000원

綜合 積算資料
綜合 物價情報

發行 社團法人 韓國産業經營技術研究所
總販 숭 문 서 림(영등포)
TEL. 62－5591
一年 定期講讀料 10.000원

建築界動靜

建設部에 産業立地局을 新設

政府는 지난 6日 輸出 1백억 달러 達成을 위한 基盤造成을 위해 建設部 産業立地局을 新設하고 職制도 아래와 같이 改正했다.

①産業立地局→立地計劃課, 団地造成課, 工業用水課, 工業港課

② 国土計劃局→国土計劃課, 地域計劃課, 土地政策課, 土地利用計劃課, 公園課

③ 住宅都市局→都市開発課

市民会館 新築設計 112名 応募

그 동안 서울市에서 公募中에 있는 市民会館 設計에 総 112名이 応募 中請했는데, 오는 4月20日 作品을 마감하고 4月末에 当選作을 発表할 予定으로 있다고 한다.

서울大学校 附属病院 外來診療所 復旧 設計用役 構美建築研究所에서 担当

構美建築研究所(代表 申明洙)에서는 지난 1月 25日 火災로 焼失된 外來診療所를 復旧키 위한 設計用役으로서 延建坪565坪規模의 建物設計와 이에 따른 附帯設備이다.

四層以上 建築物에 自衛消防隊 層別로 編成, 待避施設 具備

治安局은 오는 5月8日 부터 施行되는 改正消防法에 따라 4層以上의 高層建物에 対해 各層別로 自衛消防隊를 編成하고, 各層마다 待避施設을 具備토록 全国 5,054個의 建築主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自衛消防隊는 각 층별로 消防班, 급수班, 待避班, 구호班 等으로 編成, 毎月 15日에 自体훈련을 実施하고, 待避시설은 層別로 基準을 設定. 二, 三層은 30名 単位로 로프와 금속, 사다리를 4~5層은 50名꼴로 금속사다리와 구조대, 6~10層은 100名꼴로 구조대와 완강기, 12層以上은 옆 건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교와 屋上으로 올라가는 타랍等을 오는 年末까지 갖추도록 시달 했다.

故 素湖 羅相振 会員 永訣式 挙行 建築家協会葬으로 芸総会館 広場에서

韓国建築家協会 副会長이며, 本協会 서울 特別市 支部 会員(羅相振 建築設計 事務所 代表)인 氏는 오랜 宿患中 지난 三月二十二日 自宅에서 逝去 三月二十四日 芸総会館 広場에서 「韓国建築家協会葬」으로 많은 建築界人士의 哀悼속에서 永訣式을 엄숙히 挙行했다.

한편 이날 建設協会 大講堂에서 (三月二十四日 午前10時부터) 開催된 本協会 臨時総会에서 故 素湖 先生에 対한 追悼式도 겸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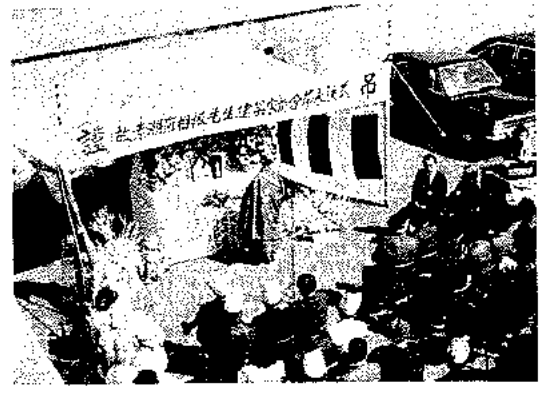

서울市 住居専用 12個地域 新設

—公害予防, 環境浄化 위해 —

— 新築建物은 2層以下로 規制 —

서울市는 3月 15日 西大門区 平倉洞 等 市内 12個 地域을 住居専用地域으로 設定했다.

그리고 이 地域内에서 新築되는 建物은 2層 以下로 規制키로 했다. 이 計劃은 서울市가 아파트 및 事務室 等 高層建物의 난립으로 住民들에 対한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런 현상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처한 것으로, 都市計劃上에 住民地域으로 돼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住居専用地域과 準住居地域으로 区分 設定하려는 것이다.

서울市는 이 計劃에 따라 第一段階로 이미 城東区 능동의 어린이 大公園 周辺一帯 1,04km² (31 万坪)을 住居専用地域으로 確定告示 後 이번이 第2段階로 現在 計劃調査가 完了되어 統制한 12個 対象地域은 다음과 같다.

1. 平倉洞, 旧基洞一部 (1,010km²)
2. 城北区 城北洞 2 街一部 (1,180km²)
3. 누상동, 누하동, 통인동, 필운동, 청운동, 신교동, 궁전동, 사직동 一部 (1,040km²)
4. 가회동, 원서동 (300km²)
5. 신문로 2 街, 내수동一部 (270km²)
6. 이태원동 一部 (337.5km²)
7. 한남동, 외인주택一部外 (112.5km²)
8. 한남동 住宅改良地区一部 (200km²)
9. 南山洞 一部 (50km²)
10. 장충洞 2 街一部 (230km²)
11. 영동 잠실地区 一部 (3,820km²)
12. 연희동 一部 (240km²)

一月中 全国建築許可面積 39万 4 千m²
昨年 同期에 比해 55.7% 增加

一月中 全国 建築許可面積은 総 39万 4千m² 로서, 지난해 同月 実績인 25万 3千m²에 比해 55. 7%나 增加되었다.

建設部가 集計한 一月中 建築許可面積을 用途別로 보면 昨年에 비해 工業用 建物이 236.4%나 增加하고, 文教, 社会, 其他 建物이 67.9%. 商業用이 33.3%, 居住用이 18.4%增加되었다.

이 実績을 構造別로 보면 煉瓦 및 石造建物 은 昨年 同月에 比해 90.7%가 增加. 鉄筋, 鉄骨造는 51.6%, 木造建物은 33.3%, 其他 建物은 17% 各各 增加된 것으로 나타났다.

一月中 全国建築許可面積 (構造別)

鉄筋, 鉄管	188,000 m²
煉瓦, 石造	143,000m²
木 造	8,000 m²
其 他	55,000 m²
計 394,000m²	

(用 途 別)

住 居 用	148,000m²
商 業 用	88,000m²
工 業 用	111,000m²
文教, 社会, 其他	47,000m²
計 394,000 m²	

監査院 技術室 大幅拡張
分野別로 担当官制 新設

政府는 3月5日字로 官紀確立의 一環策으로 監査院 技術室을 大幅拡張하여, 分野別로 担当官制를 新設했는데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 土木担当官 (土木技正) 李武鎭
- 建築担当官 (建築技正) 朴麟浩
- 電気担当官 (電気技正) 金鍾和

土地評價士免許制 実施

建設部는 国土利用管理法이 오는 3月31日 부터 発効 施行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土地評價士의 免許試験을 4月1日 実施키로 했다.

이는 経済発展에 따라 地価対策의 必要性은 더욱 切実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土地評価士制度는 先進各国에서 오래前부터 確立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国土利用管理法에 그 根據를 마련 이번에 처음으로 実施케 된 것이다. 土地評価士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基準地価의 調査 評価

② 基準地価 告示地域内에 있어서公共施設 用地의 評価와 土地収用時 補償額 算定基準을 위한 評価.

③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開発予定 区域의 基準地価告示를 위한 調査 評価.

④ 其他 受託에 의한 調査 評価 等이다.

서울市 全域 建物에 番號制
図上演習 끝나 立法되면 実施

서울市는 現行 住居表示인 番地制度가 住所만가지고 집을 찾는데 어려운 点이 많아 새로운 住所表示計劃을 세우고 明'74年 부터 総 事業費 16억원을 들여 10個年間에 걸쳐 年次的으로 施行키 로 했다.

이는 서울市가 新住居表示(블럭方式)를 위해 昨年 8月初부터 10月末까지 90日間에 걸쳐 "하우스 넘버 씨스템" 方式에 의한 新住居表示制度의 図上作業결과 新住居表示制가 可能하다는 결론을 얻고 앞으로 「住居表示에 関한 法律」이 立法되면 実施하겠다고 発表했다.

建築士会舘 建立準備委 発起委員
本協会 姜大雄 会長 等 5人 選任

本協会는 会舘建立準備委員会 構成을 위한 発起委員으로 本協会 姜大雄 会長과 具琉会, 金枝泰, 宋寛植 理事와 金源安 監事 等 5人을 選任했다.

特定地開発法 서울에 첫適用

높이, 규모, 모양 規制

서울市가 20個地区 15万坪을 再開発地区로 선정, 이를 촉진하게 된 것은 지난 年末「特定地区 開発 촉진에 関한 임시조치法」이 제정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인데 75年末까지 時限法인 이 임시조치법은 大都市周辺地区의 새로운 市街地造成을 촉진하고, 이미 들어선 市街地에 대해서도 都市 美観을 위해 街区 単位로 建築物의 높이, 규모, 모양 等을 정비할 수 있게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再開発基本方向에 맞도록 再開発 事業을 申請하면 不動産投機抑制税, 登録税, 不動産 営業税, 財産税, 取得税, 免許税, 都市計劃税 等 7種의 税金을 免除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市가 規定하고 있는 再開発事業地区와 各地区의 地域別 特性 與件 等의 内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小公地区(4천坪)

市庁앞 광장 前面에 位置한 속칭「차이너·타운」事務室이나 호텔 等으로 한층 利用度가 높다.

② 서울駅~西大門(2만 6천평)

서울역에서 義州路 1, 2街, 巡和洞 一部를 포함, 西大門까지 가는 地域. 잡다한 판잣집等 4百24棟이 들어차 있다.

西小門 陸橋의 可視거리내 美観이 볼만하다.

③ 三角洞 (2천5백평)

朝興銀行 本店 뒷면 一帯, 古家들이 들어차 있는데 商街地域으로 開発 可能.

④ 長橋洞(2천8백평)

清溪川 2街의 南쪽. 各種機械商들이 들어차 있는데 商街地域으로 開発可能.

3·1高架道路 주변의 美観造成과 1백 5棟에 달하는 不良建物 整理로 開発이 時急한 곳.

⑤ 積善洞(1만1천8백평)

政府綜合庁舎 뒤쪽의 전형적인 韓屋地帯, 住居地域 으로서의 機能을 할 수 있는 곳.

⑥ 光熙洞(9백평)

光熙陸橋 옆. 뒤편에 장충공원을 끼고 있어 전형적인 住居地域.

⑦ 南大門(1천평)

南大門에서 도쿄호텔間. 간선도로변에 위치. 商街, 호텔, 사무실 等으로 開発可能.

⑧ 長沙洞(2천2백평)

청계천 3가 北쪽. 商街地域으로 開発可能.

⑨ 明洞(2천5백평)

中央우체국에서 明洞入口間, 百貨店等 쇼핑센타로서 전형적인 商街 구실을 할 수 있다.

⑩ 乙支路5街(1천7백평)

서울師大 부속국민학교 옆. 平和市場을 끼고 있어, 市場으로서의 開発이 可能하다.

⑪ 武橋洞(7천 6백평)

서울의 最中心部에 位置, 商街事務室, 호텔, 유흥업소 等 各種業務地域으로 開発可能.

⑫ 瑞麟洞(1만4천5백평)

(内容 同一)

⑬ 茶洞(2만 2천 6백평)

(内容 同一)

⑭ 観水洞(2천 7백평)

청계천 2街에서 3街 사이 商街地域.

⑮ 笠井洞(2천 4백평)

청계천 3街 南쪽, 商街地域.

⑯ 南大門路3街(2천1백평)

南大門에서 新世界백화점間 一帯, 市場, 商街, 百貨店 地帯.

⑰ 太平路2街(4천2백평)

南大門에서 덕수궁間, 호텔, 사무실等 業務地域.

⑱ 鍾路5街(4천 5백평)

東大門区 綜合商街 뒷면 一帯에 東大門 市場을 끼고 있어 市場地域 等으로 開発 可能.

⑲ 서울運動場(1만 1천평)

서울운동장 왼쪽. 영세민판자촌 2백43棟이 들어차 있다. 商街地域.

⑳ 宗廟앞(2만 3천평)

宗廟앞 一帯, 韓屋 밀집地帯인데 開発後엔 전형적인 住居地域.

国土利用管理法 施行令 発表

4月부터 地価告示制, 利用制限 明示

張礼準 建設部長官은 2月16日, 지난 年末확정된 国土利用管理法에 따른 国土利用管理法 施行令(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月 31日부터 施行한다고 밝혔다.

張長官은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이 시행령은 基準地価地域을

① 都市計劃区域과 그 주변 地域

② 工業開発장려地区, 輸出自由地域, 輸出産業 工業団地 및 機械工業団地와 予定地域.

③ 国民住宅建設団地

④ 道路, 鉄道等 公共施設 設置 予定地와 周辺 地域.

土地利用制限内容

用途地域	用途地区	行為制限 内容
都市地域		都市計劃法摘用
農業地域	耕地地区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摘用
	聚落地区	禁止 : ①公害工場(公害法 3조에 따른 排出物허용기준량 이상의 제조工場) ②위험물저장소(消防法 63조에 의한 油類, 火薬類저장소 等) ③광업용시설, 建築物 및 工作物 許可 : 指定目的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것
山林地域	山林保全	山林法 摘用
	開発촉진	許可 : ①住宅用地 1,700m² 이상 ②工業用地 3,300m² 이상
工業地域	工業専用	許可 : ①工場 및 그 社宅 ②鉱山物선광장 ③창고, 野積場, 화물적치용 건축물 및 工作物 ④자동차 주차장 ⑤農·畜産業用 建築物 및 管理用 建築物 ⑥종업원 후생시설 ⑦기타建設部令指定施設 等 禁止 : 許可사항 以外의 것
		禁止 : ①火葬場, 納骨堂 및 묘지 ②公害工場 ③重化学工場 1. 비스코스인견섬유 2. 아스데이트인견섬유 3. 고무가루촉진제 ④사카린 ⑤피혁제조 ⑥펄프제조 ⑦제 철 ⑧精油 및 석유화학 ⑨시멘트 ⑩비 료 ⑪酸 알카리 ⑫板유리 許可 : ①공업용지 6,600m² 이상 ②住宅団地 3,300m² 이상 ③重化学工場 以外의 바닥면적 200m² 이상 공장 ④학교延面積 3,300m² 이상 ⑤其他바닥면적 200m² 이상

⑤ 其他 保全이나 開発이 必要한 地域等으로 規定, 이 地域에 対해서는 土地의 地価를 調査 評価하여 基準地価를 告示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公共施設用地를 買収 하거나 土地를 収用할 때는 보상비 산정기준으로 이 基準地価를 摘用받게 된다. 張長官은 또 이 施行令은 土地의 利用制限을 구체적으로 규정, 했으며 (別表内容) 앞으로 각 道知事는 用途地区 指定에 関係없이 水害常習地区를 設定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施行令은 또 基準地価를 조사 評価할 土地評価士의 자격을 規定, 試験을 거쳐 建設部長官 의 免許를 받도록 했으며, 土地評価士가 業務를 開始하려면 반드시 事務所의 開設을 등록하도록 했다.

	자연환경	公 園 法 적 용
自然및文化財保全地域	文化財	都市計劃法摘用 (19조)
	관광휴양지구	관광사업진흥법적용(坐地 또는 부지면적 이나 건축물의 延面積이 330m² 이상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海岸保全地区	許可 : ①土石, 砂礫의 채취 및 立木벌채 ②工作物의 新·改·増築 ③土地形質변경
	水資源保全地区	禁止 : ①工場(수산물加工제외) ②遺棄作為 ③牧 場 許可 : ①水産物加工工場 ②公有水面 매립工事 ③준설工事 ④採鉱 ⑤수산물 하역시설, 저장시설等

釜山影島電話局庁舎新築設計用役 金鍾植建築研究所에서

金鍾植建築研究所에서는 釜山影島電話局庁舎 新築設計用役을 担当했다고 한다.

이 設計用役事業은 올해 2억 4천 4백37 만원을 들여 新築할 地下 1층, 地上 5층, 延建坪 2천 4백 43坪의 庁舎新築建物에 対한 設計를 作成 하려는 것인데 設計書 納品期間은 오는 4월 12일 까지라고 한다.

四層 以上 建物, 火災保険 加入 対象은 5千棟 推定

오는 7月1日을 기해 4층 以上 建物. 各種営業場 等 特殊建物에 対한 火災保険加入을 의무화시킨 政府는 対象地域을 우선 서울, 釜山 等 4大都市를 첫단계대상지역으로 삼고, 점차 都庁所在地以上의 都市로 확대해 갈 방침인데 対象 建物은 約 5千棟으로 推定되고 있다.

金浦国際空港 綜合庁舎 拡張 및 改良設備設計用役 李海星 綜合設計事務所에서 担当

李海星 綜合設計事務所에서는 金浦国際空港 綜合庁舎拡張 및 改良設備設計用役, 随契案을 原案대로 同意했다고 한다.

이 用役의 工事費는 7億2千1百48万원과 1億4千万원이 各各投入된다.

設計用役費는 1千2百95万원이라고 한다.

中央職業訓練院의 「作業訓練用 作業場」 新築 設計用役 世代建築研究所에서

世代建築研究所(代表 李鍾金)에서는 中央職業訓練院에서 要請한 「作業訓練用作業場」新築을 위한 設計用役을 担当했다.

이 設計用役은 올해 2천9백64만원을 들여 新築하려는 것인데, 電気熔接室 100m²를 비롯, 가스熔接室 80m², 板金作業場 120m², 工具室(2室)12m², (更所 20m², 教師室 15m² 等 総 3백65.5m²에 達하는 建物을 設計한다고 —

都市計画区域. 小規模住宅制限

3月12日 経済長官 会議는 特定地区 開発促進에 関한 臨時措置法 施行令을 마련 住宅 建設促進地区로 指定될 対象地域은 서울特別市와 釜山市의 都市計画区域에 限定시키고 이 地域内의 税制가 免除될 住宅種別規模를 規定했는데 그 内容은 다음과같다.

① 單独住宅은 建築面積이 20坪以上 坐地規模 50坪以上

② 連立住宅은 建坪 30坪 以上. 坐地70坪 以上.

③ 共同住宅(아파트)는 建築面積이 1百坪以上.

世帯当 建築面積은 18坪 以上. (賃貸用住宅은 13坪 以上) 으로 定하여 小規模住宅建設을 税制面 으로 制限시켰다.

또한 住宅建設促進地区 内에서 분양 또는 賃貸를 目的으로 100戸 以上의 住宅을 集団的으로 建築하는 者는 住宅事業計画書를 作成하여 관할 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全北編

全州市 어린이 大公園 建設 建設敷地는 德津湖畔 内定

全州市 当局은 動植物園, 어린이 会館 等 建設計画에 関한 都市計画変更을 建設部에 申請했다.

同 計画의 建設敷地은 德津湖畔으로 内定했다. 이 어린이 大公園化 計画은 가련산과 취향정, 조경단 等 地理的 立地的 與件을 勘案하여 이 一帶를 計画에 包含시킬 予定이라는데 가련산 附近에는 緑地帶를 形成하고 가련산과 취향정을 잇는"케이블-카" 設置도 아울러 構想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린이 大公園敷地 2만6천余坪에 対한 代金은 오는 6月末까지 全額을 支拂하게 된다고 한다.

慶北編

各 邑面에 農村標準住宅을 建設

慶尚北道는 各邑面当 3棟의 農村標準住居를 建設토록 各 郡守에게 指示했다.

이는 特히 計画된 農村標準住宅을 変更하여 建設하지 않는 邑面이 없도록하고 마을지도자와 住民들의 施工과정을 직접 見学해서 그 技術을 습득할 수 있는 시범住宅으로써 널리 보급토록 指示했다.

瑞山郡 市計画用途 地域 一部変更 住居地域 줄여 商業地域 으로 編入

建設部는 瑞山郡 市計画用途地域의 一部를 変更告示(제75호)했다.

이는 既定 住居地域 面積 5백42만m² 中 2만7천5백m² 를 商業地域으로 編入한 것을 内容으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住居地域은 5백39만2천5백m² 로 줄어든 반면에 商業地域은 43만3천5백m² 로 늘어났다.

慶北 龜尾工業団地 拡張
区域面積 7,483万m²로 늘려 用途再調整
(漆谷郡 北三面 吳太洞 等 새로 編入)

建設部는 慶北 龜尾工業団地를 拡張하기 위한 都市計劃変更을 告示 (제 87호) 했다.

이는 当初 都市計劃区域인 善山郡亀尾邑 全域과 漆谷郡 仁同面 陽湖洞 一部, 그리고 北三面 洛溪洞 一部 外에도 北三面 吳太洞 一部를 새로 編入시켜 当初7천만m² 였던 都市計劃区域面積을 7천4백83만m² 로 4백83만m² 나 늘린 것을 内容으로한 것인데 이에 따라 用途 地域도 아래와 같이 再調整되었다.

① 住居地域 6백10만m²
② 商業地域 38만m²
③ 工業地域 1천48만4천m²
(5백96만4천m² 增加)
④ 緑地地域 5천7백86만6천m²
(1백13만4천m² 減縮)

大邱驛地区 25万m² 区劃整理
74年末까지 施行

建設部는 大邱驛地区 土地計劃 整理事業을 認可하고 이를 公告했다.

이는 大邱市가 太平路1. 2. 3. 街와 北城路1街, 그리고 七星洞 1. 2街 一部地域 25万3천9백54m² (7만6천8백21坪)을 対象으로 土地区 劃整理事業을 벌리게 되는 것으로 施行期間은 '73年 3月부터 '74年 末 까지로 되어 있다.

이에 関한 図書는 大邱 市庁에 備置되어 있으며 供覧토록 되어 있다.

慶州進峴洞 27万3천m²를 美観地区化

建設部는 慶州市 進峴洞 27万3천m²를 美観地区로 設定 告示했다.

이는 慶州都市計劃의 一環으로 이와 같이 決定告示한 進峴洞 美観地区에 対한 関係図書는 慶北道庁과 慶州市庁에 備置되여 있어 供覧토록되어있다.

그린벨트 済州道에도 設置
3月5日字 建設部 告示

建設部는 3月5日字로 済州道에도 그린벨트를 設置 告示했다. 無秩序한 平面拡散防止와 自然景観保全을 위해 設置된 済州道의 그린벨트 区域은 済州市의 79.6km²를 비롯해서 総面積 82.6km²로서, 1個市, 1個面, 12個 洞이 包含되어있는데 対象洞名은 다음과 같다.

○済州市
이주동, 삼주동, 용담동, 화북동, 삼양동, 봉계동, 아라동, 오라동, 스형동, 이호동, 도두동, 외두동

○北済州郡
조천면 신천리

(外信)

日本 東京, 四層 以上 建築 規制
"햇볕을 쪼일 수 있는市民들의 権利 保護위해,,

最近 東京都市 当局은 市民들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東京市内 一定地域에 4層 以上의 새 建築物을 금하는 새 建築法案을 마련해서, 오는 4월, 都市計劃 委員会의 正式 承認을 받게 된다 고 하는데 이 法案의 内容은 高層建物의 建築을 엄격히 制限하여 「햇볕을 쪼일 수 있는 市民의 権利」를 保護하고, 이를 둘러싼 法廷紛争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法案에 따르면 建物의 높이 基準은 冬至날 상오 11時 40分(現地時間)太陽이 南中할 때의 建物그림자의 角度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규정에 適用 범위는 東京都 総 23個 区域 中 約80%

東京郊外地域은 9.2%로 総面積은 9천 2백 「헥타르」보서 即 東京市内의 約 3分의 1 地域은 建物높이가 10m以下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국위 떨친 파월용사 우리 모두 환영하자
- 너도 나도 환영하자 조국 빛낸 파월용사

会 告

농촌 열관리 표준주택에 관한 현상모집 안내

1973. 3.23. 산림청장으로부터 별첨 공문의 사본내용과 같이 치산녹화의 푸른유신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열관리 표준주택"의 설계와 이에 따른 연구논문을 현상모집중에 있음으로 본 협회 회원으로 하여금 다수 참가권유하도록 요청되었는바 이는 농촌주택의 개량 발전과 치산녹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항상 농촌주택의 개량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회원으로 하여금 다수 참가함으로서 치산녹화 사업과 농촌주택의 개량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부소속 회원에게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 대 웅

農村熱管理標準住宅

懸賞募集

一, 趣旨

治山緑化 푸른 維新을 期於이 成就하기 為한 오직 스런 마음으로 農村燃料의 節約과 熱管理가 飛躍的으로 改善된「農村 熱管理 標準住宅」設計와 이에 따른 온 国民의 智慧를 널리 公募합니다.

二, 公募内容

가, 農村燃料의 飛躍的 転換과 林産燃料의 節約을 期하는 内容

나. 農民의 日常生活에 簡便하고 健康管理에 도움이 되는 内容

다. 材料의 確保가 容易하고 経済的이며 實用的인 内容

라. 特히 効率的 熱管理構造로서 壁體, 天井, 窓戸, 아궁이, 温突, 寢床, 其他 暖房保温手段等이 綜合的으로 解決될 수 있는 内容

마. 住宅規模는 15~20坪으로 하고 温突房 一個外는 林産燃料를 使用하지 않는 内容.

三、公募部門 및 賞金

部門	提出圖書	賞金
가. 住宅設計部門 1. 新築 2. 既存建物改造 ※ 1·2項中 擇一	1. 綜合設計説明書 2. 設計圖(縮尺 1/30) 平面, 立面, 主斷面, 透視圖(黑白) 3. 工事費内譯書(概算) 4. 示方書(一般 및 改良部分 特記示方書)	當選作 一편 壹百萬원 佳作 二편 各五拾萬원
나. 燃料 및 熱管理研究部門 1. 燃料改良 2. 住生活樣式改良 3. 資材開發 ※ 1·2·3項中 擇一	論文 (例…메탄가스, 太陽熱, 熱湯器 立式→本寢臺座式→메트레스바닥材, 壁材, 天井材 其他)	當選作 三편 各壹拾萬원 佳作 三편 各五萬원

四、應募마감 一九七三年四月三十日

五、當選作發表

가. 一九七三年五月二十日

나. 日刊 新聞

六、接受處 山林廳

서울特別市西大門区峨洞一一一番地

七、作品審査 斯界專門家로 構成된 審査委員會에서 審査選定함.

八、参考事項

가. 入選作品은 農村熱管理住宅改良事業에 活用될 것임.

나. 入選作品의 著作權은 山林廳에 있음.

다. 應募作品은 一切 返還하지 않음.

라. 郵送할 때는 봉투에「農村熱管理標準住宅懸賞應募」라 記載할 것.

마. 이밖의 詳細한 内容은 山林廳林政局利用課(直 ☎ 9572 交 ☎ 8973~4)로 問議바람.

一九七三年 三月 日

山林廳長 孫 守 益

懸賞設計의 問題点

■1972年度 末 KBS 청사 현상에 이어 1973年度 2月에는 市民会館, 某学校等의현상이라는 커다란 公募가 있어서 建築士들의 많은 関心을 集中시켰다.

비단 KBS청사나, 市民会館의 경우뿐만 아니라 懸賞設計 公募때 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是正되지 않으면 아니될 허다하고 重大한 問題点들이 마치 그것이 韓国的인 現実에 가장 理想的인냥 自然스럽게 노출 대두되어 우리 建築士들을 유혹하므로서 建築士들은 마지막 한가닥의 権益마저 포기하고 현상 설계 공모란 美名아래 그 부조리를 감수하면서 응모를 해야만 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建築士들은 懸賞設計의 本質을 규명하고 또 앞으로 懸賞設計는 어떤 方向으로 나가야만 할지 그 올바른 길과 意義를 定立시킴으로서 우리 建築士들의 創作活動을 保障하고 또 나아가서는 健全한 懸賞設計의 発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高見을 들어 보고자 한다. ■

● 懸賞設計 競技에 따르는 問題点과 우리 建築士의 자세 ..... 金 熙 春

● 懸賞設計에 対한 나의 所信 ..... 金 正 澈

● 우리의 懸賞競技는 이런 길을 걸었다 ..... 元 正 洙

● 作品과 審査 ..... 尹 太 鉉

懸賞設計 競技에 따르는 問題点과 우리 建築士의 자세

金 熙 春

建築 懸賞設計 경기에는 建築主, 建築士(応募者)및 審査委員의 三者가 참가하여 이루어지는데 各者의 問題点 및 자세를 各各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한다.

1. 建築主

建築主가 設計競技에 建築物을 回付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物에 対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Programing이 먼저 세워져야 하겠다.

이 Programing이 없이는 建築主의 意思가 充分히 応募者(建築士)에게 反映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객관 타당성이 있는 Programing을 세우는데는 建築物의 目的, 규모등을 定하고 垈地의 여러가지 状況, 建築法과의 관계等 모든 条件을 제시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為해서는 경험있고 有能한 建築家에게 이 Programing을 위탁하여 応募者에게 回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은 建築主의 審査委員 위촉문제이다. 審査委員은 建築主가 設計競技를 回付하고저 할 때 함께 発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審査委員을 미리 発表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매한 人格의 所有者를 審査委員으로 선정한다면 야기되는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審査委員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審査委員들로 하여금 建築主가 설계경기에 回付한 建築物에 対한 充分한 研究가 이루어져서 応募者의 作品에 対한 심사가 훌륭히 이루어질 것이다.

2. 建築士(応募者)

우선 応募 요령을 잘 이해하여 건축주가 의도하는 바를 充分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다. 建築主의 意図를 充分히 理解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질의를 하던가 적절한 方法을 通하여 확인을 하여 作品製作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혹간에는 要求条件과 제작내용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어쨌든 応募요령을 준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또한 作品 제작은 실시가능한 案을 제작하여야 하겠다. 展示的 効果에만 치중한 나머지 構造, 材料, 設備 等의 면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그 案의 현실적인 実施可能性 여부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作品의 表現方法에 있어서 모든 事項은 図面으로 說明하되 간결하고 명료하게 表示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하겠다. 文字로서의 說明은 不可避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査時 理解把握이 困難하여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審査委員

심사위원은 설계경기에 対하여 심사위원 자신이 応募할 정도로 充分한 研究를 하고 試験的인 計劃을 해 보아서 설계 내용에 대하여 応募者 이상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설계경기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채점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内包하고 있다. 일정한 채점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단지 合算결과에 의존하여 작품의 우열을 평가하게 되는 것은 非合理的이며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짙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채점심사제도보다는 작품을 공개토론하여 充分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뒤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方法이 더욱 合理的인 方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公開討論 심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一定한 채점기준을 만들어 일관성있게 우열을 가리는 方法을 채택하는 것이 설계경기 채점에 있어서 合理的이고 타당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심사위원의 專功分野에 관한 문제이다.

建築設計競技에 있어서 작품제작은 대체로 기본계획까지를 그 한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경기 심사위원의 전공분야는 건축계획분야가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 채점심사제도의 경우에는 계획전공의 심사위원이 主가되고 다른 分野(구조, 설비…等)의 심사위원은 副의 立場에 서는 区分이 없을 경우 서로 다른 観点과 相異한 채점기준에 의거한 채점결과의 合算은 非合理的으로 돼버리고 말 것이다.

懸賞設計에 対한 나의 所信

金 正 澈

懸賞設計의 참 目的은 참신한 設計案을 얻기 위하여 중지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設計案이 유용하고 造形的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그 目的物이 요구되는 기능과 「스페이스」가 충분히 검토되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資料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요사이 몇건의 公募內容을 보면 피상적인 규모와 너무도 막연한 자료 (지질, 주위 환경, 예산등)만을 주므로 建築家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 부담을 강요당하고도 그 개요조차 파악키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됨을 통탄치 않을 수 없다.

懸賞公告는 내기 전에 집행당국이 좀 더 充分한 資料를 만들고 그 建物의 目的하는 意図를 正確히 表現, 의사 소통을 함으로서 귀중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집행자측은 創作의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고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해야 하며 제작에 흡족한 賞金과 製作権을 尊重하는 公告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3団体의 設計경기 요강의 제정을 본 차제의 우리 建築界가 좀 더 적극적으로 懸賞 設計문제에 개입해야 할 줄 안다.

우리 建築家는 공모자가 建築創作에 이해가 있고 공모의 기본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지양하고 확고한 태도로 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부당한 公告가 있을시는 全 建築界의 보이콧트는 물론 社会 의 輿論化에 総力을 기울여야 하며 啓蒙과 先導的 立場에서 社会的 地位向上에 각자 노력하여야만 建築家가 先進国과 같이 추앙받는 職業人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添言해야할 것은 審査의 公正性과 科学的처리가 있다.

먼저 審査委員으로부터 推戴받은 분이 懸賞設計의 妥当性을 검토하여 受諾与否를 결정하는 確固한 태도가 있어야겠으며 일단 審査委員을 受諾했을 시는 위에서 指摘한것과 같은 公正한 심사 방법을 끝까지 밀고 나갈 所信을 세워 審査에 임해야겠다.

執行者들의 公募의 美名아래 建築家를 愚弄함은 물론 容納이 되지 않으나, 먼저 우리들 자신이 이런 愚弄의 対象이 안되도록 賢明한 判断아래 反省함도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懸賞競技는 이런 길을 걸었다

元 正 洙

市民会舘 懸賞 公募가 가지는 의의

높은 建築的 해석과 建築的 실현능력, 作家的 존경과 責任을 묻는 사회적 직분에서 보다 혈연과 地緣 아니면 건축 Project가 한낱 수입원에 불과한 말초적 미끼에 지나지 않게 전락되어진 현상을 느낄만큼 建築人口, 특히 建築士法 실시 이후 建築士의 설계 업무 종사의 과다 경쟁은 심각한 建築人 전반에 어둡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러한 때 市民会舘 懸賞이 建築界에 던진 파문은 해방 후 우리는 당면하는 現実에서 실제적 体験을 겪어 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씩 깊이 認識하게 되는 主観意識에 따라 社会的 革新을 갈망하고 改革할만한 意志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을 改善 打開 하기에 누구나 어려움을 긍정하는 現時点이다. 예를 들어 入試지옥을 연출하였던 教育制度의 재평가를 가질 만큼 크게 다른 각계 각 분야에 서로 자각과 発展의 구상을 바로잡는 사회적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우리 建築家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制度上 얽매였던 여러 난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活力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주시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意慾과 建築的 재량과 우수한 작가의 현실적, 사회적 참여와 哲学的 主観과 비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의기 소침했던 모든 사람을 재생케 하는 기회로서 만들어진 당국과 역사적 시점에 일어날 필연적 용단으로 믿고있다.

참고로 내용을 펼쳐 나가기 앞서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치루었고 겪어 나온 建築的 重要性을 지닌 懸賞設計가 実施되었던 資料를 다음과 같이 돌이켜 볼 수 있다.

현상 당선작과 중요 내용

년도	내 용	당 선 자	시 행 자	비 고
1954	(지명) 공 군 본 부	김 정 수	공군본부	
1954	시 외 사 당	이 광 노		
1957	(일반) 시 민 회 관	당선작없음. 가작	이 천 승	
1959	(일반) 국 회 의 사 당	박춘명 외 3명		
1959	(지명) UNESCO	당선작없음. 가작	구 조 사	
1963	(일반) 부 산 진 역 사	이 광 노	철 도 청	
1963	(일반) 남산 시민도서관	이해성 외 1명	이 해 성	
1966	(공개) 국 립 박 물 관	강 봉 진	강 봉 진	
1967	(공개) 정부종합 청사	당선작없음. 가작	나상진, PAE	저작권문제 둘러싼 시민
1969	(지명, 공개) 국회의사당	안영배 외 1	김중업, 이광노 안영배	공개전시회에서 시민여론조사를 구함
1973	(공개) K B S 현상	당선작 없음. 가작		

懸賞公募 施行上 생겨진 문제들

지나온 크고 작은 懸賞競技를 가져본 결과에서 나타난 問題들은 좋은 성과를 가져보려는 試図와 熱情은 누구나 모두 공평하게 갖고 있다는 事実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선의의 경쟁과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懸賞의 기회를 서로 다른 目的과 해석으로 풀이하는 結果는 실제로 그 작품과 제작행위가 갖고오는 公益的 기여도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再評価와 재론의 반응을 일으키는 副作用이 뒤따르고 있다. 社会的 직분으로서 建築的 이해가 社会的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까닭으로 건축조형과정이 극히 성과를 올리기에 힘든 현상을 갖고 있음도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당면한 資料이다.

選定된 懸賞作品과 著作権 문제

현상 당선작 選定 処理와 実際로 세워지는 과정, 結果, 成果問題, 創作과정의 현상기획 과정의 不成実로 인하여 일어나는 구속 조건, 당선작품이 참고 사항으로 그치는 結果 대체로 기획과정의 태만이 따르는 데 이는 一般 建築 project의 발주 단계와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作品結果를 보고 난 뒤 비로소 모순을 확인하게 되는 처사로機能 構造의 재조정 또는 예산 執行의 모순을 発見하고 당선작의 무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眞実로 훌륭한 作家能力의 백분 活用을 통해서 뛰어난 作品을 구하여 세웠다는 결과 과정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참고 図表에 기재 되지 않은 行事 가운데 地方에서 公募한 다른 현상경기 행사 결과를 보더라도 특수지방의 지역 발전 육성이 란 문제를 들추어 建築 본질을 벗어난 지방 人事 利权으로 결과를 밀어 부친 사례도 더러 있었다.

현상작품 밀도의 질적 수준

투시도의 경쟁으로 시네마스코프 효과로 타작품의 가치를 흐리게 하는 처사가 있었던 기회도 있어 마치 투시도가의 행세와 행패로 당락이 좌우되는 事例도 야기했고, 평면 동선놀이의 경쟁으로 공간과 환경, 미래의 가치성의 문제가 있다. 또 타작품과 効果面의 内容만 비교하는 선발이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 근시적인 創作 習性에 젖는 作家의 조장만 낳게 한다.

정당한 현상의 실효를 거두는 육성방안

作品에 임하는 년령도 早老현상을 보는 것 같은데 대부분 40代 전후한 "Team"의 경합이 성행해야 한다. 이제 建築言語에 있어서 図形上 표현에 자신을 갖는 추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現象에 임해야겠다. 그러나 이런 水準만으로 대조 선발하게 되면 言語 水準의 저하의 탈피가 어렵고 40代 이전에 実質的 창의 活動의 중단으로 비롯되는 우리나라의 與件이 문제가 된다. 지도적 建築 기성 세대의 能力과 역할이 구두 지적과 권위만으로 建築 전문직의 역할로 퇴보되거나 새로운 後進들도 그런 形式的 지위에 野心을 거는 一般的 경향은 진실로 성과를 바라는 現象内容의 창달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도 하다.

그러므로 현상설계의 결과 우수한 建築人의 育成, 더욱 새롭고 밝고 명확한 자기 소신과 공동목적에 적용되는 비전 전개, 우수작의 실현으로 생활환경의 정화를 이룩하여 建築이 一般社会 인식과 유대를 굳게하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겠다. 거족적인 懸賞 行事 일지라도 建築人 사회만의 자축회나 자치회로 간주해 버리거나 무관심하고, 심지어 이를 施行하는 당국자일지라도 建築人의 事業的 利权으로 해석해 버리는 현실 을 때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현상의 異見에 때로는 他人의 이익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보고 비난하는 실정을 볼 수 있다.

현상의 결과는 당선작 하나만이 문제가 된다. 1,000이 참가해도 999는 실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개인적인 이익에 국한된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 문제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多類 작품에서 選別의 문제

우수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基準을 얼마만큼 높은 次元에 올려 놓는가에따라 그 결과의 가치는 좌우된다. 대부분 면적, 예산에 얽매이고 그 외 建築主의 눈치를 살피는, 또는 建築人 이외 비전문인의 단편적 개인 감정 비판에 희생되거나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쫓기는데 그치는 結果는 극히 다음의 문제들이 심각해진다. 진심으로 作家가 양심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높은해 도력으로 発見해 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현상의 큰일을 바로 매듭짓는 일이다. 지난 예를 들어켜 심사 과정은 여러 다른 시점과 안목에서 보는 次元의 基準이 多様하므로 심사 과정과 方法의 結果를 公開와 対話를 나누므 로서 출품작에 대한 귀중한 補賞이 있을 뿐이다. 허나 극히 가족적 분위기 란 対話形式으로 非論理的인 과정을 통해서 동정표를 모으는 온정적인 방법 을 취하기 쉬우므로 자칫하면 심사위원의 역할이 우수한 작품 解説이나 개인적 직감으로 많은 작품의 平価를 내려고 좌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요사이 교육제도에서 출제자의 진학과외의 사회문제와 같이 현상 과외 지도 형식을 조성하며 새로운 건축 년륜의 발아에서 변이를 보게하는 슬픈 現象을 갖게 한다. 한편 현상 지도의 경험은 建築 教育에서 가장 比重이 큰 것은 事実이다. 지도자의 더 욱 넓고 깊은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앞서 말한 project를 따기 위한 사업적 포착의 技術 경쟁으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다. 決코 옳고 바른 길을 찾아 들어선다는 것은 어느 선진 대상과 역사를 보아도 그릇된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発展과 社会的 公益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을 낳게한다. 바라건대 해방 후 20여년이 쌓여서 비로소 사회문제로 일어난 교육제도의 개선이라던가 기타 각 분야의 시정이 사회인의 공감을 얻을 만큼 역사와 경험을 긍정하는 마당에 우리 建築界도 새로운 活力을 찾고 사회적 基幹으로의 참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계획 설계 과정의 몰이해

建築界가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작가, 학계, 기술 각 부문 별균형이 유지 못되고 있는 점으로 그 것은 바로 設計 行為 하나 만으로 建築人의 생활 재원이 염출되는 建築과 사회와의 가능다란 통활구에 불과하는 극히 一次元的 이해 관계에 존속을 의지해 왔으므로 建築界가 사회에 뿌리

박고 활동적 지도자로 앞장 설 만큼 여러 分野의 발전이 거의 외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상작품의 우열보다 누구에게 project를 선사하거나 소위 따주는 듯한 인상의 움직임이 깔린 것이 바로 현상 뿐만 아닌 다른 側面에서 建築界가 復合的 多層 構造로 사회와 재원의 連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에 불이해한 사람일지라도 작품과 작가육성의 대열에 관여하고 흐리게 하며 建築에 대한 사회인식을 크게 오염시키는 행위가 자행됨이 바로 建築人의 精神的 생계를 위협하리 만큼 절박하게 되고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歷史的 段階를 보면 형식은 도입되었으나 내용면으로 실효와 결과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建築社会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建築 전문인의 직종은 사회적 공감과 이해가 거의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건축가에게 새로운 생활 환경의 創造를 의뢰하고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믿고 있는 우리 국민의 수효는 극히 적다. 뿐만 아니라 상업주의의 사회구조의 기반이 되었다는 현실을 자유 경쟁의 사회적 성장의 発展的 與件과 최선 方法으로 채택 도입되었을 만큼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긍정 호응하는 것이었으나, 단계적 우리 사회의 성장에서 절실히 싹튼 사회제도 개혁에서 일어난 제도에서 보다 외부의 형식에서 선구자와 지도자의 선견과 국민 개가에서 부터 깨우쳐 준 우리 미래의 진로로 믿고 좇게 된 것은 建築 分野와 비롯된 모든 우리 社会 成長의 현실이다.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단순히 당선작품 선별에 그치는 미인선발 대회 같은 行事가 아니다. 建築人의 育成, 建築人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의 実質的 참여와 깊은 유대를 이룩하며, 단순한 技術職 뿐이 아닌 인간으로서 사회문제를 옳게 통찰한 생활 환경의 제시를 가능케 하는 계재를 마련하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다. 옳은 결과를 바랄 수 있는 현상은 무엇보다 正確하고 바른 현상 경기 내용과, 公正한 주관, 그리고 公正한 운영은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유형의 작품 채점 결과보다 다음 세대를 의식한 建築전반을 의식한 결과를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作品과 審査

尹 太 鉉

많은物件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筆者가 넥타이 하나 사는데 市中 店舗를 終日 헤맨 적이 있었다. 제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는 사람의 보는 눈은 各樣各色이기 때문에 판리는 것이 一定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 物件이 이러한진데, 創作物, 特히 作品을 審査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기 한 老處女의 立場에서 呼訴겸 하소연을 하고 싶다.

老處女는 人間으로 갖출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다고 自負한다. 耳目口鼻로부터, 手足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하나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없고 또 더 있는 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번 맞선을 보았지만 번번히 失敗하였다. 이제 그 原因이 自意든 他意든 그만 지쳐버린 狀態다. 그렇다고 시집가는 것을 아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身勢를 恨歎하고 運命에 돌리다가도 맞선을 보라면 또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이야 되겠지"하고 自慰도 해본다.

그런데 맞선은 서로가 보아서 마음에 드느냐 안드느냐에 따라 可否가 決定된다고 보는 것이 原則인데 이 境遇는 다르다. 一方的으로 보이기 만하고 處分만 기다려야한다는 宿命을 지닌 것이다. 이런 모순 때문에 道理없이 苦杯를 마셔야 하였고 홀로 쓴 웃음을 지어야했다. 그러나 老處女는 언제까지나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안방에서 울기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방문을 박차고 나와 이렇게 붓을 든 것이다.

○ ○

그렇다고 잘나고 美人이라는 것은 決코 아니다. 지금 世上은 내가 잘났소, 내가 壯士요, 名士요, 愛国者요, 등등 所謂 PR을 잘 해야 산다고 하지만 그렇기는 싫다. 다만 생긴 그대로를 公正하게 봐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생긴 그대로를 어떻게 公正하게 보느냐 하는 問題가 매우 重大하다는 것을 再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事物을 審査하고 判斷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이것이 眞正한 意味에서 公平하게 다루워졌다는 点, 말하자면 누가 어떻게 反論하더라도, 妥当性을 認識시킬 수 있다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

平生 山에서 지내온 나무꾼은 해가 산에서 뜬다고 主張하고 平生을 바다에서만 지낸 漁夫는 해가 바다에서 뜬다고 主張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經驗에서 본 確固不動한 判斷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기둥같다, 벽같다, 서까래 같다고 判斷한 것 亦是 그들대로의 一理임에는 틀림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이러한 極端的인 例로 나를 보아주는 사람에게 刺戟을 주자는 것은 勿論 건방진 일이라, 그런 意図에서가 아니라 一般的으로 皮相的이고 偏僻的인 고집만을 主張해 서는 좀 困難하지 않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하는 것이다. 더우기 長久한 時日을 두고 心血을 기울여, 온갖 努力과 情熱을 다한데 対하여, 보아주는 側은 果然 얼마나 誠意와 時日을 가지고 보아주었는가, 反省할 余地가 있다고 본다.

○ ○

"仲媒를 잘하면 술이 석잔, 잘못하면 뺨이 석대"란 俗語가 있다. 本人끼리 어색하고 잘 모를 경우 仲媒人의 役割이 必要하다. 그래서 仲媒人은 双方의 집안 内容이나, 事情, 意志등을 充分히 把握하여 結合의 可能性 如否를 検討한 然後에 비로소 선을 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近間 所謂 結婚相談所란 仲媒業?이 생겨 社会의 物議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純粋하게 信用을 為主로 한 仲媒 役割을 벗어나, 어디까지나, 未婚者의 弱点을 利用하거나 虚偽事実을 가지고 結合시켜, 営利에만 치우친데, 問題点이 있는 것이다.

作品을 審査한다는 것은 一種의 作家와 建築主를 相対로 仲媒役割을 하는 것이라 하면 過言이될까? 그렇치 않다면 老處女는 仲媒人에게 간곡히 付託을 드려야 하겠다.

○ ○

먼저 政策結婚을 시키기 為한 "둘러리"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둘러리란 用語는 新郎, 新婦, 両側에서 結婚式場에서 새운 것이 요사이 어느새特定対象을 定해 놓고 이를 合理化시키고 成立시키기 為하여 한 犠牲物로 利用한 말하자만 祭物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는 아주 不快하고 不正한 現象으로서 이러한 事実이 지난날 非一非再하였다고 본다.

다음은 고루고루 봐 달라는 것이다. 얼굴이나 脚線美만 보고 언듯 速断하거나, 겉모양에 치우치지만 말고 차근차근 만져보고 말을 들어보고, 속을 잘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自身만이 잘 났다, 내 속을 왜 몰라 주냐고 생트집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公平 無私하게 真正한 良心을 바탕으로한 広義의 智識으로 偏重없는 判断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 ○

仲媒人은 흔히 술 석잔만 생각하고 뺨 석대는 생각하지 않는 수가 많다. 이는 自身의 말이나 行動에 対하여 責任을 느끼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重要한 点이다. 노래나 雄辯, 또는 美人大会등등의 審査도 까다롭고 어렵다. 그러나 一生을 左右하는 内容을 包含할 때, 아니 永久不滅의 代代로 批判의 対象을 받은 作品을 審査하는 마당에 어찌 粗忽히 할 수 있으며 그 責任感

의 重要性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봐 달라는 立場보다 보는 立場이 몇倍의 研究(対象에 対한)와 誠意가 必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姿勢와 与件이 缺한 狀態에서 敢히 審査를 하겠노라 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다.

○ ○

出馬者는 그 나름대로의 政見을 発表하여야 한다. 그래서 有權者에게 自己 意志를 呼訴하여 한표라도 더 얻고자 한다. 사위를 求하거나 며느리를 求하거나, 双方이 要求와 條件과 方法이 있다. 서로가 여기에 合当하여야 成事가 된다. 좋은 作品을 求하고자 할진데 理致는 마찬가지라 본다. 要求나 條件은 個個 事情이라 除論하고 여기서는 보고 択하는 方法에 대하여 말하자.

첫째…審査委員을 專門分野別로, 定하고 該当分野만 採点式으로 할 것.

둘째…審査表를 作成하여 平面 計劃構造, 意匠, 設備, 配置(庭園)등 細分하여 採点할 것.

셋째…審査委員으로 하여금 各作品別로 觀評을 記入하고 싸인하도록 할것.

넷째…作家와 審査委員의 接線을 強力한 罰則으로 厳断할 것.

다섯째…作家에게 要求나 條件을 細密히 說明하고 必要한 데이타를 充分히 提供할 것.

여섯째…審査에 対한 結果나 評을 作家에게 가림없이 보이는 雅量을 베풀 것.

일곱째…公開 展示를 열어, 一般 与論을 들을 機会를 마련하고(当落에 関関없이), 落選者에게도 遺感없는 誠意를 베풀 것 등등 大体的인 事項을 들고 싶다.

○ ○

사람은 누구나 自己 잘난 멋에 살고싶고 長点만 내세우려는 것이 人之 常情이다. 反面에 短点을 들추어내도, 不快하지 않은 사람은 別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勝負에 無條件 勝利만을 바라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의 能力에는 限度가 있어, 自己만이 옳고 自己만이 잘나고 自己만이 얻어야 된다고 慾心을 갖는다는 것에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自己에게 부여된 能力을 最大限 発揮하여 이에 対한 公平한 批判을 甘受할 수 있는 姿勢 또한 바람직 하다고 본다. 万一 慾望에 어두워 能力 以上으로 權力에 依存하거나 金錢과 打合하는 등 手段, 方法을 다하여 目的을 達成하였다 한들 果然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지 疑問이다.

○ ○

婚期를 놓칠까봐 老處女는 마냥 조급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歲月을 묶어 놓을 수도 없는 일. 누구를 붙잡고 아첨할 수도 없는 일 平生을 홀로 살겠다고 決心할 수도 없는 일…… 다만, 훌륭한 郎君을 하루 빨리 만났으면 하는 一片丹心으로 作品에 임할 따름이다. 그래서 作品과 審査가 渾然一致하여 올바른 良心과 姿勢로 이루워졌을 때 비로소 보다 나은 創作物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믿어 疑心치 않는다. 그렇지 못할 境遇 우리 나라의 作品은 沈滯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後進들의 発展의 길마저 막아지는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現代 教会建築 小考

金 正 澈
(正林建築事務所)

現代教会의 特徵

I. 禮拜概念

禮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모여 儀式을 行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예배는 聖職者와 信徒가 区分되고 信徒 역시 個人的인 헌신度가 큰 聖職者와 平信徒 사이의 差別意識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聖職者나 長老들은 平信徒가 앉는 곳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거나 区分되어 座席이 마련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는, 다같이 함께 모여 神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罪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용서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洗禮를 받으며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음으로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근본개념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다. 예배는 다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평면도 이 뜻에 맞도록 長老席이나 찬양대의 特別席은 마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예배는 牧師나 聖職者 中心에서 平信徒 中心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개념이 바뀌어 진 것이다.

예배는 누구나 다 같이 神의 백성이 된 立場에서 奉仕活動을 하는 것으로, 充滿된 神의 사랑의 衝動으로 信徒가 서로 화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和会는 教会를 中心으로 人類社会에 널리 伝播되어야 한다. 和会는 미움과 시기와 不信을 없애고 CHRIST의 行動과 말씀이 根本이 되며 教会가 存在하는 理由이기도 하다. 예배를 통하여 神과 人間이 和会하고 人間間의 화해, 社会의 種族 및 빈부간의 화해, 教派간의 화해 등 神이 終局的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目標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의 복음인 것이다.

화해의 복음은 멀리 인류사회의 끝까지 전파되도록 먼저 教会를 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Ⅱ. 禮拜儀式

예배의식은 教人들이 神을 찬양하기 為하여 공동으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一致된 節次에 依하여 禮拜할 때 그 예배 形式을 禮拜儀式 이라 한다.

이러한 통일된 儀式은 CATHOLIC에서는, 神이 臨在하는 祭壇 앞에서 聖職者가 祭司를 行할 때 信徒들도 같이 따라 行함으로서 이루어졌으며, 改革教会諸教派에서는 말씀을 中心으로, 神의 백성이 되도록 고백의 기도로 구원받고 찬양의 노래로 경배하는 儀式을 取해 왔다.

이러한 儀式은 오늘날에 와서 점차 祭壇과 說教台가 다 같이 重要함을 認識하게 되었으며, 洗禮盤과 더불어 禮拜의 새 中心이 되어지고 있다.

祭壇은 神의 「在를 뜻하고 있으며 CHRIST 의 만찬의 食卓이라는 概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神이 臨在하신 제단을 向하여 祭物을 바치고 고백과 謝罪의 기도를 드리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이 祭壇은 되도록이면 会衆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높은 곳에 있어 会衆으로부터 감사와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儀式은 新教에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반대로 旧教에서는 說教도 重要視하는 儀式이 取해 지기 始作하였다. 說教台는 神의 말씀을 낭독하고 神의 백성이 되기 為한 마음가짐과 取해야 할 行動에 対한 說教를 듣고 神의 축복을 받아 능력을 얻는 곳이다. 그러므로 說教台는 禮拜者들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 位置해야 하며, 여러 改革教에서 해 온 것과 같이 꼭 강단의 中心에 位置하지 아니 하드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即, 視覺的, 聽覺的 機能이 滿足되도록 配置하는 것이 더욱 重要시하게 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13 : 16).

예배의식의 세 중심 중 세례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능력을 伝達받는 곳 이며 세례를 받으므로서 하나님의 한 家族으로 입적 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WORD)과 성찬 및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과 교통하신다는 것을 개혁의 根本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洗禮盤도 제단 및 설교대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祝福을 받는 重要한 要素이므로 점차 改革교회에서도 無視 또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 하게 되었다.

Ⅲ. 多目的인 教会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精神을 널리 이 世上에 알리는 곳이다. 이러한 教会는 이웃 및 地域 社会에 開放된 곳이라야 하며 이웃을 為하여 奉仕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경배와 奉仕精神을 一般에게 開放될 수 있는 곳은 分離되어야 하며, 禮拜儀式을 進行하는 곳을

除外한 其他空間은 되도록 모든 행사 및 集会가 可能한 多目的的인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精神은 特定教人들의 完全化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며, 貧·老 등 의지할 곳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나래를 펴서 罪로부터 救援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데 뜻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神에 게 奉仕를 하려는 교인들의 여러 活動을 可能케 해야 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自由로이 接近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들의 利用에 積極 호응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教会의 周囲를 높은 담으로 둘러 막거나 大門을 굳게 닫아 둔 교회를 볼 수 있다. 이러한 教会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事業을 잘 못 理解했거나, 교회를 거룩하게 維持 한다는 데에만 골몰한 잘못된 생각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教人이나 부유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곳이든 찾아 가시며 罪지은 사람들에게도 꼭 같은 사랑을 펴신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精神에 맞게 教会가 計劃되게끔 建築 委員이나 건축가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教会 建築의 内容

I. 教会의 機能

천 주 교 기 능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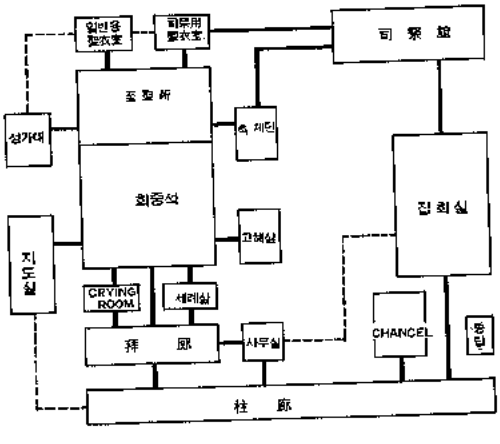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가 있으며 도시, 농촌 할 것없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며 교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世上에 보내시어 人間을 救援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것을 선포하는 곳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開放되어진 건물이다.

예배를 위한 공간은 거룩하고 장엄해야 하며 일반인에 대하여는 친근감이 있고 우애와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교회는 크게 나누어 儀式을 존중하는 旧教와 儀式보다 목사의 説教에 중점을 두는 新教(改革教諸派)의 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두 교회는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통일된 교회였으나 16세기 宗教改革運動 이후 新教教會(Protestant Church)로 分離 独立되어 예배의 儀式面이나 布教의 分布를 각기 달리하여 왔다.

교회는 会衆이 주일날 또는 기타 集会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식의 場所일 뿐만 아니라 傳道事業과 교인과 그 가족 또는 地域社会의 교육과 봉사사업도 행하는 곳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① 예배를 위한 空間

이곳은 하나님이 臨在하시며 하나님의 몸되는곳

신 교 기 능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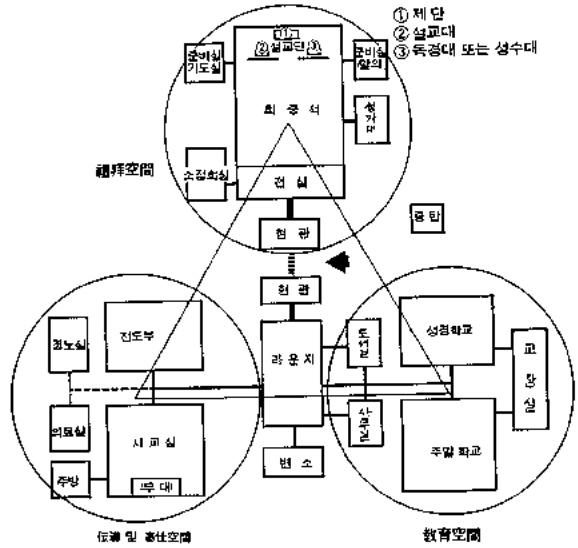

중에서도 머리되시는 곳이므로 교회건축을 대표하는 中心部인 것이다. 会衆이 공동으로 신을 찬양하고 예배의식을 올리는 곳이므로 祭壇과 찬양석과 会衆席으로 구성된 부분을 말하며 기도회, 부흥회, 혼례식등의 집회에도 사용되는 空間이다.

② 教育을 위한 空間

예배를 전후하여, 또는 平日에도 성인이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와 유치원 및 기타 교육을 위한 교실, 또는 사귐의 장소로서 대소로 구분 사용할 수 있는 多目的 空間이다.

③ 伝道 및 奉仕를 위한 空間

교회의 사업은 폭넓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行蹟을 널리 알려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인에게 고루 안겨 주기 위해 강연회, 음악회 등을 통해 伝導를 하는 공간과, 어렵고 병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쓰다듬어 주며 항시 인근 주민에게 봉사하는 目的으로 쓰이는 공간이다.

④ 기타 부속공간

예배, 교육, 전도봉사사업을 뒷받침하는 牧師, 또는 司祭室, 事務室, 委員会室, 会議室 및 식당, 주방, 세면소 등 부수된 여러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⑤ 教職者 住居

聖職者의 住居는 教会와는 별도 敷地에 분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관리인을 위한 주택은 교회건물에 접해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II. 禮拜를 為한 空間

우리는 人間을 創造한 하나님을 공경할 의무가 있으며 肉身과 靈魂으로 된 人間은 救援을 받아야 하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救援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啓示와 眞理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위한 공간은, 하나님이 臨在하시며, 우리의 罪를 사해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独生者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儀式의 場所인 祭壇과, 啓示와 眞理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説教壇, 또 이를 경청하여 의식에 다 같이 참여하는 会衆席이 있어야 한다.

儀式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므로 거룩해야 할 것이며, 모인 会衆도 世俗的인 肉身을 잊고 정신적 靈魂的인간이 參席한 엄숙한 분위기에 達할 수 있는 内部空間의 處理가 要求된다.

교회건축의 巨匠 루돌프 슈발츠(Rudolf Schwarz)는 禮拜儀式을 위한 空間을 祭壇이라는 하나님의 極과 均質의 單純한 空間을 否定하고 이곳에 모인 会衆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空間의 極的인 존재로 意識할 수 있도록 Frankfurt에 있는 성 미가엘교회(St. Michael Church)를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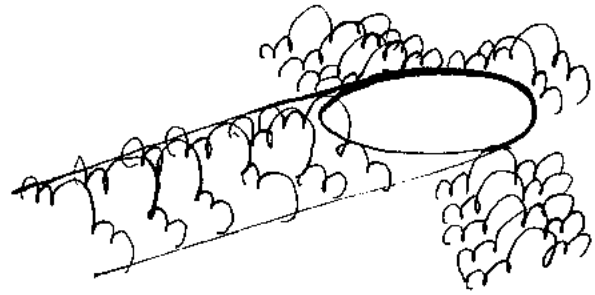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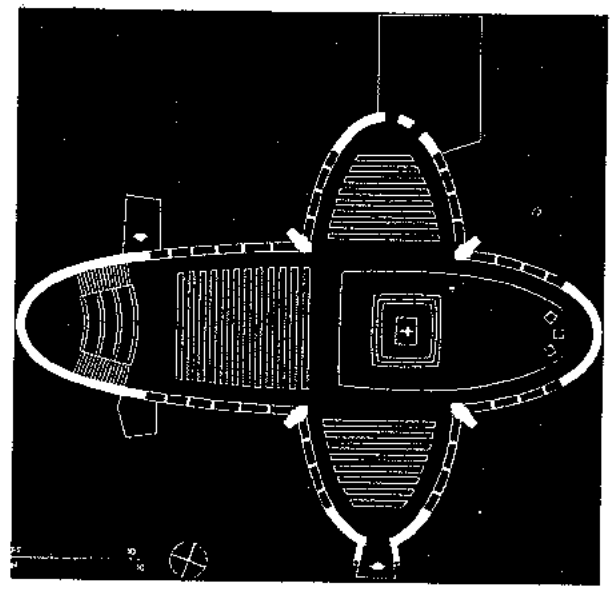

① 祭壇 또는 성찬대

禮拜空間의 중심은 하나님이 臨在하시는 祭壇이다.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제단이므로 모든 教人이 예배에 參與할 때부터 끝 날 때까지 어떤 위치에서나 잘 바라보이며 禮拜의식이 進行되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어 視線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 位置는 会衆席의 중앙에 놓임이 바람직하나 平面形態에 따라 교인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직접 통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성단은 주님이 臨在하시므로 주님 가족이 영양을 취하는 주님의 table 이다.

이러한 성단을 신도들에게 더 가까이 옮기고 따라서 사람들이 더욱 성단 근처에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성단이 건물 중앙에 위치하도록 円形의 平面을 갖거나 矩形의 平面에서는 짧은 벽면에 제단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당의 긴 쪽에 성단을 두고 의자를 주위에 놓으므로 성단과 더욱 가까이 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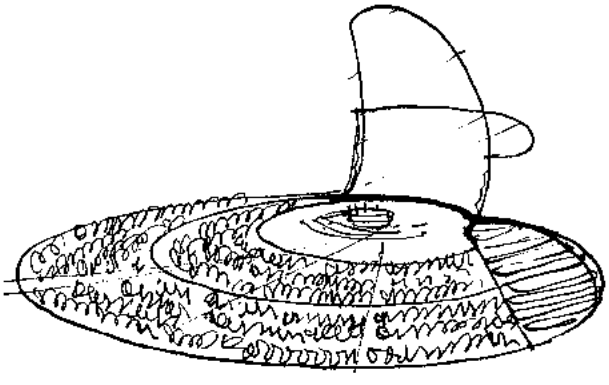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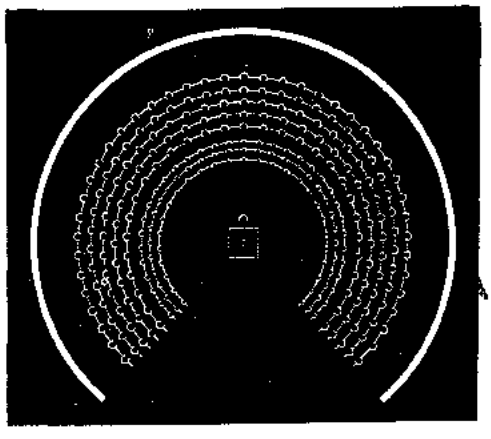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가 우러러 보는 存在이므로 제단은 会衆席보다 높게 자리함이 합당하다. 그 높이는 会衆席의 後部에서도 잘 바라 보이도록 건축적으로 解決하되 중앙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몇 단의 계단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계단의 수는 3段으로 했을 때 3위1체 또는 사랑, 믿음, 소망을 뜻하므로 강단을 3段, 聖所를 3段, 그 위에 祭壇예배의 중심을 위하여 다시 한 段 높이는 예는 자주 볼 수가 있다. 新教 諸教会에서 강단 중앙에 설교대를 놓았을 때는 예배의 중심의 상징적 단이 없이 십자가만 배치하거나 성찬대를 설교대 앞에 놓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나타낸다. 어떤 교회는 제단을 성찬상으로 대신하고 그 위에 포도주와 떡을 담은 食器를 簡潔하게 배치하여 성찬의 은혜를 나타낸 예도 있다.

이 성찬대는 초대교인들이 제단 대신에 성찬대를 聖所에 두고자 한 데서부터 연유된다. 성단이나 성찬대는 예배의 한 수단에 불과하며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단이 있는 곳을 「성소」라 하며 이 성소는 유대인의 神殿構造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旧教에서는 聖所를 中心으로 계획되며 이 곳에서 祭壇(Altar)과 聖具台(Credence Table), 司祭席(Priest Tery)과 聖書朗読台(Ambo) 및 기타 十字架 촛대등의 儀式器具가 배치되며 聖具室은 至誠所(Sanctuary) 뒤에 있는 경우와 좌측 또는 우측에 두는 경우가 있으며 司祭의 입장 낭하 관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説教台 및 読経台

구교에서는 儀式을 重要視한 祭司를 행하므로 聖所를 중심하여 教会 計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설교대는 教会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놓이게 되며 "미사"의 성찬만 강조하게 된다.

前記한 바 있는 聖미가엘교회는 놀라운 美学的 순수성으로 설계되었고 제단은 교회 안에 있는 무엇보다도 特出하여 필적할 수 없는 焦点을 이루고 있으나 예배정전 안에 설교대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新教諸派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개혁되어야 한다는 改革論에 따라 우상숭배의 유혹이 되기 쉬운 모든 요소를 除去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福音을 전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新教諸派의 교회는 말씀을 重要視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건축도 말씀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설교대와 読経台는 다 같이 福音에 관한 것이며 이 福音台는 聖所와 더불어 하나로 취급하여 흔히 講壇이라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세례 및 성찬을 통해 교통 하신다"는 개혁파의 주장은 옳은 것이며 이것은 예배의 세 중심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 오셨고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마태 15 : 10)"하셨다. 그러므로 說教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位置와 높이로서 음향학적인 위치와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설교대는 말씀의 대이므로 되도록이면 단순 간결하게 design 하고, 펴 놓은 복음서를 볼 수 있도록 한층 높게 장식하고 설교의 말씀과 強調하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더욱 은혜가 되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말씀을 더욱 重要視하는 교회에서는 성소 제일 깊은 중앙에 및 단 높게 설교대를 두어 会衆席 바닥을 調節함이 없이 시각적으로 잘 해결했으며 說教台의 말씀의 意義를 한층 더 강조하며 성령의 상징으로 표시하였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경은 눈에 띄게 설교대 위에 놓는 경우와 제단을 중심으로 설교대의 相対的 位置에 別途로 簡潔하게 설계된 대 위 에 놓여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경대를 별도로 놓았을 경우는 말씀의 봉독과 축도를 이곳에서 行한다. 말씀과 福音書는 일치되야 하므로 성서는 설교대의 눈에 띄는 곳에 備置케 하고 독경대 위치에는 세례반이 놓여진 예가 많다.

이와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진행은 개혁파 신교에서 중히 여기므로 신교제파의 설교단의 형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③ 新教諸派의 說教壇

a. 会衆席보다 한 단 높게 하고 中央正面에 說教台를 配置.

b. 설교단 중앙 깊은 곳에 제단(ALTAR)을 두고 (제단에는 十字架와 聖書를 配置) 說教台와 聖書朗読台를 좌우측에 配置.

c. 說教壇을 높은 부분과 낮은 部分 2단으로 하고 낮은 단 주위에 성찬난간(聖餐欄間) 을 設置(特히 Methodist Church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음).

d. 설교단의 후면 또는 側面에 세례조(洗礼槽 : (Baptistery)를 배치(主로 Baptist Church 에서적용).

新教에서는 礼拜가 시작되기 전, 목사 및 장로, 사회자 등이 그 날의 儀式을 준비하고 기도드리는 준비실을 설교대 후면 또는 좌우양측에 마련한다. 양측에 준비실을 마련했을 때는 이 중 하나를 성가대의 衣服室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최근 어떤 교회는 구교의 의식에서 司祭가 입장하듯이 목사, 장로, 성가대들이 옷을 짓고 会衆席을 통과하여 자리에 앉으므로 예배의 의식을 좀 더 숙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예도 있다.

④ 会衆席, 一般信徒席

교회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메세지를 전하는 곳이며 이 메세지를 받고자 사람들은 모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에서 그의 진실한 추종자인 회중과 아주 가까이 교통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머리된 제단과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会衆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 교인들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를 찬양하고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는 의식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가족은 말씀과 신성한 식사(성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식탁 주위에 함께 모여야 한다. 회중석의 의자는 말씀과 세례 및 성찬이 차려진 성소 주위에 되도록 가까히 배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와 회중석은 교회설계의 기본이 되며 교회의 평면은 이것으로서 지배된다.

예배공간은 婚礼 및 기타 儀式도 행하므로 聖所를 향하여 중앙에 通路를 두고 양측에 신도용 長椅子를 놓게 되며 장의자는 6인석 정도가 理想的이며, 10인석을 초과하면 의자간의 간격이 넓어야 한다. 교회平面의 폭은 주로 의자배치를 먼저 검토하고 구조적인 문제와 공간 처리 등을 생각해서 결정되어 진다. 폭이 넓으면 스판이 길어 지므로 会衆席에 기둥을 배치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런 기둥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데 장해가 되며, 기둥 바깥쪽 면적 또한 회중석으로 이용하기엔 부적합한 면적이 된다.

공간조형을 위하여 意識的으로 기둥을 独立시키고 기둥 바깥 쪽 Space를 통로로 사용하거나 旧教에서는 会衆의 立席으로 또는 고해실이나 성자가의 通行 으로 이용하는 예가 많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Basilica 식 구조를 본 딴 것이다. 会衆席의 天井은 구조적으로나 음향처리상 되도록 높혀서, 하늘나라를 갈구하는 교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듯한 空間을 느끼게 하며 개구부(開口部 : 窓)가 너무 많거나 크면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어지고 儀式에 集中力을 잃게 되므로, 성경과 찬송가 등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照度를 確保할 수 있는 範圍에서 억제하여 壁体가 儀式을 엄숙케 하고 숙연한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이 좋다.

会衆席 椅子의 열은 20열 이내가 이상적이며, 20列을 넘는 座席에서는 평면형과 벽 및 천정의 재료와 모양에 따라서 說教壇에서의 말씀이 불분명하게 들리고, 補音장치를 사용하여도 직접음과 反射音의 時差가 생겨 잘 들리지 않는 수가 있다.
会衆席의 바닥은 垂平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祭壇은 60~70cm 높이고, 說教台는 다시 몇단의 층계를 주어 視線問題를 해결해 주거나, 会衆席의 바닥을 뒤로 갈수록 높혀 경사로 해주는 방법이 있으나 평평한 바닥보다 예배의 경건한 분위기를 해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傾斜를 주는 경우는 맨 뒷 부분에서 信徒가 섰을 때 視線의 높이가 설교자의 視線높이보다 낮게 해야 한다.

⑤ 聖歌隊席(Choir Loft)

찬양대는 인원수가 얼마이든지간에, 예배의 절차를 통하여 회중들과 더불어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Melody 와 찬양으로서 응답하는 예배의 한 순서를 담당한다.

찬양대의 역할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므로, 말씀과 聖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성가대가 聖所에 위치하는 것은 고려할 점이 없지 않다. 음향공학상 음원(音源)을 몇곳으로 잡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성가대는 会衆속에 있어서 회중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응답을 인도하며 같이 행하는 자가 되게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수도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 노래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찬양대의 位置는 회중들의 正面과 後面으로 하여 화답하는 찬양을 할 수도 있다고 회중의 찬송을 거들어 주는 奉仕를 담당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살을 때에는 그 기능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 찬양대의 위치는 会衆席의 일부로서 제단에 가까운 곳이 적합하며 잘 調和된 和音이 회중석 어느 곳에나 전달돼어한 마음과 한 音이 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찬양대원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성소에서 행하는 모든 말씀과 주님의 제단과 성찬의 거룩함에 영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성소를 正面으로 向하여 앉을 수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찬양하는 時間外는 会衆과 시선을 교환하지 않도록 의자 배치 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旧教에서는 회중석 뒤 廻廊部에 두고 예배공간에 聖曲이 충만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 儀式의 절차를전반에 걸쳐 이끄는 역할을 담당케 한다. 신교제파에서는 예배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信徒席과 같은 level 로서 설교단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한다. 성가는 모두가 그 곡이 아름다우며 오르간의 音律과 和音된 멜로디는 예배의식을 보다 感動的으로 하나님의 임재 뿐만 아니라 천사들 도 같이 예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더욱 영적으로 引導케 한다.

찬양대석은 段差를 주어 지휘가 용이케 하고 음이 맑게 들리도록 그 位置와 찬양대석 주위의 벽, 천정 재료 선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Pipe Organ 은 찬양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和答하는 한 手段이며, 그 自体가 아름다운 音律과 感動的인 여음을 예배공간내에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Pipe 의 배열은 훌륭한 造形的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공간내에 하나님의 제단을 능가하는 어떤 물체나 상징을 둘 수 없음에도 Pipe Organ에 매혹되어 제단의 일부에 장식되거나 存在価値를 돋보이게 한 例를 허다히 볼 수 있다. 이러한 Pipe Organ의 배치는 고려해 야할 것이며 오르간이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있으며 우리들의 信仰의 구심점에서 벗어난 위치에 Pipe Organ이 지닌 感興的 선율과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음향적으로는 Organ이 会衆의 뒷 부분 약간 높은 곳에 있을 때 예배의식을 더욱 效果的으로 도울 수 있다.

Pipe Organ 의 設計는, 전문가와 설계 初期부터

상의하여 이상 말한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게 그 価値를 나타내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큰 교회에서는 성가대 연습실과 성가대를 위한 衣服室을 강당 주위에 배치한다.

⑥ 礼拜前室(Narthex)

Narthex 란 희랍어로 「막대기」란 뜻이며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만찬 예식이 행해지는 곳에 들어 가지 못하도록 그곳을 기둥(막대기)으로 막아 두었다고 하며 기둥사이로들여다 본다고 하는 데서 이곳을 Narthex라고 칭하게 되었다. 오늘에 와서는 예배 공간 앞에 前室을 두어 밖에서 들어 오는 비바람을 막고 신도들이예배석으로 들어가기 전 옷깃을 여미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곳으로 그 뜻은 점점 변해가고 있다.

Narthex 는 예배의식이 행해 지는 곳을 좀 더 거룩하게 유지하기 為하여 소음을 막는 前室이 며 이곳은 母子를 為한 예배공간으로도 利用된다. 이 前室은 또한 Lobby의 性格을 띤 空間으로도 計劃되며 하나님의 한 家族된 教友들이 하나님의 몸된 곳에서 서로 사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교인들이 일시에 나오는 곳이므로 그 넓이는, 会衆席 넓이에 相応한 크기로서 붐비지 않고 서로 인사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最小限의 面積을確保하고 동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屋外로 나가는 出入門을 밖으로 열리도록 배치해야 한다.

旧教에서는 이곳을 十字架의 道行을 겸하여 미사에 참여하는 신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儀式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곳에는 教会의 여러가지 소식과 過報를 나누어 주며 교인들을 예배 좌석으로 안내하며 信徒의 카드 상자 등을 놓을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信徒들의 사귐을 위하여는 넓을수록 좋으며 늦게 예배에 참석하는 教人들이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게 대기하는 장소이므로, 유리로 예배공간과 区劃하여 두면 예배자가 넘칠 때 Speaker 를 통하여 예배를볼 수 있는 연장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기타 諸室

a. 기도실(Chapel)

Chapel 을 따로 마련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않으나 큰 교회에서는 예배정전(예배실)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教人들이 어느 때나 하나님 殿에 나가 그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한 장소로 마련하며 하나님과 対話하는 空間으로 사용된다.

内部는, 他人을 의식치 않고 하나님과 단 둘만의 장소가 되도록 単純하게 造形하고 照度도 극히 어둡게 하며 누구나 自由로이 使用할 수있도록 開放的인 장소와 位置를 선택해야 된다.

旧教에서는 Chapel 을 別途로 마련치 않고 内陣을 開放하여 신도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apel 은 個人의 기도실일 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올릴 수 있으며 가족과 가까운 분들만이 모이는 장례식도 이곳에서 거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곳은 임시 예배 장소로 사용되며 成人이나 主日学校, Group의 教育的인 공간으로도 利用되는 一種의 Auditorium 의 기능도 가져야 하므로, 計劃時는 위의 여러 목적에 부응될 수 있는 공간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준비실등 부속된 작은 방이 있으면 더욱 여러가지 目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b. 고해실 Confessional Booth)

Catholic 教派에서는 信徒가 司祭(神父) 에게 自己의 罪를 고하여 司祭로부터 神의 가르침과 지혜를 받는 小室을 말한다.

이 고해실은 聖堂에 들어가는 初入이나 会衆席 側廊壁에 配置한다.

Ⅲ. 教育을 위한 空間

교회는 훌륭한 教人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시설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 공간은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教人에만 局限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적 종교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 交際하고 奉仕精神을 길러 信仰을 두텁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生活化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다. 교회는 예배의 의식만 을 행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는 機能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教育空

間을 為하여 特別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教育空間은, 英国의 Robert Raikes 가 극빈 소년을 모아 宗教 教育을 実施한 것이 始初가 되어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가 그 規模는 각각 다르지만 主日学校를 中心으로 宗教教育, 聖経学習 및 生活指導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① 主日学校

教育空間의 主軸을 이루는 機能이며 主日날 성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육을 目的으로 教会内에 설치한 학교를 말하며, 礼拜空間과区分하여 別棟 의 教室群을 配置한 分散型이 主日学教의 教育을 위해서나 거룩한 예배공간을유지하는데 합리적이다.

礼拜空間과 主日学教를 벽없는 복도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예배의 연속인 모임 또는 사귐의 場所로 利用할 수 있는 利点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대지가 협소하므로 前記와 같이 分離配置한 例가 적으며, 대개 예배공간 아래 地下 또는 半地下에 重層型으로 計画한 교회가 많다.

이런 경우는 현관 및 Hall 을 別途로하고 Hall 의 상하의 연결계단을 고려해야 한다.

教育空間의 크기는, 대학생부와 어린이의 数만 해도 교회 成人数와 비슷한 人員数가 되므로 여기에 夫婦를 중심으로 한 壮年部의 教育까지 고려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주일학교의 인원수는 교회의 여러가지 재미있는 Program 에 따라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計画時 充分한 공간을 마련하든가 장차 증축에 対한 대지 및 구조물의 고려를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주일 학교 도 二部拜礼및 教育을 실시하는 교회도 있다.

어린이들의 교육에 지루함이 없도록 活素를 넣어 주기 위하여 屋外空間과의 연결문제와 recreation 을 위한 놀이터와 정원을 마련함이 더 많은 어린이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일 학교는 유치원아에 해당되는 어린이로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제약이 없으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연령별 또는 学制別로 구분하여 学級当10~20名 정도를 대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그 구별은 교회에 따라 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여기에 우리나라의 한 例에 일인당 소요면적을 적어본다.

主 日 学 校

幼年部	BEGINNERS	7~9才国民学校1~3年	30 이하	2.25~2.7
初等部	PRIMARY	10~12 〃 4~6年	30 〃	2.25
中等部	JUNIOR	13~15 中学校	30 〃	1.8
高等部	SENIOR	16~18 高 校	20 〃	1.8
青年部	YOUTH	19~24 大 学	10-20人〃	1.62~1.8
壮年部	ADULTS	24 以上 夫婦中心	—	1.62~1.8

주일학교는 교육을 중심으로 예배도 행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업은 일요일의 定規 礼拜時間 前後를 利用하며 各部別로 全員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단한 예배를 보고 各学年別 10名이내로 수업을 받으므로 大教室과 이것을 구분 사용할 수 있는 小教室을 区劃할 수 있도록 Flexibility 가 있는 平面을 고려해야 한다.

小教室에서는 Group 別 活動과 Discussion 을 할 수 있도록 넓이와 使用計画을 검토하고 넓은 空間에서는 各種発表와 연극등을 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20~60 cm 정도 높은 무대를 마련해 두면 크리스마스의 各種行事 音楽会 기타 教育에 유용한 Program 을 훌륭히 遂行할 수 있다.

주일학교는 일반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일요일에 利用하는 空間이므로 平日에는 幼稚園을 経営하여 기독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함양시키며 어려운 教会 財政 을 돕거나 밤에는 불우한 職業少年의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要素도 동시에고려가 되어야 한다. 教室의 各種 칫수는 학생 연령별 구분에 맞는 치수를 적용 설계한다.

② 聖経 学校(또는 壮年主日学校)

성경학교는 주일학교와 연령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内容에 있어서도, 初歩的 基督教 教育이 重点이라기 보다는 壮年層에게 聖経의 解釈과 研究를 행하는 곳이므로 흔히 말하는주일학교와는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聖経研究 Group 도 주일날 예배를 前後하 여 행하는 教会가 많으며, 諸職들의 聖経知識 不足의 보완과 교회의 奉仕精神을 平日化하기 위하여 일

요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각기 일터에 임하기 전에 모 이는 Program을 실시하는 教会도 있다.

이 空間은 礼拜前後에 주일학교와 時差를 두고 모일 수 있으므로 別途의 교실을 必要로 하지 않고 대학생부 교실을 使用케 하든가 重復되지 않는 空間을 利用하면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다.

③ 伝導 및 奉仕事業을 為한 空間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能力과 無限한 사랑에 대해 추종하는 그의 백성으로 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기 마땅하며,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교인을 만들기 위하여 참된 眞理를 깨우쳐 주길 원한다.

이런 일이 이루어 지기 위하여 예배전당과 教育空間들이 必要했다.

우리들은 좀 더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事業을 통찰하고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伝播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罪悪의 그늘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人間을 救援하기를 願하고 계시다.

이것이 곧 伝導와 宣教事業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병든자를 낫게 하시고 천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奉仕精神이다. 이러한 伝導와 사회의 救済事業은 하나님을 証據하고 온 世界가 기독교 백성으로 化하는 重要한 事業임을 알고 이에 所要되는 여러가지 支援方法을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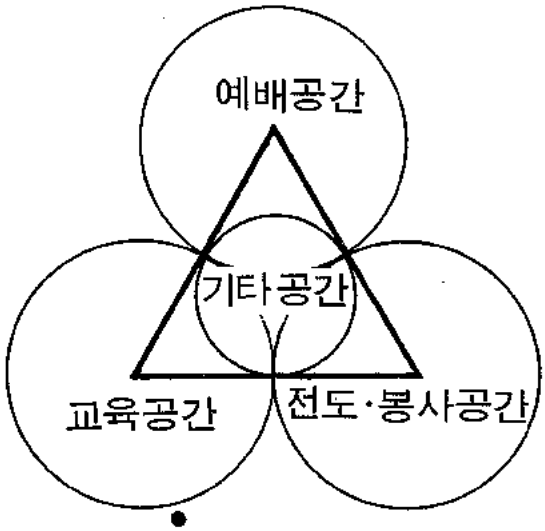

교회공간과 기능

※ 작은 교회에서는 교육과 전도·봉사 사업공간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伝導事業으로는 거의 모든 教会가 女伝導会를 갖고 있으며 女伝導師로 하여금 이 모임과 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教会의 規模가 크거나 熱意 있는 教会는 전국적인 伝導機構나 또는 世界的인 宣教機構를 運営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地域社会와 異質的이거나, 隣近과 距離가 있어서는 안된다. 교회는 周囲와 調和를 이루고 이웃을 돕는 참사랑의 行動을 보임으로서 하나님의 伝導事業을 無言中에 이룩하여야 한다. 이웃에는 불우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다. 이런 兄弟들에게 開放된 休息室과 談笑室이 있으면 이들은 이곳을 모임장소로 하여 教会内에서의 生活이 始作되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며, 主의 뜻에 感射하게 될 것이다.

醫療施設을 利用하여서도 같은 福音의 事業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훌륭한 醫師와 完備된 施設이 아니라도 되며, 応急加療와 간단한 安靜室로써 교회에 籍을 둔 醫師들이 잠간씩 정해진 時間에 돌보아 줄 수 있으면 된다.

또한 우리는 奉仕活動을 위한 空間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주일학교와 기타교육실을 夜間에 利用하여 지역 사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들 공간은, 주를 위하여 이미 確保되어졌으나 夜間에는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방들인 것이다.

모든 空間은 하나님을 위하여 活用 되어 지도록 検討 計劃해야 한다.

S씨 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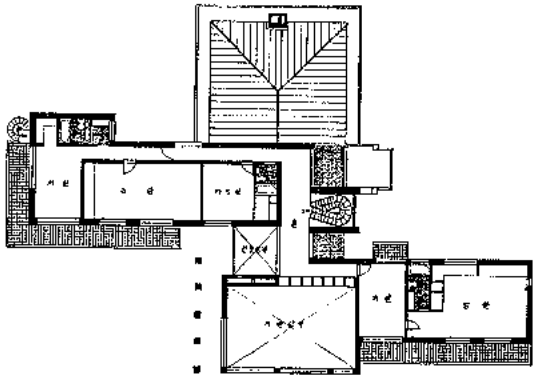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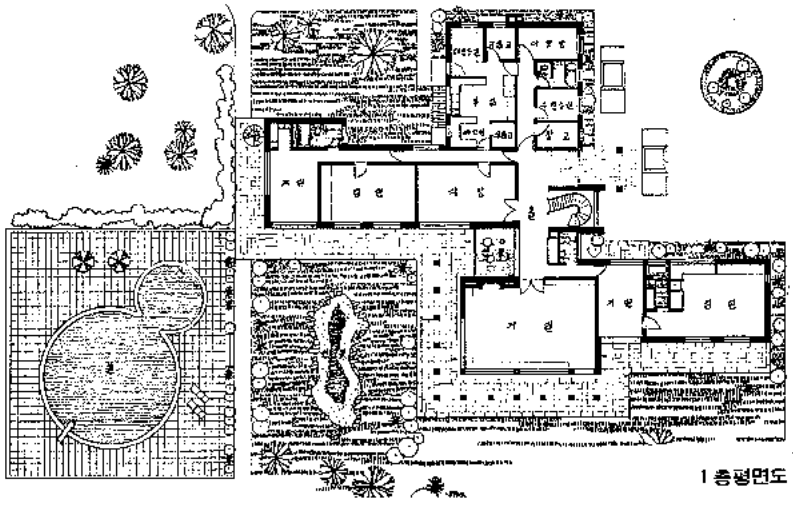

1층평면도

설계 : 正一建築研究所(宋基德)
대지면적 : 2,500평
건물면적 : 1 층 452m² (136평)
2 층 308m² (93평)
지하층 58m² (17평)
계 818m² (246평)
구 조 : 벽돌 및 콘크리트조
감 리 : 김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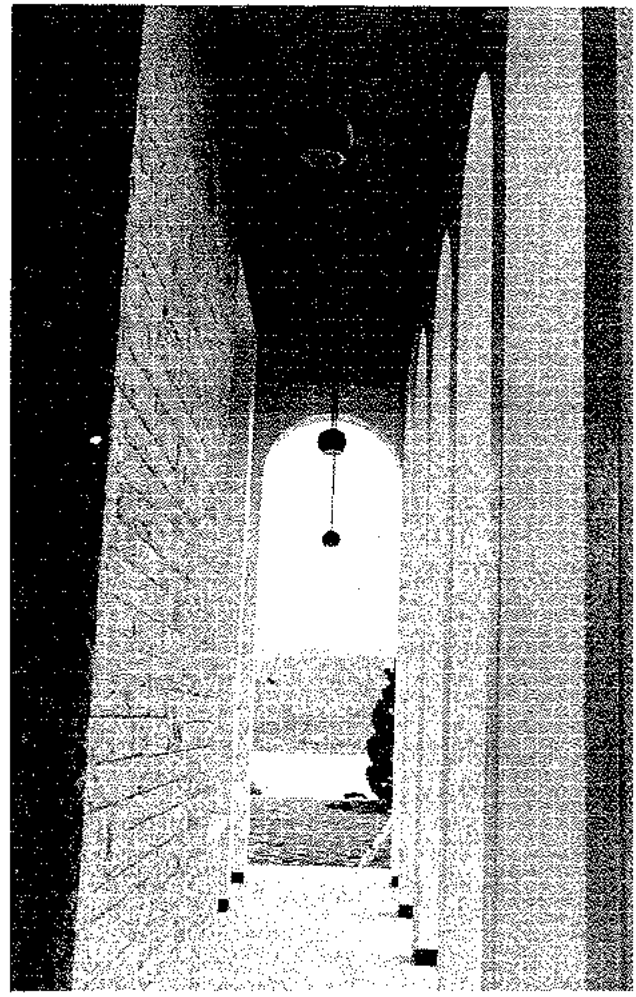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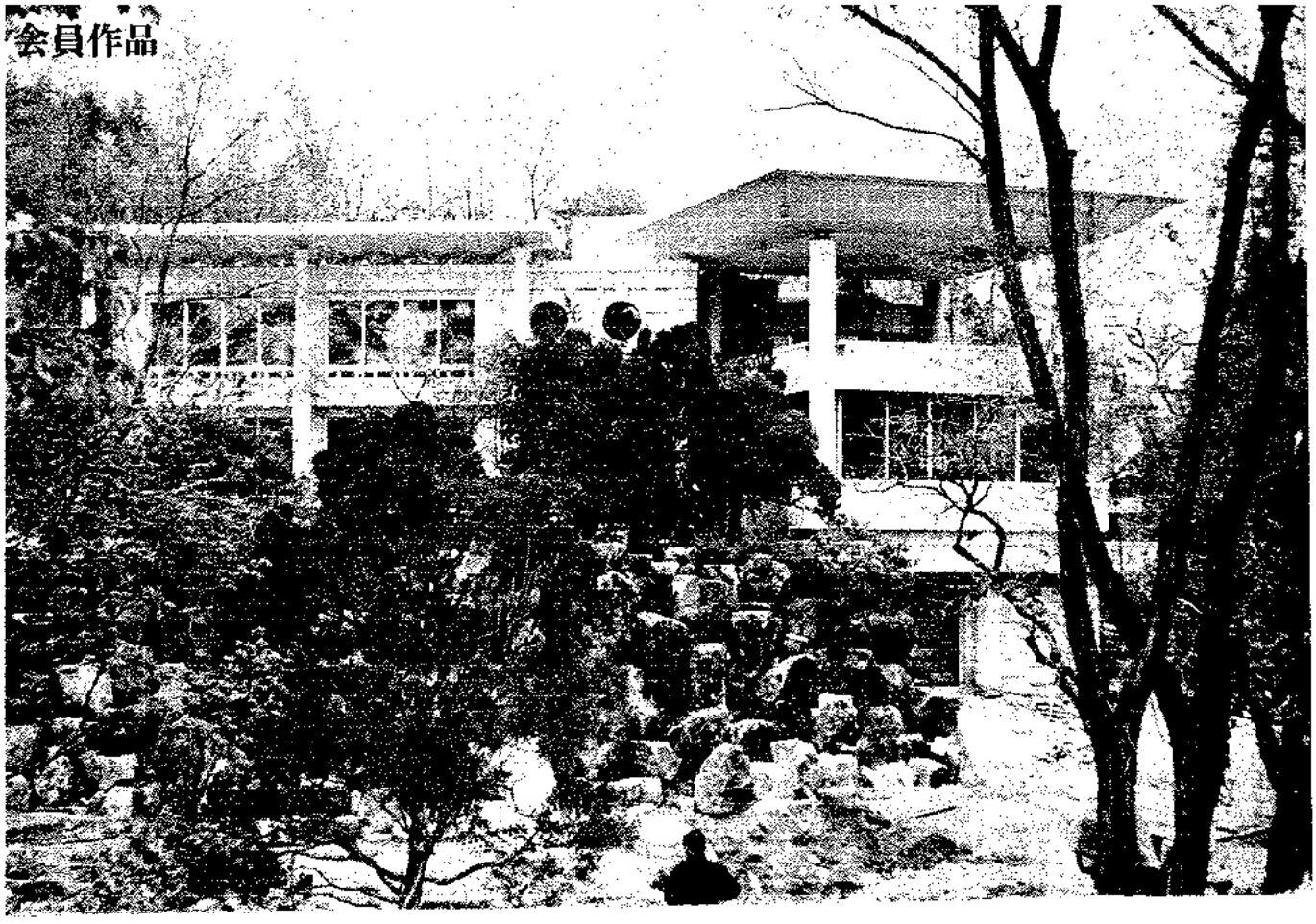

O씨 주택

설계 : 韓国建築文化研究所(洪哲洙)
위　　치 : 서대문구 세검정
면　　적 : 1　층　45평
　　2　층　45평
　　지하실　10평
　　연건평　100평
구　　조 : 라멘조
설계담당 : 표창근, 서용재
감리담당 : 이충구
설계개요 :

기능면에서 주택으로선 좀 새로운 시도를 찾아보았음. 지하실 차고 현관에서 디딤계단없이 수평계단을 1층과 2층에 연결함으로서 오르내림의 공간을 대자연의 산책의 시간으로 잡아주었다. 또한 2층까지 뚫린 거실을 거대한 조각의 연결로 우리 한국고유의 멋을 구사했음은 물론 외관상의 한국적 정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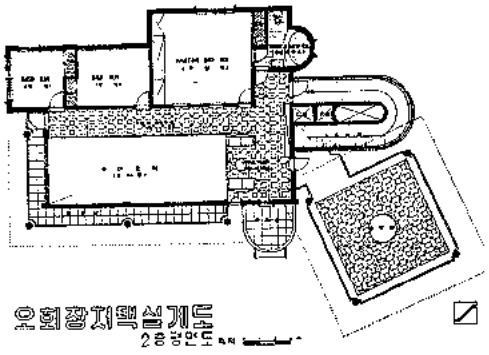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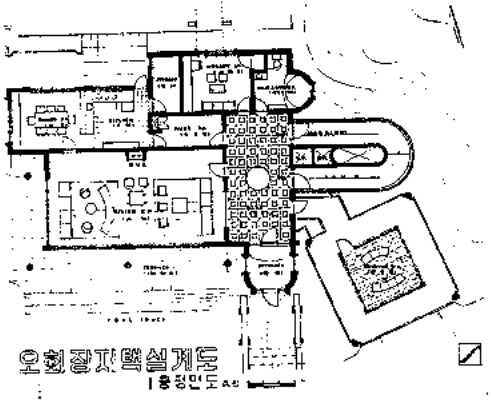

K씨주택

설계 : 三六建築硏究所(俞景哲)
대지위치 : 서울시서대문구신사동
대지면적 : 720m²
건축면적 : 지하 30m²
1층 128m²
2층 72m²
구 조 : 조적조
담당 및 감리 : 金文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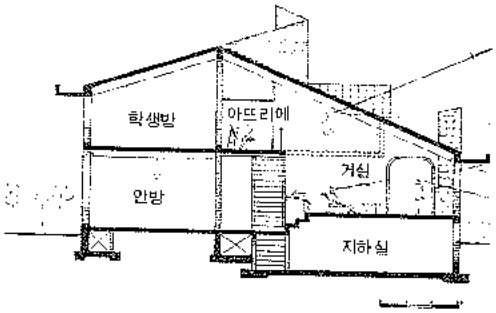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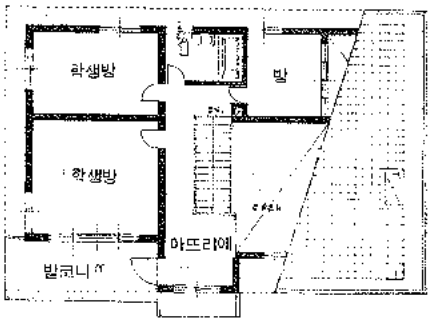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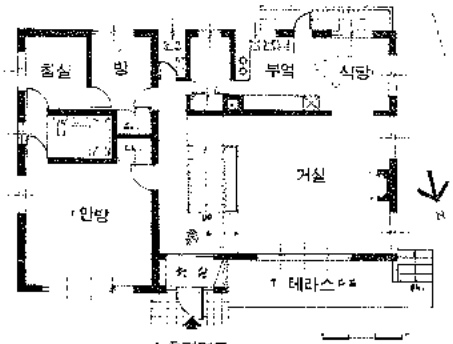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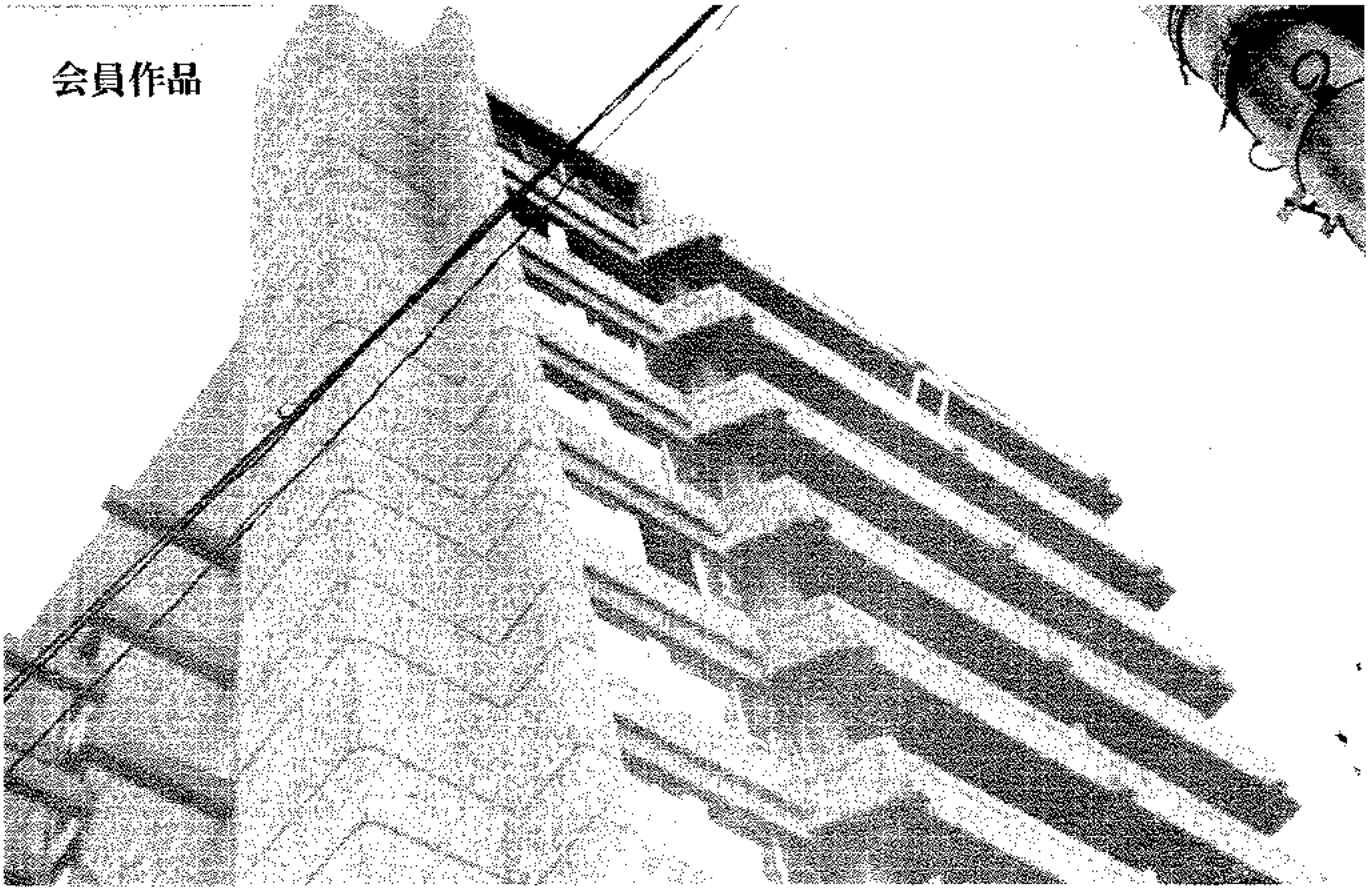

내자 호텔

설　　계 : 新一建築研究所(李興秀)
위　　치 : 서울 종로구 내자동
규　　모 : 대지면적 : 935m²
　　총　　수 : 지하 2 층, 지상11층, 옥탑 2 층
　　건축면적 : 579m²
　　연 면 적 : 4,220m²
시설내용 : 객실, 나이트코팅, 그릴, 싸롱, 미팅, 오락실, 이용실, 미용실, 주차장, 기타.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설비특기 : FAN COIL UNIT 및 공기 조화 시설
부기사항 : 이 호텔의 전체 계획은 연 면적 12,000m²로 계획 설계가 되어 있으나 그중 ⅓PART만이 시공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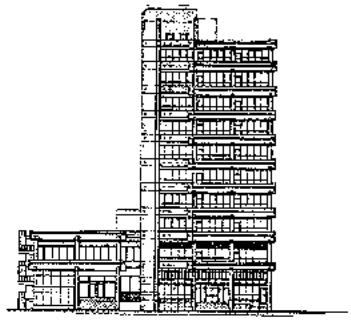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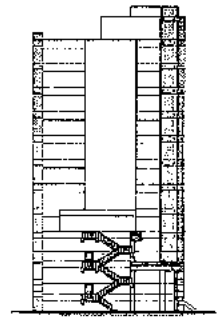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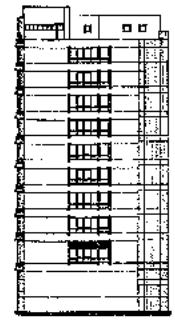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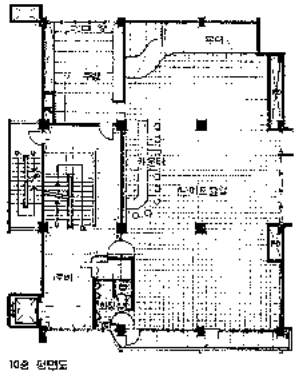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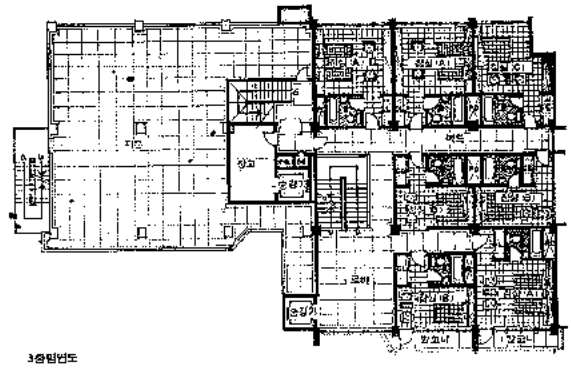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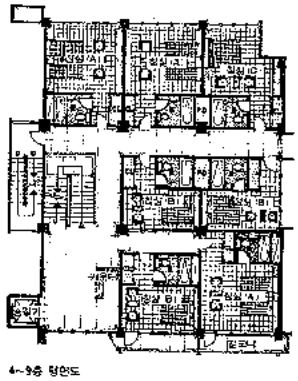

4~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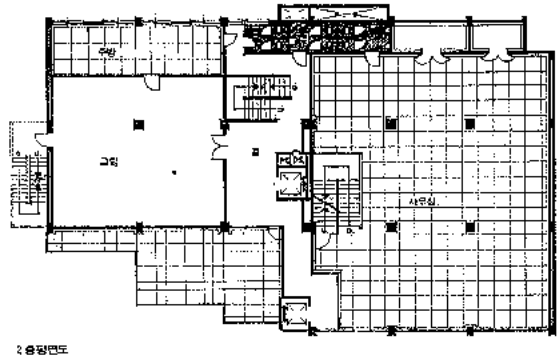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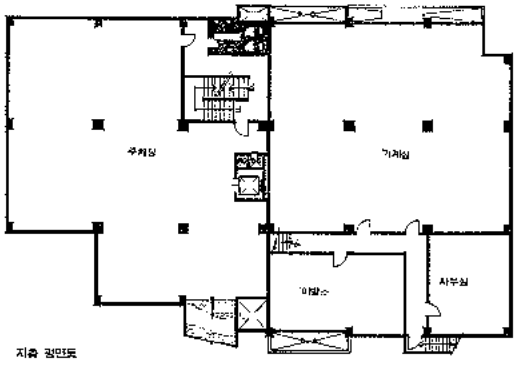

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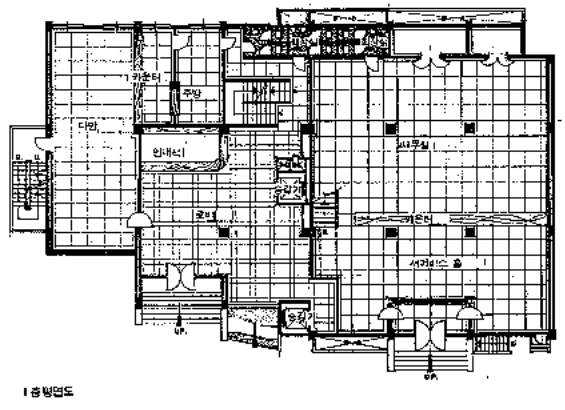

1층평면도

都市計劃에 있어서의 規制 및 統制(2)

申 東 海
(建設部 建築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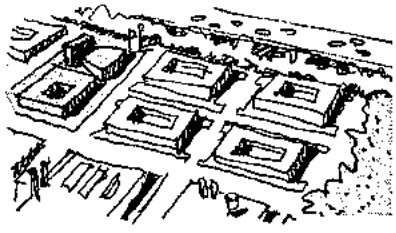

地域社会 施設—学校 및 오픈 스페이스—이 부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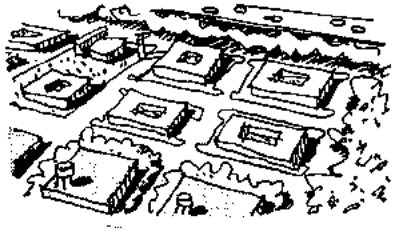

公害工場은 이전시키거나 施設 改善이 되어야 하며 낡아빠진 住宅도 · 同時에 철거되거나 이전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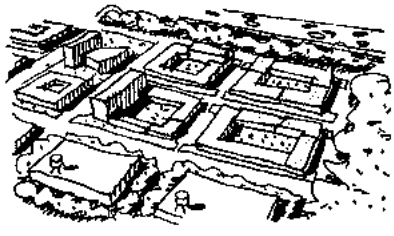

슬럼地区 改善에 있어서 위해를미치는 強制행사는 改善을 가져올 수 있는 規制규정으로 대체시켜야 하고 計劃은 대체의 난점을 피하고 각 단계에서 최대의 효익을 보장키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조절되어야 한다.

8. 新開発에 있어서의 規制手段 (Regulatory Measures in New Development)

오늘날 우리는 都市의 建物을 統制하는 一連의 規制 및 懲戒規定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現世代의 問題들에 비추어 볼 때 時代에 뒤진 것이기에 아주 適切한 것은 못된다. 그것은 아마도 財産의 価値를 維持시키고, 보다 살기 좋은 個人住宅을 保障할 지 모르나, 健全한 社会価値나 보다 살기 좋은 社会를 만들지는 않는다. 現行 規制法下에서는 또 하나의 Bath Crescent, Place des Vosges 나 Central Edinburgh 를 創造한다는 것은 大部分의 우리社会에서는 不可能할 게다. 「뉴 잉글랜드」(New England) 마을을 다시 푸르게 만들자면 混合用途때문에 더욱 어려울 게다. 단지 過去의 훌륭한 作品만을 模倣한다 해서 都市建設에 얼마나 많은 革新이 成功할까? 실제에 있어 現行의 Zoning, 建物의 되물림 그리고 最小垈地크기 規定이 設計에 큰 影響을 주며 또 芸術的 垈地設計의 基本인 芸術的 群集, 律動的인 空間 및 起伏의 創造를 不可能하게 한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設計를 얻을 수 있을까? 規制條件에 어떤 새로운 見解가 必要할까?

断片的으로 現存都市를 다루는 規制規定을 変更함은 어려우나, 진정 살가좋은 새로운 都市를 創造키 위한 새 規則을 作成하는데 前例없는 機会를 우리는 바로 지금 가지고 있다.

우리는 都市設計를 規制하는 모든 規定을 再評価하여야만 한다. 現在 施行되고 있는 모든 規制와 그들의 実際効果를 이해하여야만 한다. 또 새로운 都市를 創造하는데 必要한 概念을 提示하여야만한다. 그래서 그 概念으로 부터 規制技術을 発展시

켜야 하며, 그 反対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장 適切한 規制事項을 選擇할 수 있다. 必要하다면 設計에 基礎를 둔 새로운 規定을 発展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것의 모두합쳐 우리가 使用하게될 基本的 規制道具가 된다.

새로운 規制技術은 単独的으로 分離된 現行 建設計劃을 調整하는데 方向을 두어야 한다. 社会의 어느 한部分이라도 前后関係없이 単独的으로 設計되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建物의 機械設備가 建物의 機能이나 構造와 동떨어져 設計될 수 없는바와 같다. 우리가 따라야할 가장 重要한 命題는 各個住宅이나 単一建物別보다 全体의 観点에서 指導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建設業者는 그가 지은 집을 顧客 個個人에게 팔아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일은 이 観点에서 運用된다. 建築家는 建物을 個別的으로 設計하나, 훌륭한 建築家라면 空地 및 周囲建物을 조심스럽게 考慮한다. 그는 그가 設計한 建物이 周囲環境과 適切한 相互関係를 維持할 수 있도록 熟考한다. 各個建物에 基準을 둔 새로운 型의 契約(Covenants) 을 생각하는 것도 興味있을것이다. 都市設計에 貢獻이 되는 事項을 必要條件으로 導入하는 것은 可能하다. 都市再開発計劃은 完全한 市計劃의 一部分이어야 한다. 聯邦政府가 資金을 대는 모든 都市高速道路를 地方計劃의 活動의 테두리 안에서 設計되도록 要求함은 모든 그러한 計劃이 全体周囲 背景과 開聯되도록 保障케하는데 틀림없는 한 方便이다.

우리는 모든 都市에 있어서 建物의 重要要素가 분명히 그 都市의 다른 地域에 影響을 준다는 것을 認識하여야만 한다. 道路建設計劃은 그에 있어 으뜸가는 例이며, 그리고 그것이 影響을 미치는 都市의 他部分과 関聯性을 가져야만 한다. 道路建設의 경우에 있어 接續道路의 改善은 開発速度의 促進을 뜻한다는 것은 다아는 事実이나, 그 開発의 正確한本質은 쉽게 予測할 수 없다. 이 分野는 研究되어야 할 活動舞台(道路系統에의해 얻어지는)이다. 우리는 또한 道路를 建設함으로써 크나큰地域을 低密度開発로 이끌어 都市의 郊外 膨脹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새로 建設되는 高架道路建設에 알맞는 空地를만들도록 措置함은 우리의 関心事다. 空地는 高速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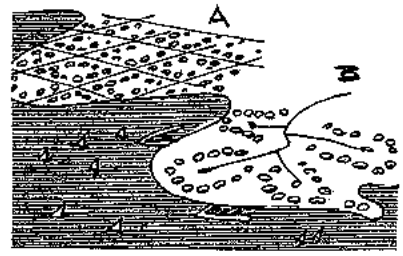

(A) 規制는 아무 감흥이 없는 단조로움을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되고 (B) 빈감한 군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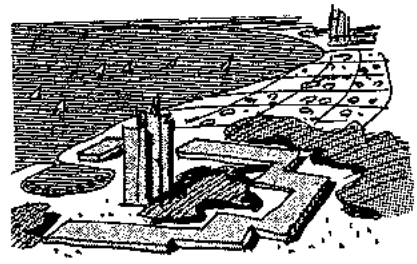

規制는 현존 地域社会에 있어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쇄신을 허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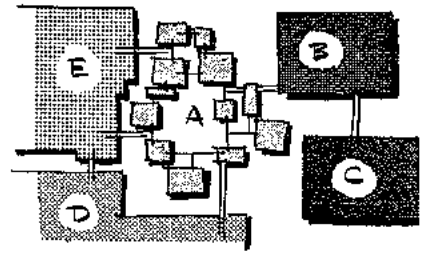

規制는 공원(B), 공업지역(C), 상업중심지(D), 주거지역(E) 들로 짜여진 대학 캠퍼스(A)에서와 같이 혼합용도의 쇄신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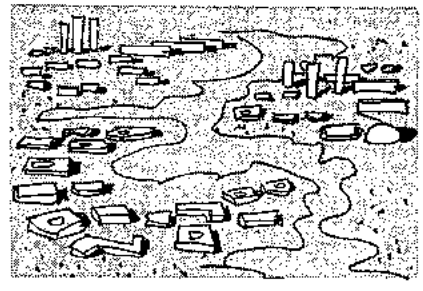

特別 規制内에선 cluster 형상의 군집과 혼합의 시험을 허용토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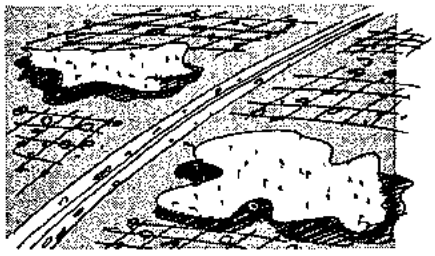

넓은 지역의 토지에 接近路를 얻어주는 高速道路建設은 規制를 통해 유보공간을 수반토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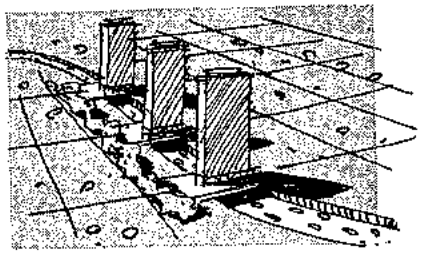

規制를 혁신하여 領空權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험을 허용토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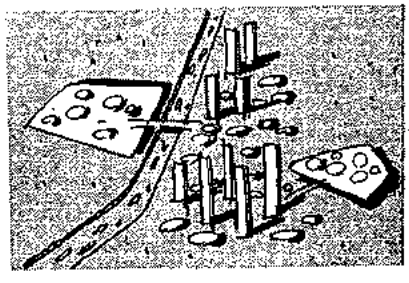

規制는 都心속에 짜여진 生動力넘치는 活力地帶를 결코 배제시키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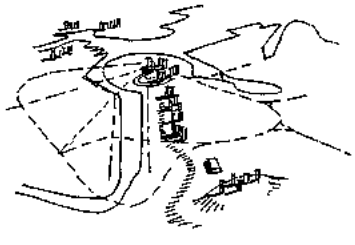

一部 規制를 두어 고층건물이 스카이라인의 형성에 영향을 줄 때에는 고층건물의 形態와 位置를 통제하여야 한다.

路가 낳은 어떤 性急한 開発이든 이를 크게 緩和시킬 것이다. 州 및 聯邦政府는 많은 훌륭하고 큰 公園을 만들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 위에 더할 것인가? 물론 市民이 그 費用을 내야할것이나, 과연 例를들어 為政者들이 얼마나 자주 空地를 收用키 위해 公債를 発行하기를 提案할까? 政治指導者들은 아마도 그렇게 費用이 엄청나게드는 案을 進陟시키길 꺼려할 것이다. 그래도 建築家들이 補佐하면 그 障碍物을 除去하는데 큰 도움이 될게다.

実質的이고 大規模的인 前進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많은 都市에서 「클리브랜드」(Cleveland) 의 「브라터널」(Bratenahl) 郊外에서 「페이스」(Carl Feiss) 씨에 의해 提議된 새로운 規制概念을 採擇하여야 한다. 「브라터널」의 Zoning 法規를 再作成하는데 있어서 「페이스」씨는 設計地区를 提案했다. 여기서 設計地区란 開発者가 特別設計案을 만들수 있는 指定된 区域을 말하며, 그 案은 著名한 建築家로 認定받은 專門家들에 의해 長点을 為主로 해서 審査되는 것이다. 案을 만드는 開発者가 없을 時는 그 土地는 市의 모든 部分에 適用할 수 있는 標準Zoning 規定에 의거 開発되어야 한다.

이例는 市의 많은 地域에서 現行 規制規定이 保存의 役割로서 有効함을 보여 준다. 우리는 그러한 技術을 賢明하게 応用하고 때론 拡張시킴으로써 그것이 強力한 建設道具로서 奉仕할 수 있음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다. 그러나 그러한 道具가 現在의 問題를 全部 解決하지 못함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規定도 결코 훌륭한 設計를 代身할 수 없는 반면, 都市規模의 훌륭한 設計도 健全한 規定없이는 不可能하다는 事実도 알아야 한다.

9. 現代 建築技術(Current Architectural Techniques)

建築家에게 恒常 擡頭되는 問題는 어떻게 하면 都市에서 設計를 統制할 수 있는가 이다. 이에는 대여섯 가지의 技術이 있다. 그 技術의 첫번째 것은 歷史가 긴 것이다. 그것은 事業規模로 施行된다. 다시말하면 어떤 明確한 期間안에 完全한 開発이 成功리에 끝나리라 予想되는 限定된 地域에서 施行된다. 이에 関聯되는 規定은 最小한의 것으로 단순히 空地 및 建物形態에 関한 一般的인設計計劃에 있어서의 明細뿐이다.

이러한 種類의 計劃은 實際에 있어 一連의 契約證書(建築協定)가 된다. 모든 建築施工業者는 定해진 形態規定 內에서 工事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미 記述된 建物外形 內部를 메꾸어 간다. 그들은 아마도 어느 方向에서나 10feet의 可變範囲를 부여받을 것이다. 그들은 지붕의 樣式 可能하다면 出入口位置에 대한 明細書를 提出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后者는 空地가 適切히 設計되었다면 通常 必要치 않을 것이다.

公共設計計劃이 틀림없이 成功하려면 空地와 個人建物의 相互關係가 健全하여야 한다. 空地는 가장 適切히 設計되어야 하고 民間開発者를 萎縮시키는 不便을 낳을만큼 그렇게 紀念的으로 커서는 아니된다. 建物의 形態도 잘 選擇되어 顧客을 為해 일하는 建築家들에 의해 実質的으로 形成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建物의 一部는 公用이고 다른 一部가 私用이라면, 그 建物用途및 相互關係는 주의해서 研究되어 서로 다른 用途가 相互補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施行은 이미 言及한 바 있는「스톡홀름」과「암스텔담」에서 都市全体에 걸쳐 오랫동안 効果를 보아왔다. 이나라에선 事業規模別로 成功 을 보았는데, 지난 世紀「보스턴」의 Common wealth 街에서 始作되었고, 좀더 最近엔 역시「보스턴」의 政府庁舎센타計劃(Government Center Project)에서다. 空地의 設計는 그 自体가 매우 重要한 것이기 때문에 有能한 建築家 한 名이 모든 空地를 設計하게 됨도 바로 그 理由에서다. 適切한 空地 의 設計는 本 計劃에 住所를 붙여 주는 格이 된다. 그것은 積極的으로 民間開発者를 끌 수 있는 卓越性을 준다.

이런 槪念의 本質을 理解하는 關鍵은 그 槪念自体가 쉽게 세워질 수 있는 要素—現地의 特色과健全한 市場需要에 根據를 둔—들로 構成되어야만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本章과 關聯시켜 볼때「보스턴」市의 政府庁舎센타計劃(Government Center Project)는 一歩前進한 셈이다.

「보스턴」市는 그 中心街를 構成하는 数많은 建物의 建築主가 数없이 많고, 또 全 建築主가 設計計劃內容대로 加入하리란 保障이 없으므로, 그 計劃自体가 어느정도의 悪用을 許容하게끔 設計되었다. 周辺建物의 一部 建設業者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許容받았으므로 (後에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中心街의 建物과 中心街의 空地를 이루는 建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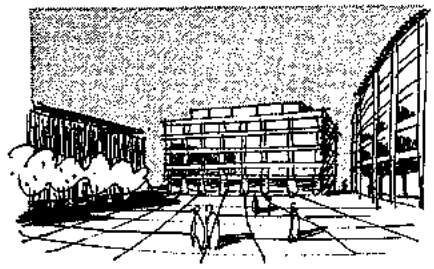

形態연구를 시작하는 한 방편으로서 눈의 位置에서 본 투시도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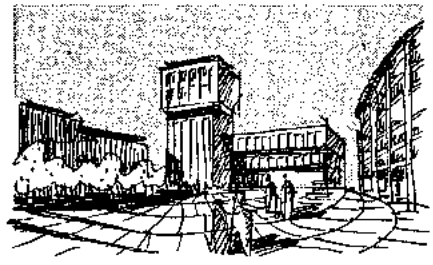

이는 완화정도와 設計에 있어서 변경의 허용정도를 결정짓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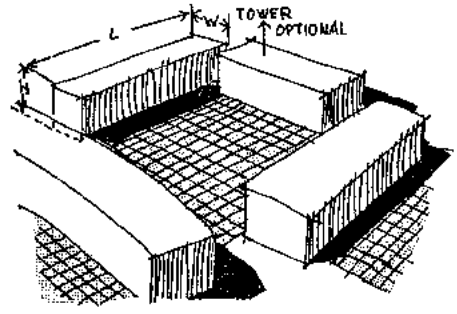

계획규모에서의 설계조절은 計劃에 建築物의 형태 및 위치,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動線을 명시하므로서 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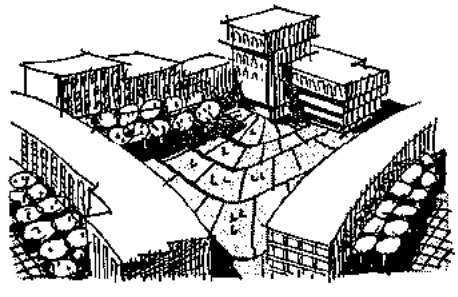

建築家들은 차후에 이를 자기 나름대로의 설계로 옮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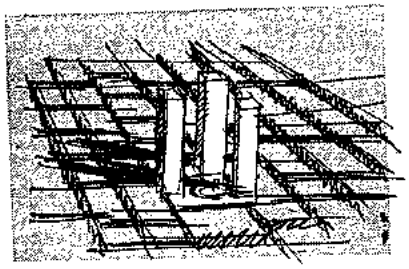

I. M. PEI (FAIA)는 都市의 중요한 地点에 타워를 세울것을 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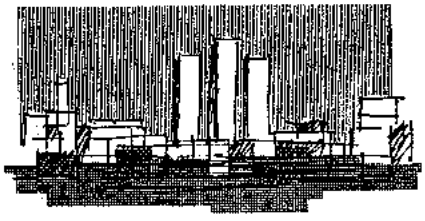

또 스카이 라인에 視覺 충격 역할을 할 수 있는 눈에 뚜렷이 띄이는 타워를 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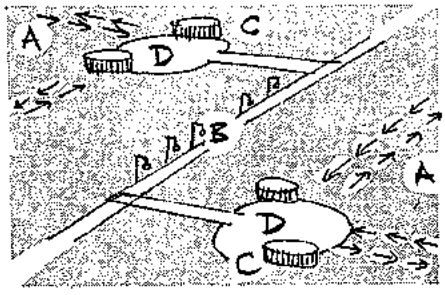

市의 改善을 위한 net-work 인 capital-bones으로 (A) 動線, (B) 공공시설, (C) 주차장, (D)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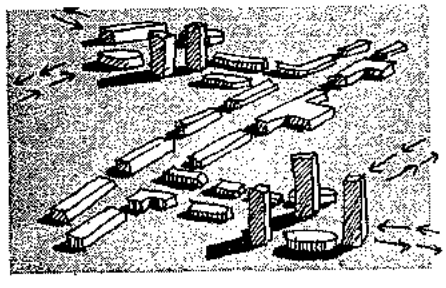

民間 開発計劃의 틀을 세웠다.

最小設計計劃에서와 같이 낮게 維持되었다.

그런데 이런類의 設計統制計劃은 事業基準에서 施行될 수 있다. 그것이 明示하는 設計要素는 空地 및 建物크기나 建物의 形態이다. 아직까진 建物의 材料, 色彩, 外觀, 또는 디테일을 明示하긴 어렵다. 空地를 더 細部的으로 設計하고, 모든 建物의 形態를 檢査하기 위하여 特別設計審査委員会를 設置함은 健全한 政策이다. 設計審査委員会는 諮問에 対한 대가로 여러분야의 開発者로 부터 報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事項은 開発計劃書 및 個個土地权利證書에 記録될 수 있을 것이다.

混亂된 都市風景에 視覚的 秩序를 주기 위한 興味있는 概念이 5・6年前에 建築家 I. M. Pei, FAIA 씨에 의해 提案되었다. 그가 設計한 堡地가 때론 都市設計의 觀点에서 考慮되지 않음을 발견하곤 그는 그의 建物을 簡単하고 角柱모양의 塔으로 設計하였다. 그것이 이웃에 있어 焦点의 役割을 하였다. 그는 그의 「필라델피아」의 「社会언덕」(Society Hill) 開発에서 特히 市의 스카이라인 에 適切히 位置한 세個의 塔을 使用하였다. 이는 実際에 있어 全「필라델피아」設計計劃의 完成이었으며, 大都市設計에 있어 核心地를 設定하는 概念의 重要性을 자세히 말해준다.

建築計劃家「크레인」(David Crane)은 그의 作品「千名의 設計者를 為한 都市(City of a Thousand Designer) 에서 이 概念을 더욱 発展시켰다. 「크레인」은 都市設計의 基本이 되는 모든 그러한 都市要素를 建設하려 하였고, 公用이 아닌 部分은 後에 建設하려 하였다. 公共部分은 유틸리티(都市施設), 重要 公共建物, 共有地, 그리고 空地이였다.

法에 의한 設計計劃을 必要로 하는한 없어서는 아니될 都市建設過程이 있는데, 그것은 都市 再開発이다. 都市 再開発에 있어선 그 어느 過程보다도 最高의 훌륭한 建物 및 그 配置에 関한 計劃을 必要로 한다. 이点에서 都市再開発計劃이 높이 評価받을만하나, 그렇다해서 全都市를 再建設하지는 못한다. 우리 앞에 남아 있는 切実한 問題는 어떻게 오늘날 都市가 要求하는 바를 充足시킬 수 있는 適切한 設計를 얻을 수 있는가다. 이를 解決키 위해선 洞察力있는 建築家들의 最近의 演說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0. 来日의 規制技術 (Tomorrow's Regulatory Techniques)

1964年 4月에 「아메리카 社会計劃 管理者 会議」(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of Planning)에서 「코르넬」(Cornell) 大学校의 「렙스」 (John W. Reps) 教授는 Zoning 을 為한 鎭魂曲 (Requiem for Zoning) 이란 題目의 白書를 発表하였다. 「렙스」教授는 그의 白書에 Zoning의 不適当함을 簡略하게 要約하였다. 그의 白書는 우리가 現在 使用하고있는 方法에 対한 批評일 뿐만아니라 어느정도 앞으로 前進키 위한 提案도 된다.

「렙스」教授는 都市를 形成키 위한 現在의 方法은 통털어 諮問, 統制, 誘導 그리고 公共開発이있음을 想起시킴으로써 序文을 記述했다. 일찌기 計劃処는 諮問의 役割을 말았었다. 아직도 많은 都処가 그런 方向으로 機能을 発하고 있으나, 그들의 权限은 限定되여 있다. 다음으로 統制(우리가 지금껏 討議해 온)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限定된 効用性을 가진 否定的인 方法이다. 誘導는 市가開発者들에게 刺戟剤를 提供함으로써 나타난다. 公共開発—道路, 유틸리티, 公共施設—은 「크레인」씨의 생각의 根幹인 都市形成의 座標로서 最近 에 提議됐다. 公共開発処는 이 概念을 지키려 努力한다. 「렙스」教授는 마지막 方法을 크게 活用하여야 하고 Zoning은 計劃施行의 한 작은 方法이기는 하나, 더욱 健全한 方法과 代替시킬 必要가 있다고 提議한다.

「렙스」教授는 Zoning을 酷評하는데 그 理由로서 補償節次; 悪用; 偏狭한 地方官吏의 運用; 論難이 많고 어려운 問題에 対한 性急한 答辯; 地区間의 不合理的인 相関関係; 全体都市計劃과의 関聯性 희박; 規定検討의 司法部 예속; 그리고 公訴事件에 있어서의 法院의 技術的 知識의 缺乏 等을 들고 있다.

그는 이런 問題들을 카테고리的 提議로써 答하려 한다. 보다 훌륭한 補償制度와 向上된 補償金制度를 導入하자; 모든 都市로 하여금 土地規制制度를 強制로 施行케 하자; 大都市나 州의 基準에서 Zoning이나 그와 同等한 것에 対한 責任을 附與하자; 特殊한 狀況이 일어날 때 이를 다룰 수 있는 規制的制度를 갖추자; 機能을 잘못 발휘하는 地区나, 実際 施行되지 않는 類似用途地区(Compatible Districts)를 없애자; 모든 規制庁을 하나의 調整된 그리고 能率的인 庁으로 強化 시키자; 모든 法令은 地域計劃에 基盤을 두자; 博識한 専門家의 判断에 더욱 重要한 役割을 주자; 넓은 地域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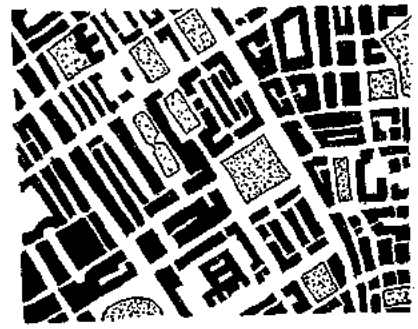

런던의 Bloombury地域.
規制대상 : 광장, 土地의 建築, 材料, 높이, 街路.

암스테르담 中心部
規制대상 : 主広場, 土地의 建築, 높이, 運河, 街路.

파리의 ile de la Cité
規制대상 : 부지, 江건너 遺跡, 土地의 建物, 街路網.

다 公平하게 管轄하자; 그리고 專門家들로 構成된 州管轄 公訴法院을 세우자.

「렐스」教授는 Zoning의 代身으로 "開発規定" 体制를 提議한다. 実際로 그것은 모든 規制道具들더 公正하고 合理的인 한 体制로 統合할 것이다. 그는 또 綜合的인 目的과 官吏들을 指導할 標準의 地域開発計劃을 提議한다. 그러한 計劃은 強制力을 가져야 하고, 土地用途, 交通, 密度, 그리고公共施設—計劃에 새로운 重要性을 주는—을 보여주어야 한다. 「렐스」教授는 現在 施行中인 것보다 더 広範囲한 計劃을 為한 地理的 管轄权을 생각해 냈다. 実際우리는 大都市委員会 및 当局과 같은 特別한 基盤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機構를 가지고 있다. 土地使用에 関한 責任은 오로지 大都市規模에서만 合理的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렐스」教授의 提案의 重要性은 目的과 政策에 対한 敍述的 記述뿐만 아니라 図式으로써 綜合的인 計劃을 作成한데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想像치못했던 가장 可能性있는 都市計劃을 위한 道具이다. 開発審査局 (An Office of Development Reivew)이 그런 計劃을 管掌하여야 한다. 部分的으로 開発된 地域에선 옛날의 統制体制의 흔적이 存續될 것이나, 새 地域에서는 옛 規定을 適用시켜서는 아니된다. 開発은都市再開発에서와 같이 大単位 計劃에 의거해서 새로이 判断되어야 한다.

「렐스」教授는 그가 提議한 体係가 現行規制施行에 隨伴하는 크나큰 不明確性을 줄일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는 1916年이 Zoning이 急進的이라 생각되던 時期임을 指摘하면서 그의 計劃이 急進的이라는 것에 別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큰 役割을 어깨에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나를 물으며, 一連의 質問으로써 그의 言及을 끝마쳤다. 그 内容을 要約하면 우리는 정말 그가 必要하다고 記述한 그런 種類의 計劃을 만들準備가 되었는가? 都市設計思考와 知識이 그 任務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 ? 이다.

우리가 꺼려하는 制限規定에 対한 治療는 大衆이 熱狂的으로 応答할 수 있는 積極的이고 創造的인 設計概念으로 그것을 代替하고 都市設計에 対한 大衆의 関心과 信任을 사야한다. 建築分野및 많은 工学部門에서는 상당히 大衆의 信任을 얻었다. 그런 반면 大衆은 都市設計를 원하여야만 하고 또 가까이 그에 대해 支拂할 줄 알아야 한다.

都市問題는 統制当局에 의해 모든 水準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모든 建築家는 大衆을 깨우칠수 있는 実質的인 設計概念을 発展시키고 그리고 그 可能性을 자세히 説明하여 줌으로써 그의 맡은 바 役割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建築家의 役割은 実質的이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디어로써 未来像을 내 놓는 것이며, 항상 規制와 그 結果 間의 関係를 研究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가장 좋은 結果를 얻는데 支障을 주는 規定이 결코 採擇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制限規定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자를 던졌다면, 그것은 初期施行에 있어 훌륭한 都市設計를 作成키 위해 規制道具로서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機会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끝—

(Urban Design :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 ——written and illustrated by Paul D. Spreiregen 中 第10章인 Regulation and Control을 完譯한 것임)

제9회 건설주간(73. 4. 1～7.)

번영위한 유신과업 건설로서 이룩하자

유신정신 구현위해 국토건설 계속하자

콘크리트의 高強度化 動向

吳 昌 熙
漢陽大学校 工科大学 副教授

콘크리트는 오늘날 土木建築의 構造用材로서 널리 使用되고 있으며 또한 主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나 本質的인 欠点으로서 単位重量이 크고 引張強度가 적으며 硬化過程에서 収縮破裂이 일어나기 쉬운 点들을 들 수 있으나 이는 他構造用材 와는 달리 一般的으로 施工現場에서 製造되는 것 이므로 応用上의 合理化와 施工技術과 注意로서 어느 程度是正할 수 있으므로 土木建築技術者는 이 本質的인 欠点을 明確히 認識하고 材料選択, 配合, 施工等에 万全을 期할 必要가 있다.

한편 콘크리트의 沿革을 살펴보면 紀元数世紀前에 이미 Egypt사람들은 石灰에 모래를 混合하여 積固用接着剤로 使用한 것으로 伝해지고 있으며 로마人은 石灰에 모래와 자갈을 混合한 콘크리트를 使用하였으며 더우기 石灰에 火山灰를 섞어 海中工事에 使用한 소위 Roma工法이 中世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18世紀末葉에 粘土質의 石灰石을 焼成하여 天然세멘트를 만들게 되고 1824年에 英国의 Joseph Aspdin氏가 石灰와 粘土의 粉末을 人工的으로 混合 焼成하여 세멘트 만든 方法을 完成하여 特許를 받어 Portland 세멘트라 이름지었고 世界各国에 보급하게 이르렀다.

그 後 이 세멘트는 많이 改良되고 特殊세멘트가 계속 発明됨에 따라 콘크리트도 현저한 改善을 보게되고 그 活用도 넓어지고 있다.

特히 材料学的 研究로서도 Melan氏 및 Neumann氏로 부터 시작되어 1919年 Abrams氏가 콘크리트의 強度에 関한 물세멘트 比説을 発表하여 오늘날 콘크리트 強度의 개념 및 示方書의 基礎를 얻게 되었다.

이로부터 콘크리트가 構造材로서 높이 評価 받게 되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그 使用材料 및 製造 過程의 많은 要因에 依하여 品質변동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中 強度에 영향을 미치는 큰 要因 으로서는 첫째 使用材料인 세멘트, 骨材와 配合用 水質을 들 수 있으며 配合設計인 骨材의 粒度, 各材料의 混合率 물시멘트比 및 Workerbility를 둘째로 들 수 있다.

세째로는 施工方法으로서 混合方法 打設(placing), 養生方法(特히 온도 습도관계)및 材令등을 그 큰 要因으로 들 수 있다. 더우기 品質管理面에서 본다면 同一材料, 同一配合, 同一施工法으로 만들어진 同一한 콘크리트에 있어서 材料自体가 갖는 不均一性, 配合의 微少한 変動 施工者의 人為的인 個人差等 많은 原因으로 그 強度의 変動이 있음은 周知의 事実이다.

이와같이 콘크리트의 強度에 영향을 주는 第一類因子와 第二類因子는 60余種으로서, 現場콘크리트가 大部分인 우리 나라 콘크리트의 品質 管理問題에 있어서 많은 問題点을 남긴채 그래도 別 問題없이 無難히 많은 構造物이 建造되고 있음은 더없이 多幸스런 일이라 보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또 만족하여서는 안 될것으로 生覚된다.

우리는 低強度콘크리트를 為主로한 設計와 施工으로는 오늘날의 建築生産近代化에 따른 Curtain

Wall工法이라든가 Prefabrication工法等에 많은 問題点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觀点에서 콘크리트에 対한 動向과 이에 対하여 살펴볼 必要를 느끼게 된다.

콘크리트는 現在 그 用法上으로 보아 現場 콘크리트, Pre-cast 콘크리트, Pre-stressed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製品等으로 分類되나 各各 適用部位에 따라 要求되는 良質의 差는 있으나 高強化가 要請된다.

近年에 와서 世界的으로 使用하는 콘크리트의 強度는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軽量化하기에 이르고 있다. 더우기 時間的인 因子를 加한 早期脱型과 力学的인 合理化를 期하기 위하여 stress導入等의 活用으로 그 方向이 設定되고 있는 実情이라 하겠다. 이는 세멘트強度의 改善과 施工技術의 向上으로 比較的 容易하게 高強度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다는 点을 들 수 있으나 前述한 建築生産의 近代化에서 要求되는 콘크리트와 鉄筋에 관한 構造 材料와 施工에 関한 問題를 綜合하고 経済性에 関한 検討로서 構造物発展에 寄與하고저 하는데 그 意義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約6年前 日本建築学会 材料施工委員会산하의 高強度콘크리트研究会에서 構想한 内容을 要約하여 보면

1. 高強度 콘크리트는 設計基準強度 270kg/cm² 以上의 普通骨材 또는 軽量骨材 콘크리트로 規定하고 콘크리트의 材料는 精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시멘트는 Portland普通 또는 早強 세멘트로 하되 푸대로 포장한 것은 使用하지 않는다.

3. 骨材는 모래·자갈, 깬자갈 및 人土軽量骨材로서 品質規制를 한다.

4. 主筋은 SD30以上의 異形鉄筋으로 한다.

5. 用水 및 混和剤는 嚴格한 規制를 한다.

6. Fly Ash의 使用을 피한다.

7. 콘크리트는 Ready mix콘크리트를 原則으로 한다.

8. (Foc設計基準強度)는 270~420kg/cm²의 範囲로 하되 軽量인 경우는 270~360kg/cm²로 한다.

9. Slump는 15cm以下로하고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한다.

10. 計劃配合의 表示는 絶対容積法으로 한다.

11. 単位 세멘트 量은 普通 砕石(깬자갈) 보다 320以上 450未満 軽量은 340以上 480未満으로 한다.

12. Mixing plant는 全自動 Batching plant 原則으로 하여 권장한다.

以上과 같이 規制하고 그외 設計上의 諸般事項 施工管理 및 検査에 이어 試験検査의 設備에도 指定規制하고 있으며 高級,常用,簡易,特殊等의 4等級으로 나눈 콘크리트에 対하여 各各 品質規準,管理基準, 施工基準을 두어 設計基準強度와 対応하게 하는 案도 나와있다. 이러한 規制에 관한 高強度.콘크리트의 材料 및 施工에 観한 根本的인 問題点을 들어보면,

1. 材料施工에 관련한 設計 計劃上의 問題를 비롯하여

2. 施工計劃　3. 材　料

4. 콘크리트配合　5. 콘크리트構造

6. 運　般　7. 打　設

8. 養　生　9. 형　틀

10. 鉄　筋

11. 品質과 施工管理体制等의 諸般問題点들이 있겠으나 이에 対하여 充分한 検討와 研究로서 臨한다면 高強度콘크리트를 얻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믿는다.

한편 超高強度 콘크리트에 관한 研究도 많이 進行되고 있다.

콘크리트의 材料強度는 一般的으로 空隙이나 内部의 微細한 크랙等으로서 그 발휘할 수 있는 強度의 몇十分의 一에 不過한 낮은 強度로서 使用하고 있으나 원래 콘크리트는 그 발휘할 수 있는 理想強度는 5000kg/cm² 内外라고도 하고 있다.

最近 日本에서는 보통 使用하고 있는 材料로서 28日 圧縮強度 700~1000kg/cm²란 超高強度 콘크리트가 製造되어 注目을 끌게되고 一部 実用 段階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超高強度 콘크리트 製造方法 으로서는 結合材로서의 세멘트를 化学組成을 改善하는 方法, 合成樹脂等의 添加로 強度를 높이는 方法, 配合, 다지기 및 養生方法等의 改良과 超低물 시멘트 比로서 強度를 높이는 方法等이 생각되나 製造 및

取扱의 容易性,經済性의 観点에서 가장 実用性이 높은것으로 보이는것은 従來와 같은 材料를 使用할때는 超低물 시멘트比 콘크리트라 생각된다.

더우기 L. J. Parrott氏의 Report에 依하면 圧縮強度 1000kg/cm²의 超高強度 콘크리트를 従來의 다지기와 養生 方法으로 製造하는데는 물 시멘트比가 強度의 要求値로 보아 28%程度로 할 것이며 Worker bility를 감안해서 시멘트総骨材量 配合比는 1:2程度의 天然骨材 또는 砕石이면 充分하고 発表하였다.

이와같은 超富配合 콘크리트는 水和発熱量이 많아지고 収縮과 Creep도 크게될 傾向이 있으므로 可能한 限 세멘트量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減水剤의 利用이 가장 効果的이라 보겠다.

以上과 같은 점을 考慮하여 東京大学의 六 車熙 教授는 減成剤를 使用하여 単位 세멘트量 470 kg 砂率 42%, Slump 7~10cm, 물시멘트比 30%로 서 28日 圧縮強度 800kg/cm² 内外의 超高強度 시멘트를 만들어 現在 一部工場 製品에 使用하고 있다한다.

한편 Auto elave養生法과 活性 Silica粉末을 세멘트 또는 消石灰에 添加하여 石灰 Silica反応을 일으키는 方法을 利用하면 実験室에서는 2000kg/cm²을 얻을 수 있다하며 実用的으로는 1000kg/cm²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Report도 있다.

이와같이 세멘트는 그 強度面에 있어 많은 発展을 보게되고 콘크리트에 対한 理想強度에 接近하고 있음은 世界的인 動向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와같은 高強度 콘크리트는 어디에 쓰여지며 또 그 目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一般的으로 鉄筋콘크리트造에 있어서 現場 콘크리트인 경우 Rahmen造라 하면 Span이 10m를 넘는 것은 無理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事実 現在와 같은 低強度 콘크리트 使用으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여기에 対하여 앞으로 콘크리트를 代置할 새로운 材料가 果然 出現할 것인가 하는 問題도 現與件으로는 極히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構造物에 対한 콘크리트依存度에 対하여서는 鉄鋼과 競争은 加一層 심해질 것이며 어디까지나 共存의 性格을 띠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構造物은 超高層建物이 普遍化될 것이며 나아가서 海岸建築의 発達로 海上都市의 出現도 予想된다.

이러한 時点에 우리는 콘크리트에 関하여 마치 그 強度나 品質에 있어 어느 테두리 안으로 既定시키고 品質管理와 施工, 그리고 設計에 이르기까지 疎惣하게 取扱하는 傾向도 없지않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構造物의 王座를 차지하는 콘크리트에 対한 研究와 努力으로 콘크리트의 展望과 動向에 발맞추어 새로운 手法과 技術向上으로서 建設界에 이바지 할것은 물론 새로운 工法으로서의 콘크리트에 対한 再認識이 절실히 要請된다.

하지만 高強度化를 期한다면 우선 各部材의 断面을 縮少할 수 있으므로 自重을 減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構造方式을 달리할 수 있게되어 지금까지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서 얻을 수 있는 利得이란 말할 必要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構造手法을 달리한 工法이 発展하고 普遍化하게 마련이다. 이미 外国 先進国에서는 前述한 Curtain Wall 工法과 Pre-cast 콘크리트와 Pre-stressed 콘크리트를 利用한 工法이 오래 前부터 採択되어 工期의 短縮과 人件費의 節約을 가져오게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装備가 必要하다는 点에서 建設業의 大企業化가 要請된다는 点도 없지는 않다.

콘크리트의 展望과 構造物의 將來性에 対하여 생각해 본다면 社会変革이란 背景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対하여 깊은 言扱은 避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拡大一路에 있으며 크게 発展하고 複雑하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基本的인 環境속에 어느 因子를 들어 보아도 세멘트 콘크리트 使用量의 增加가 予想되는 것은 거의 確実視 된다.

베를린 필하모니 音楽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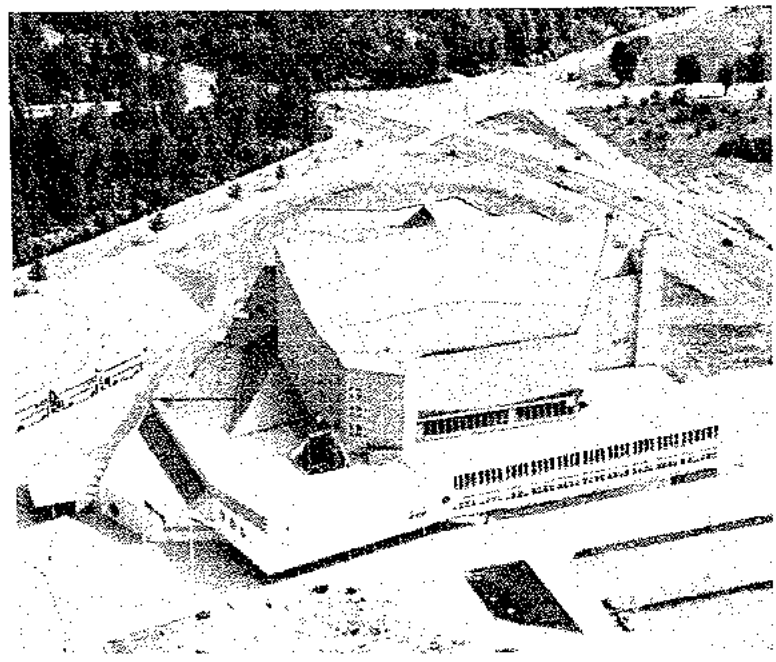

—율겐 · 에디케—
(具光深 譯)

20年代의 最低生活을 위한 住宅과 "지-트렁크"의 問題와 대결한 사람, 그 活動을 拡大해서 第1次大戰直後에 잊어버리기 쉬운 꿈을 実現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年代의 政治的條件에 의해 방해당해온 사람, 또한 第2次大戰後에는 "캇셀"과 "만하임劇場"計劃을 세웠으나 그것을 実施할 機会를 혜택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建築家 "한스·샤로운"은 드디어 자신의 생각으로 "페스티발·홀"의 建築을 実現한다는 偉大한 機会를 획득하게 되었다. 오랜 生涯를 통한 깊은 洞察가운데서 억제해오던 것이 이 "베를린"에서 일시에 분출되어 나온 것이다. 때문에 이 "한스·샤로운"의 建築은 実施에 있어서는 "베르나·웨버"와 "굴드·엔텔라인"이 協力한 것이나 주변에 흔하 볼 수 있는 많은 建築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数十年 後에야 実現되어졌다는, 偉大한 建築家의 個人的인 信條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이 建築은, 單純히 個人의 伝記의 面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思想内容에 있어서도 因襲的인 굴레를 타파하고 있다. 여기에 형태지워진 것은 단순한 建築은 아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建物을 통하여 個人과 社會와의 関係를 새롭게 規定지워간다는, 時代에서 時代에로 이어져온 試図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建築의 建築的要素自体를 分析하는 것은 곤란하다. 建築的要素는 이미 보다 높고 넓은 要素와 관계를 갖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批判的인 異論도 必要할 것이다. (公正을 期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異論은 放棄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批判의 対象이 어떠한 位置에 있는가를 분명하게도 분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디테일」의 批評에 의해 全体를 볼 눈을 상실해버리는 사람은, 「디테일」이라는 것은, 그 位置와 意義를 그 自体로서 얻지는 않고 보다 높은 위치의 것에로의 從屬에 의해 최초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記憶에 깊이 간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建築, 무엇보다 홀이 참으로 印象的으로 보인다는 것은, 建築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空間創造이며 空間形成이란, 오늘날 거의 잊어져가는 옛教訓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모든 造形의 根源的인 즐거움과 고뇌는 여기서 다시 建築創造의 "트미난드"에로 승화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端的으로 말하면 "필하모니"의 内部空間은 現代의 적지않은 偉大한 成果의 하나이며 近代建築의 傑作의 하나이다.

外部에서는 극도로 多様하게 보이는 이 建築은, 單純한 秩序原理 위에 構成되어져 있다. 그것은 "호와이에" 위로 높이 치솟은 홀과 낮은 不等辺L字型의 下部建築体와의 두개의 部分으로 이루어져 있다. 主要한 入口는 L字型建築体의 二辺의 交点

에 위치하고 있다. 觀客의 흐름은 하층의 玄関 홀의 바로 뒷편에서 나누어진다. 한편은 玄関홀과 향해서 있는 階段室을 통해 上層으로, 그래서 크로크·룸에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몇 개의 專用階段을 통해 홀로 유도된다. 거기에 対해서 또하나의 흐름은 玄関 홀에서 같은 계층에서 左로 꺾여 크로크·룸을 통과하여 몇 계단 지나서 "호와이에"로 통한다. 이 "호와이에"는 비스듬히 上昇하는 메인·홀의 아래에 있다. 여기서 다시 階段室을 통하여 上層에로 분리되어지나 여기서는 앞의 경우와 같이 專用階段에서 메인·홀과 連絡되어진다. 이와같은 演繹的인 原理에 의하여 分化된 空間系列의 形成, 즉 낮은 空間과 높은 空間, 좁은 空間과 넓은 空間의 並列이 可能하게 된다. 서로 交錯하면서 合쳐지기도 하고 步行橋와 같이 通路에서 연결되기도 하는 空間一要約하자면 그 自身分節을 갖이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經驗을 주면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視覚의 흐름을 주는空間의 連続一이 可能하게 된다. 그것의 採光은 下層의 建築体의 주축에서 메인·홀의 垂直의 壁에로 상승해가는 두개의 경사의 天窓과 "호와이에"의 커다란 窓에 의한다. 이 空間의 連続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긴 하나 한편 복잡한 要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空間的인 秩序는 어느 部分에는 거기에 対応되는 構造的인 秩序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최초로 実現되어졌다는 空間이 어떠한 것인가는, 이것과 劇場建築에 있어서 일반의 호와이에의 취급방법과를 비교해보면 잘 알수 있을 것이다. 空間을 따로따로 分離한다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水平과 垂直으로 번져나가는 화려한 空間이 나타나고 있다. 空間을 限定하는 壁이 屈折하고 있는 것은 그 自体가 目的만이 아니라 連続性을 放棄하는 것 이상의 空間分割을 위한 手段이다.

이와같이 分化된 空間의 連続가운데로 메인·홀의 巨大한 立体가 나무기둥과 같이 솟아오르고 있다. "호와이에"를 홀에서 분리해주는 通路는 좁은, 일종의 幅이 좁은 水門이다. 안으로 걸어들어가면 거기엔 別世界다. 애매함에 대신해서 明瞭함이 모든 分裂을 넘어 마침내 到達한 單純함이 나타난다. 모든것이 오직 하나로 향하여 集中되고 있다. 〈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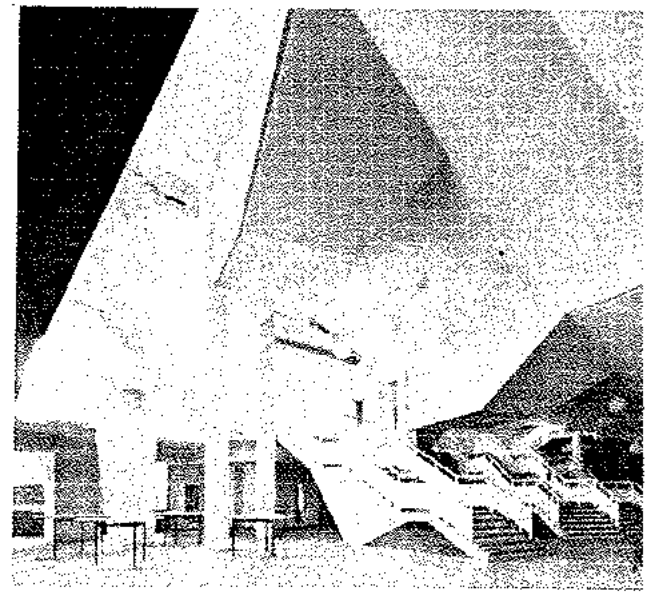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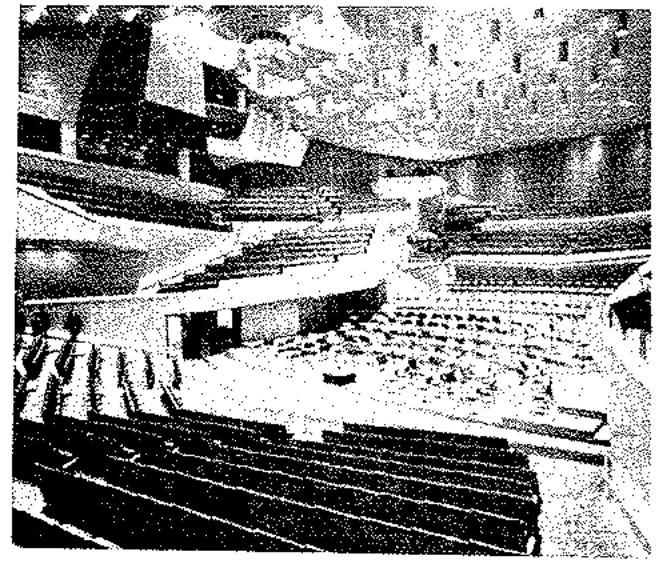

楽을 中央으로 해서〉, 그렇게 "샤로운" 자신이 말한 것같이—.

홀의 形은 幾何学的으로는 약간 긴 多角形으로서, 이 세 곳에 밖으로 통하는 階段室이 연결되어 있다.

平面은 非対称은 아닌 長軸에 따른 対称이나 오케스트라의 両側에서는 非対称이 강조되어 있다. 客席이 사방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로 위치된 舞台에로 향해 내려가는데 대해, 다른 편의 天井은 홀 끝에 서서 舞台上部로 향해 上昇해 간다. 空間의 重心과, 空間가운데서 연출되는 事件의 重心이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이 音楽에로 集中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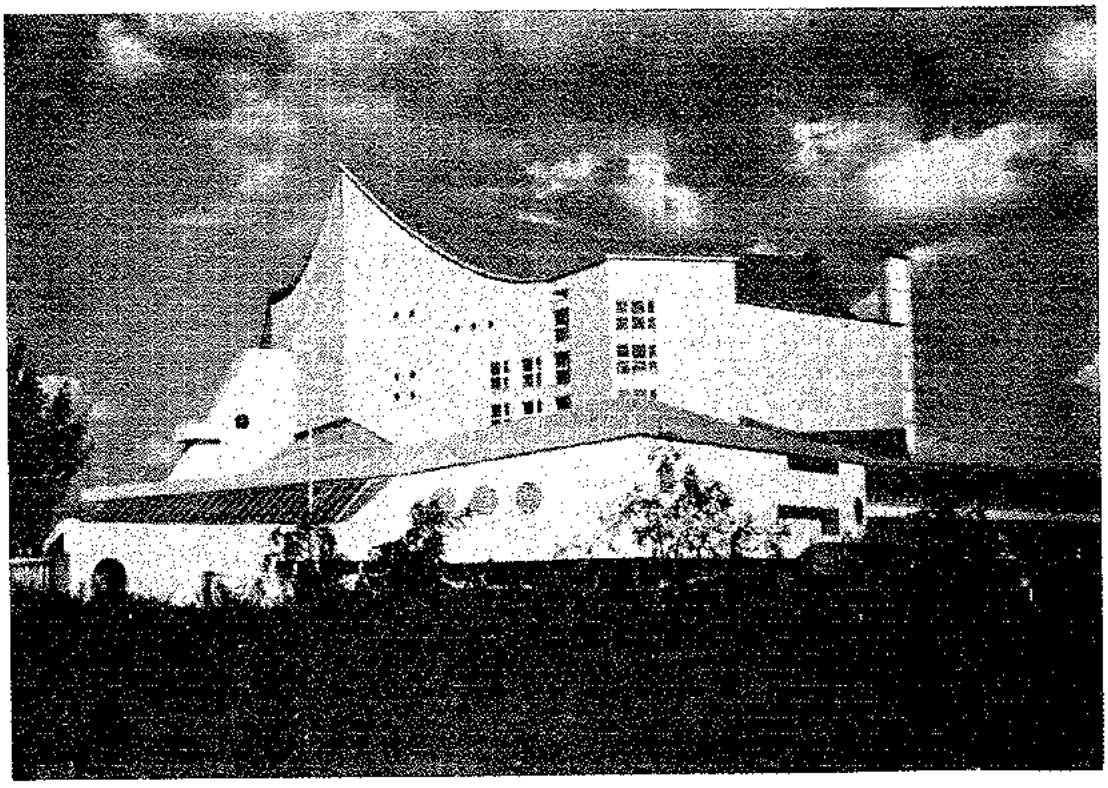

홀은 굉장히 크고 觀客의 数도 많으나(客席2200), 全体는 정연한 統一感을 가지면서 무리없이 分化되어지고 있다. 그 理由는 무엇보다 各層의 客席을 서로 연결하면서 좁은 区域으로 나누었다는데 있다. 觀客의 個人個人은 觀衆 가운데 埋没되어가는것이 아니라, 작은 視界로 区劃된 가운데 있고 그 区劃은 또 다른 区劃과 아주 명백한 関係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組織 지워진 共同社会가운데서 個人이 自由로운 것과 같은 民主主義의 장소와 같은것이 아닌가고 생각케 한다

社会를 建造物에 의해 変革한다는 것은 建築家의 行為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建築家는, 社会가 인정하는 한, 共同社会에 쓸모있는 장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아마 "샤로운"은 무언가 그와같은 것, 建築家가 이룩할 수 있는 最高의 것을 성취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空間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지드라도 그것은 언제나 現実의 事態와 関連을 갖인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엔 틀에 박힌 그릇된 사고방식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建築批評家는 그와같은 思考方式에 연관되기 쉽다. 例를 들자 "기디온"의 《空間·時間·建築》에서 空間은 四次元的이며 時間은 第4〈次元〉이다 하는 것이 그와같은 것이다. 建築空間은 언제나 三次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르게 主張하는 사람은 空間의 主観的인 知覚内容으로 있는 것을 客観的 性質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화피하고 있다.

이와같이 誤解된 말로서 또하나의 例를 들어 보자. 이 空間을 有機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直角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空間形式이 機能概念의 길이에 의해 合理的인 자세를 크게 넘어선 것같이 보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헤링그"의 말을 引用한다면〈하나의 建築이 어떠한 造形領域에 있는가는 対象의 本質이 결정한다〉.

이와같은 建築의 大作業의 경우에 일어나는 重要한 問題는 音響効果이다. 〈音楽을 中央으로 해서〉라는 "샤로운"의 命題는 다소 割引해서 이해해야 한다. "샤로운"은 空間을 古代의 円形闘技場대로 만들려고 하는데는 너무나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그가 実際로 만든 것은 古代의 円形劇場의 形을 갖인 空間이나 그 경우, 그는合唱隊席과 "오케스트라"의 뒤가 열린 側을 七列의 客席 만으로 밀폐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角度에 서 있는 壁, 傾斜진 床 및 中高로 上昇하는 天井에 의해 형성

되어지는 이 空間은, 音을 均等히 분할한다는 音響学의 基本的인 要求에 참으로 적절히 합치되어 진다.

開場 때는, 뒤에 독일國歌의 메로디가 된 테마를 갖인 "하이든"의 弦楽四重奏曲 作品 76, 3 의 第二楽章이 演奏되었다. 音調는 부드러우면서 完全하였다. 이같이 큰 홀에서 室内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開場날 밤은 "베토벤"의 作品 第9 가 演奏되었다. 나는 年前에는 "오케스트라"의 옆자리에 앉았으나, 밤 좌석은 "오케스트라"를 향해 마주보는 곳에 잡았다. 音의 混合에 대해서는 아직도 改良의 余地가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그것은 楽員의 配置를 변경시킨다든가 音響板을 移動함에 의해서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퍽 만족한 상태였다. 実際, 音響実験은 成功的이었다.

建築的으로 본다면, 이 空間은 모두 달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材料와 色이 완전히 않게 끝나버린 것은 참으로 멋지게 보인다. 床과 각 층의 구석에 남아있는 壁은 나무, 客席의 시트는 나무의 色과 調和를 이룬 톤, 하얗게 보이는 客席의 壁은 自然石被覆, 몇개의 장소에다 音響上 必要한 四面体에 의해 가볍게 구성되어있는 밝은 天井.

모든 形態와 色彩를 하나의 全体에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内部에서는 成功했으나 外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같다. 특히 여기에 適用된, 建築体를 主体와 下層의 建築体와로 분리한다는 原理는 하등 水平과 垂直의 方向에의 空間的인 連続性을 予想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対해서 内部에서는, 入口에서 그로크·룸과 "호와이에"를 통해 메인·홀의 通路에 이르는 空間의 連続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色彩의 처리도, 外部에는 完璧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建築은, 内部空間의 分割에 보이는 質의 높이에 의해 現代의 作品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이 되고 있다. 그것은 近代의 華麗함은 近代에 特有의 手段으로서 実現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例를 들어 "뉴욕"의 "린컨·센터"의 생각할 수 없는 試図에서 보이는 것같은, 過去의 形式原理에로 귀속되는 것은 必要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 오랫동안 사람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建築에 의해 音楽的인 것의 새로운 次元, 音楽体験의 新形式, 새로운 伝統이 基礎지워졌다고. 아마 우리들은 후일에 이 建築 가운데, 어떤 個人과 共同社会와의 関係의 심볼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와같은 狀態에 비한다면 우리들 社会는 利益社会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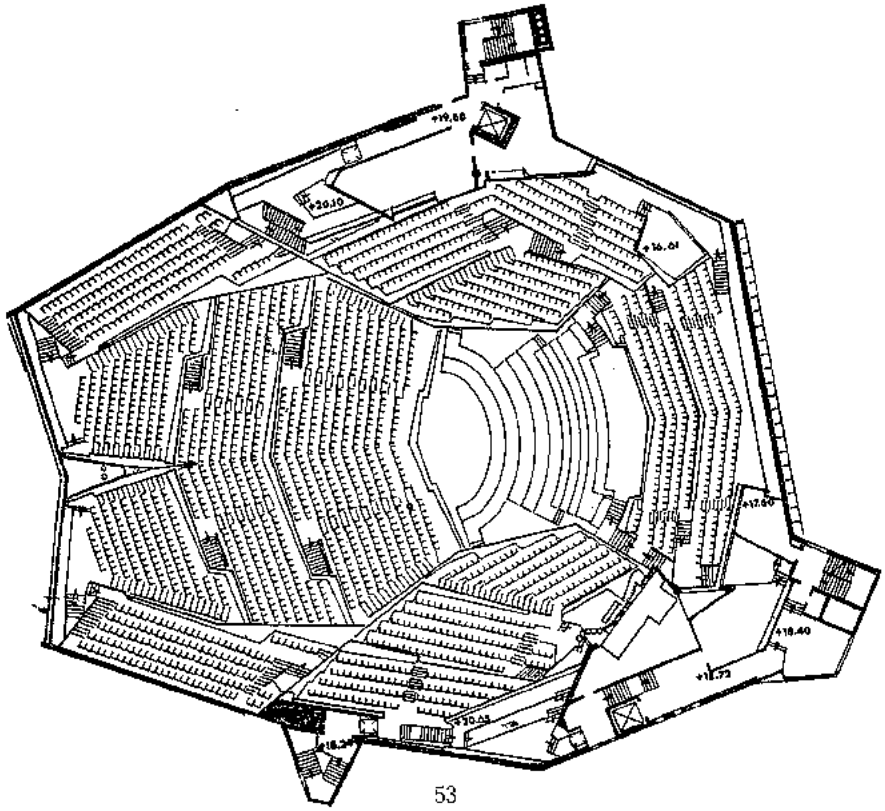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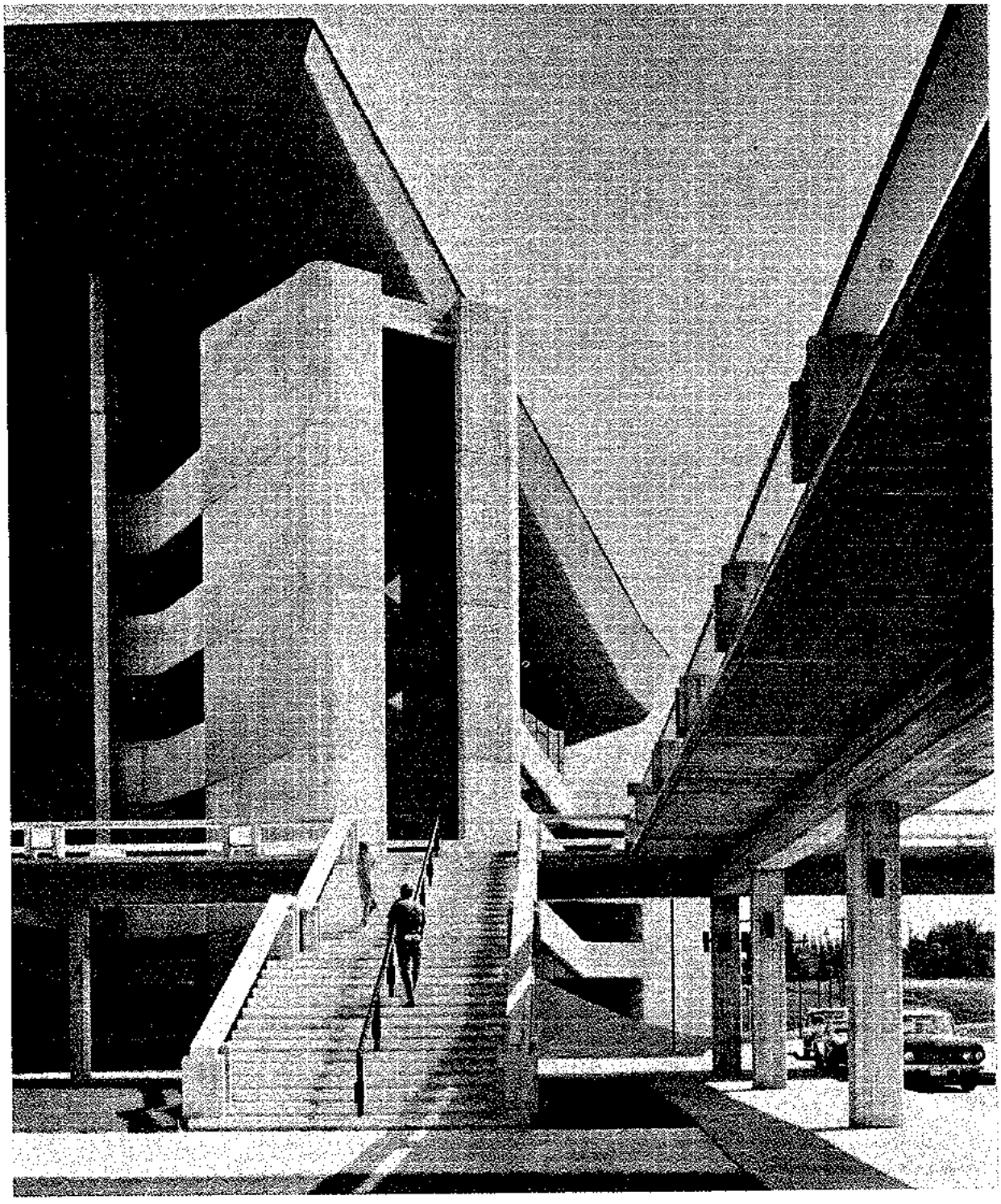

海外建築 (劇場建築編)

IOWA 州立大学講堂(劇場)

設計 : Crites and McConell
位置 : 美国 Iowa 州, Ames

Iowa州立大学캠퍼스 안에 建築된 이 새로운 스타일의 建物은 大学講義室의 연장으로서 学校 当局의 行事나 学術강연, 심포지움 등의 개최장소로서 最適의 규모로 設計되어 있다.

총 좌석수는 2,637석으로 内部의 좌석배치는 学究的인 분위기를 造成토록 아카데믹한 면모를 나타내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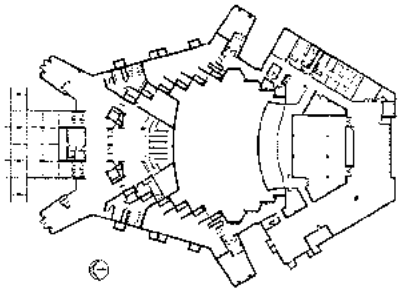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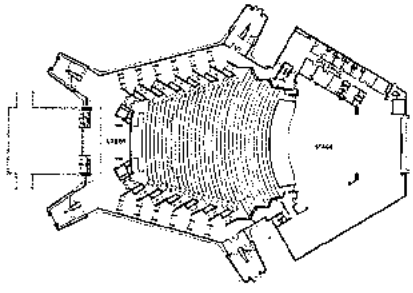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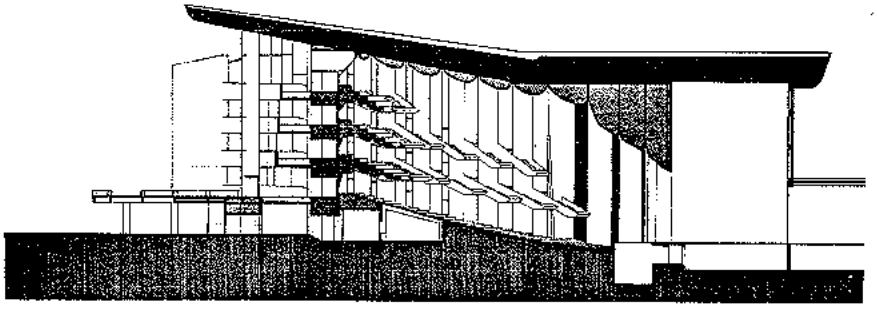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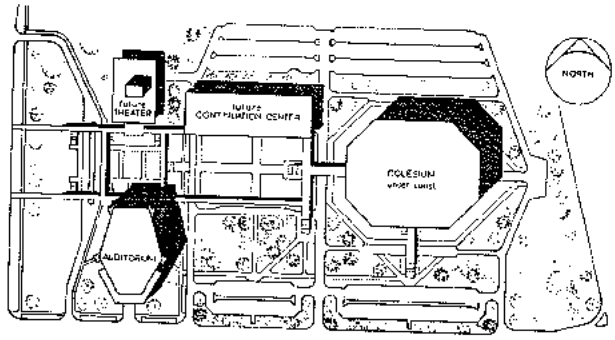
NORTH
future THEATER
future CONTINUATION CENTER
COLISEUM
under consid.
AUDI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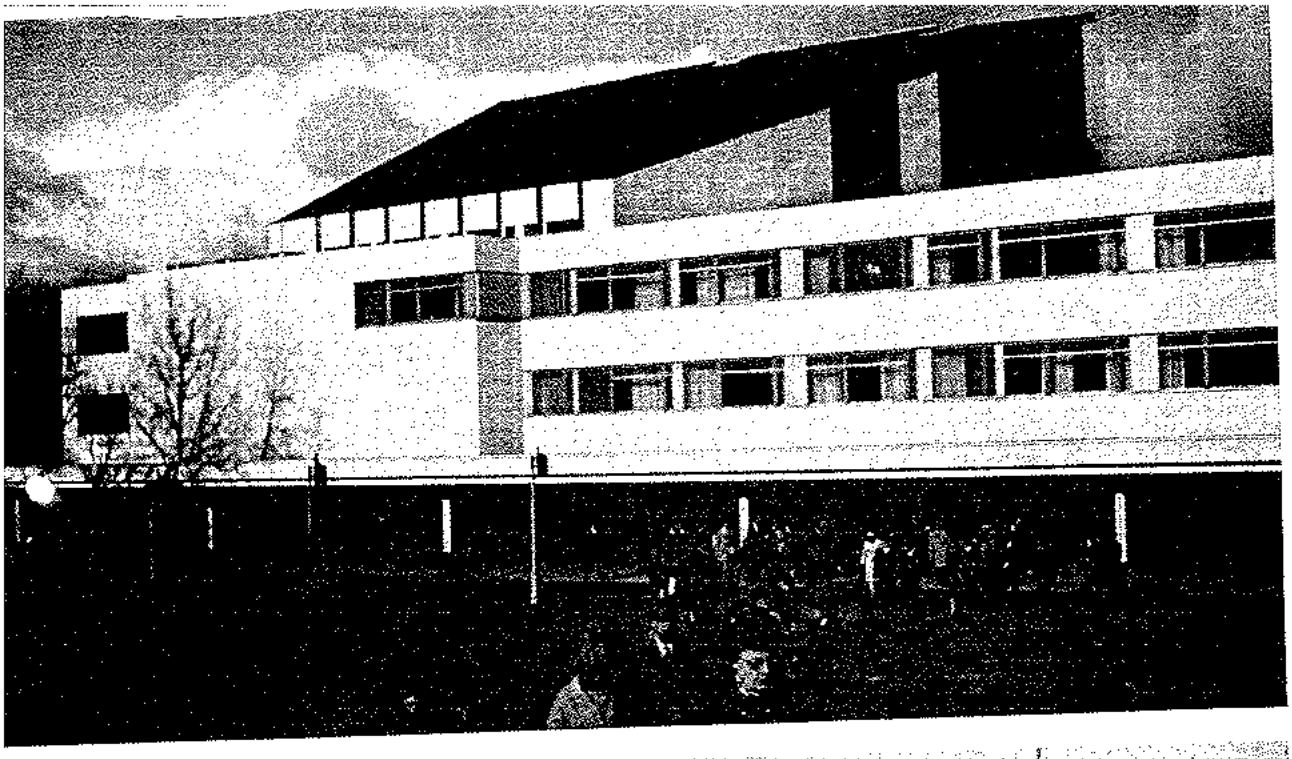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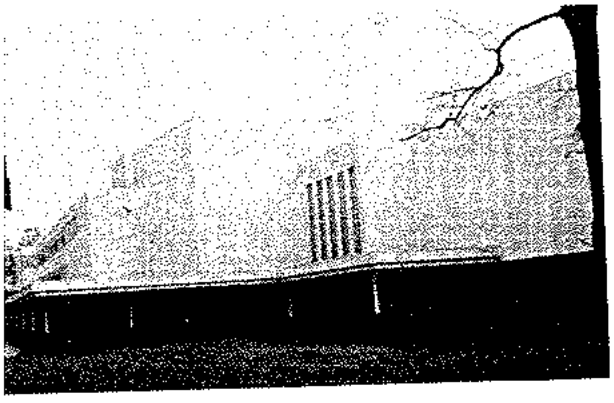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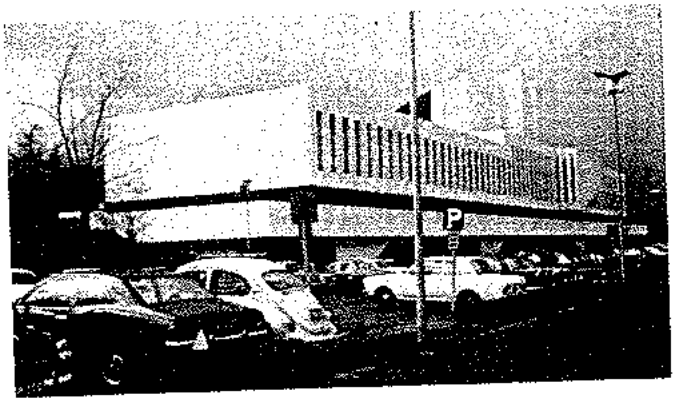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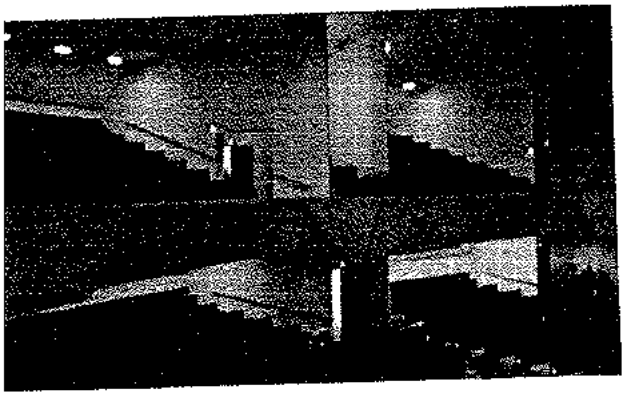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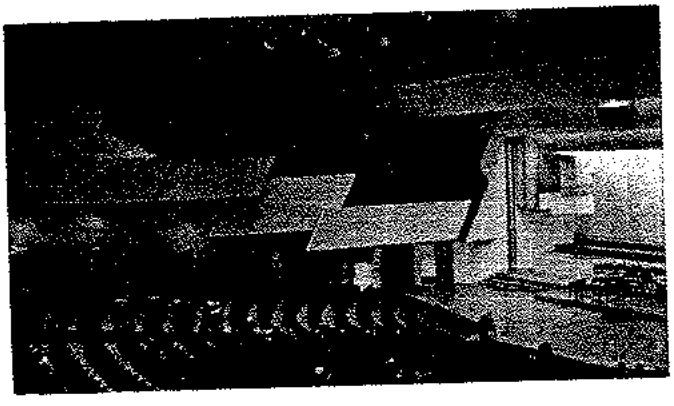

HELSINKI콘서트·홀

設計 : Alvar Aalto
位置 : 핀랜드 헬싱키

이 콘서트·홀은 1962年에 計劃되어 그 實現을 보는데 10여년이 걸렸다. 대규모의 会議가 있을 때는 이 콘서트·홀을 회의장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座席數는 1,750席에 室內楽홀은 350席인데 이 극장의 最大許容人數는 2,300名이 들어 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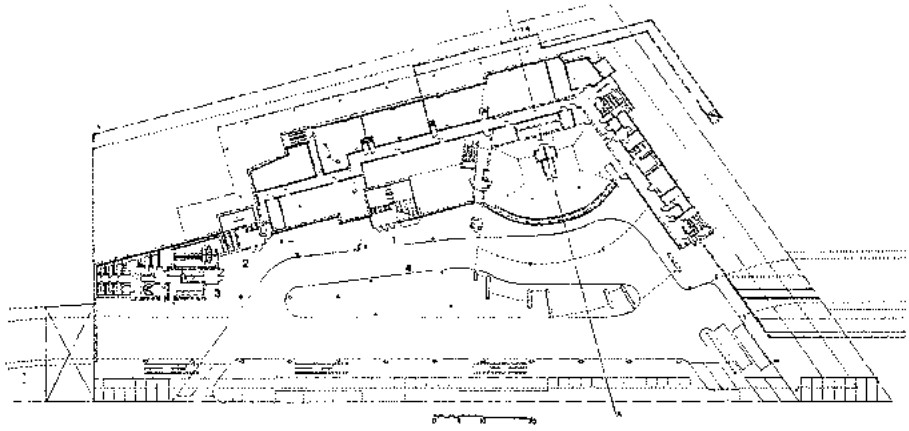

drive-in층 평면도

drive-in층 평면도

1. 콘서트홀 입구
2. 室內樂 홀 입구
3. 레스토랑 입구
4. 車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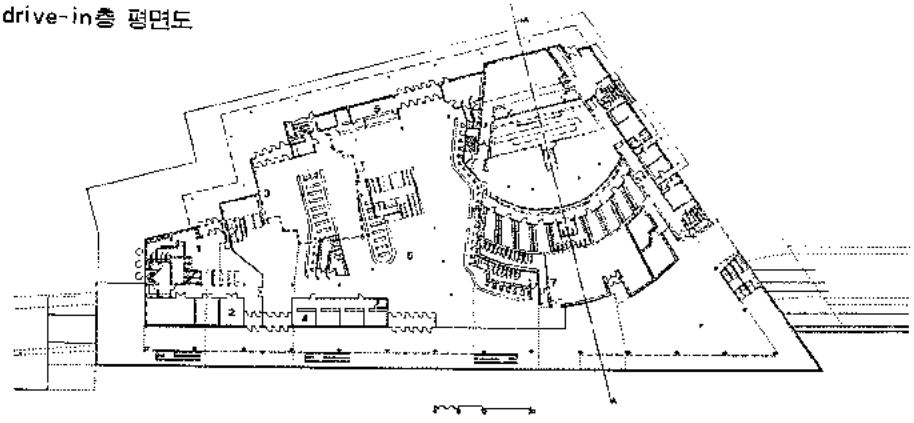

입구층 평면도

입구층 평면도

1. 레스토랑 입구 홀
2. 직원 식당
3. 室內樂 홀 입구
4. 안내실
5. 매표장
6. 콘서트홀 입구홀
7.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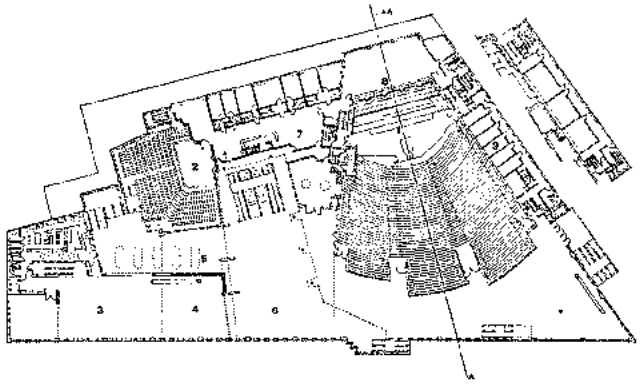

홀층 평면도

홀층 평면도

1. 콘서트 홀
2. 室內樂 홀
3. 레스토랑
4. 카페테리아
5. 室內樂홀 · 화이예
6. 콘서트홀 화이예
7. 연주자 식당
8. 오케스트라 로비
9. 라디오 · TV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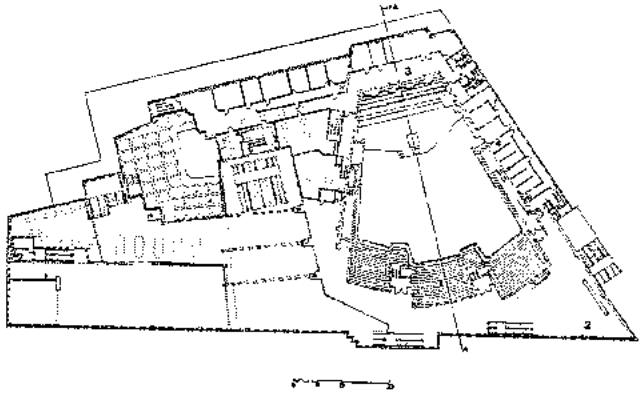

발코니층 평면도

발코니층 평면도

1. 콘서트 홀 층
2. 화이예
3.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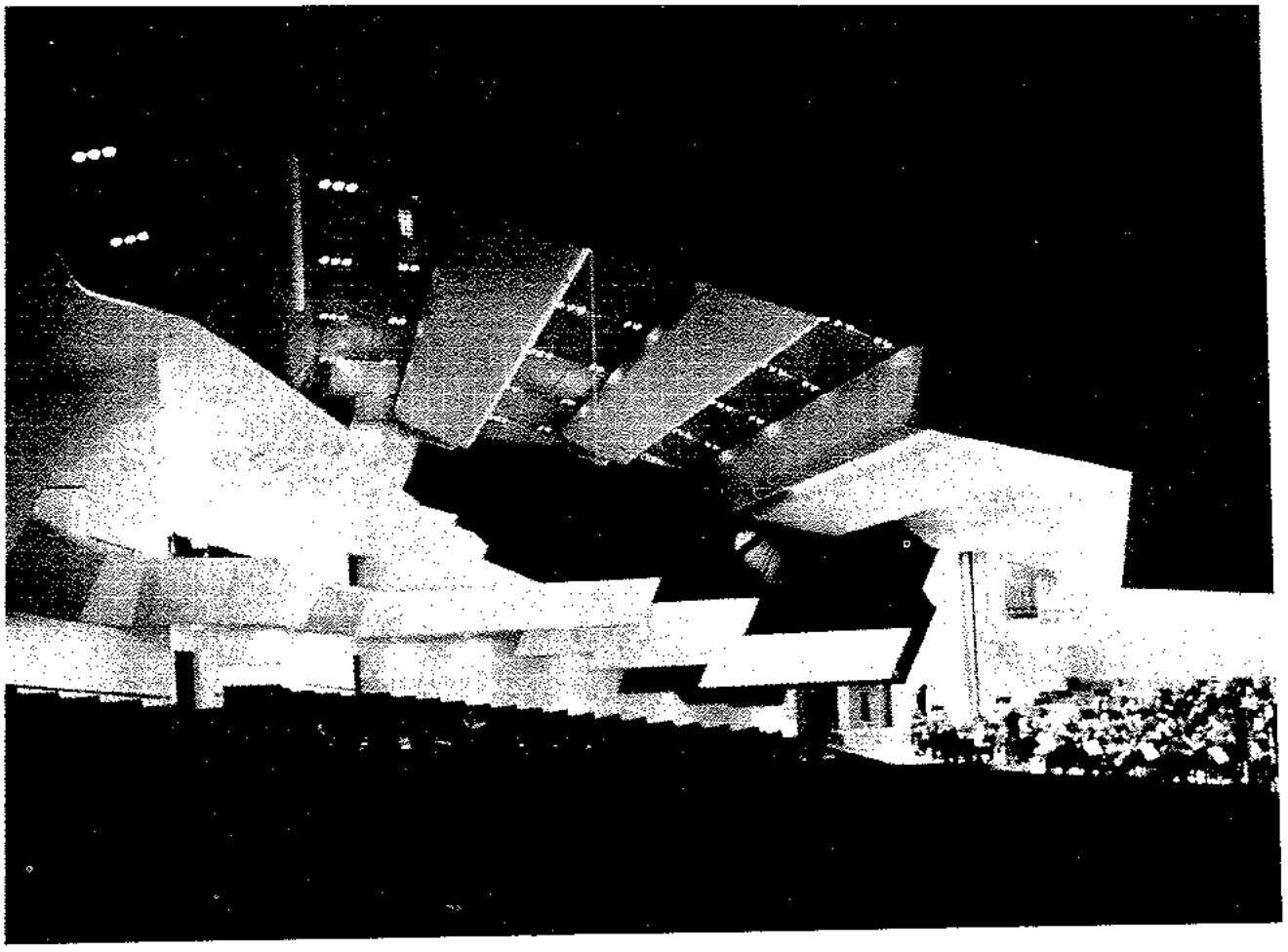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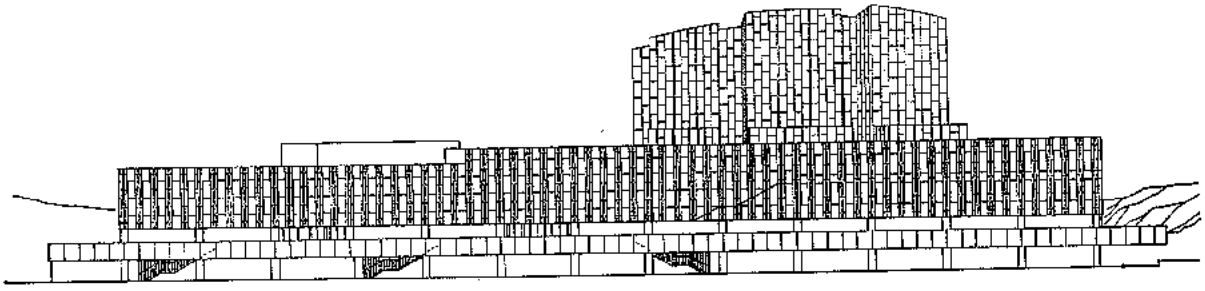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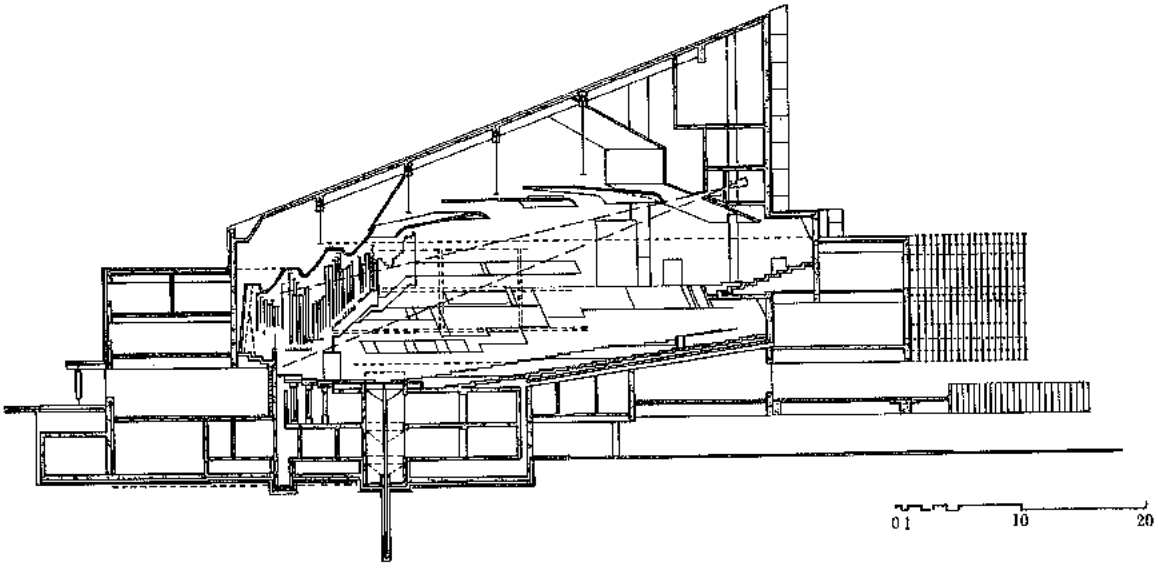
0 1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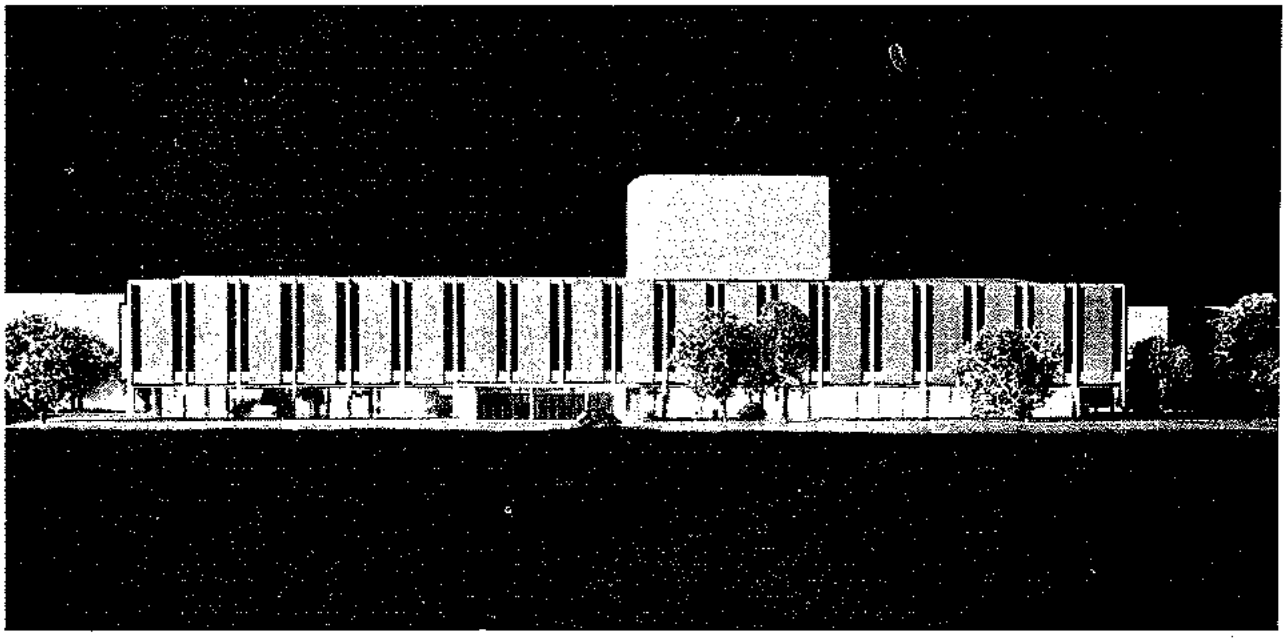

MANNHEIM国立劇場

設計 : Gerhard Weber
位置 :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를 주로 상연하는 座席1,200席의 大劇場과 연극을 주로 하는 600席의 小劇場으로 구성된 이 새로운 国立극장은 다른 劇場과는 달리 管理事務室이나 물품 小道具 저장을 위한 창고 등을 극장 건물 밖의 附屬建物에 配置한 것이 特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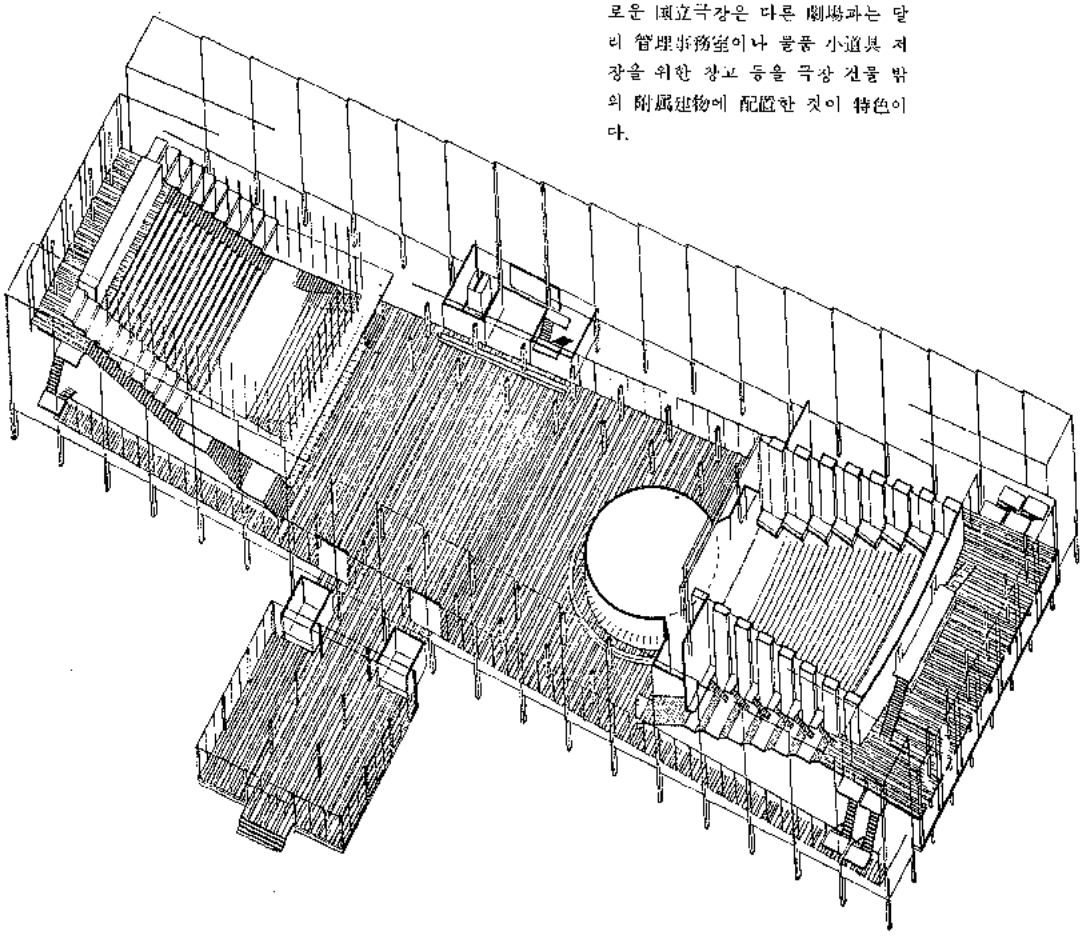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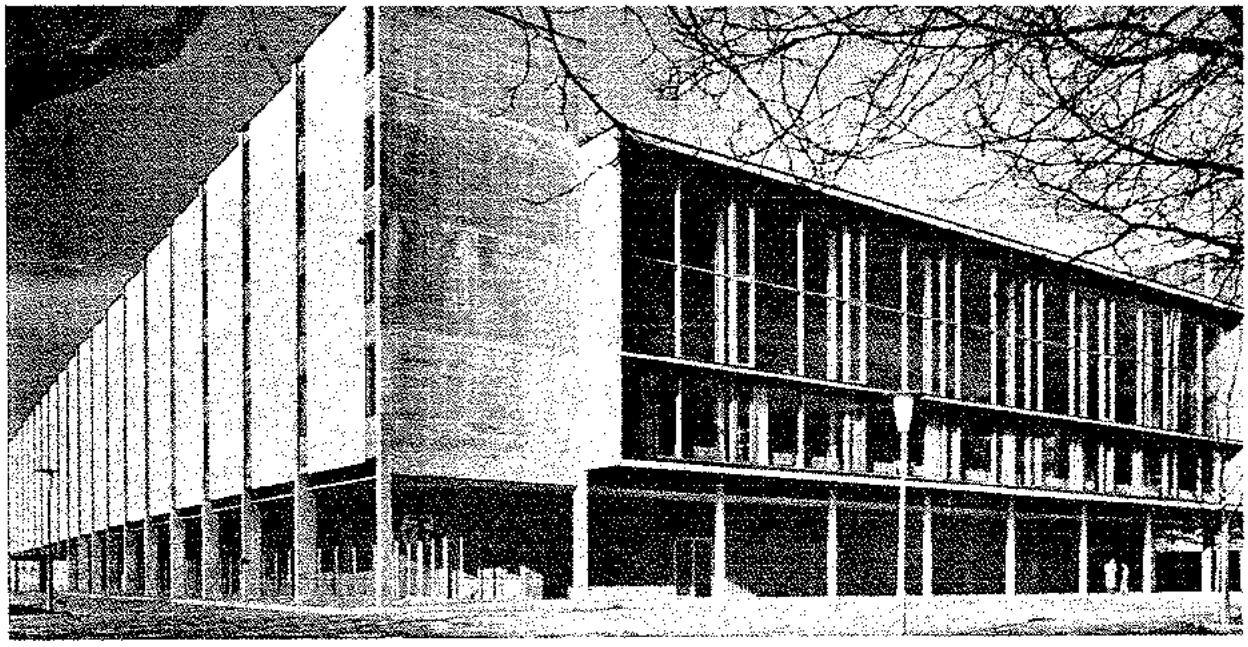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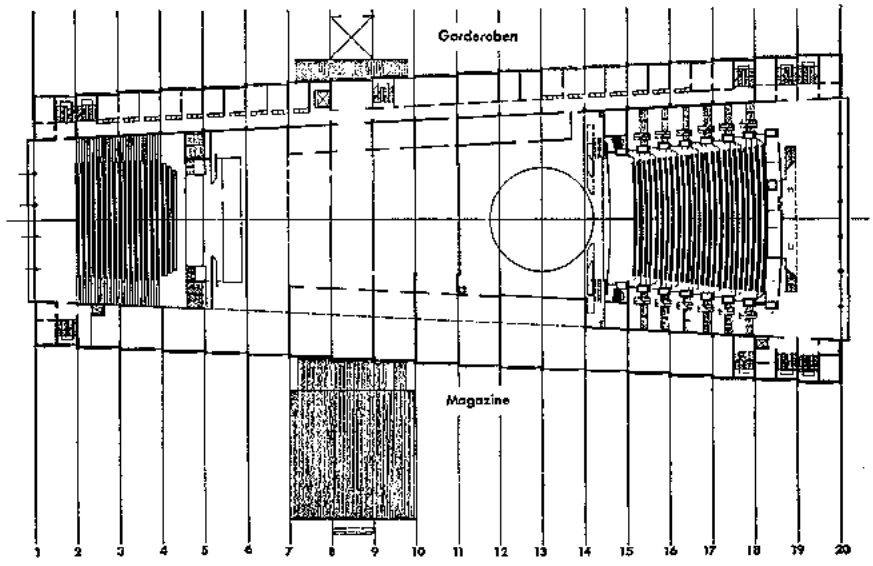
Garderoben
Magazin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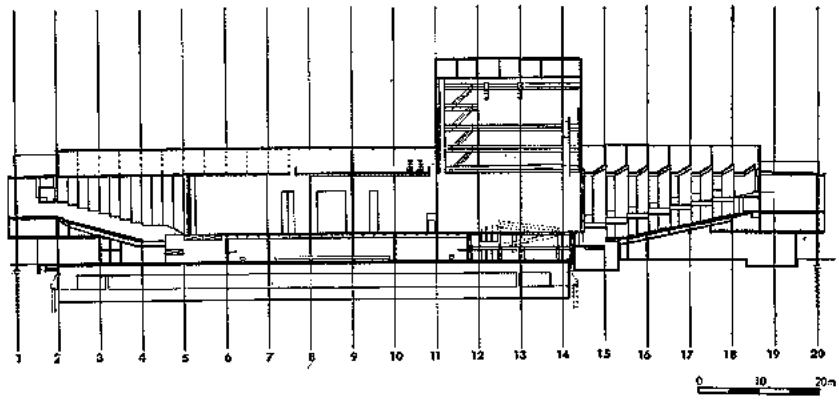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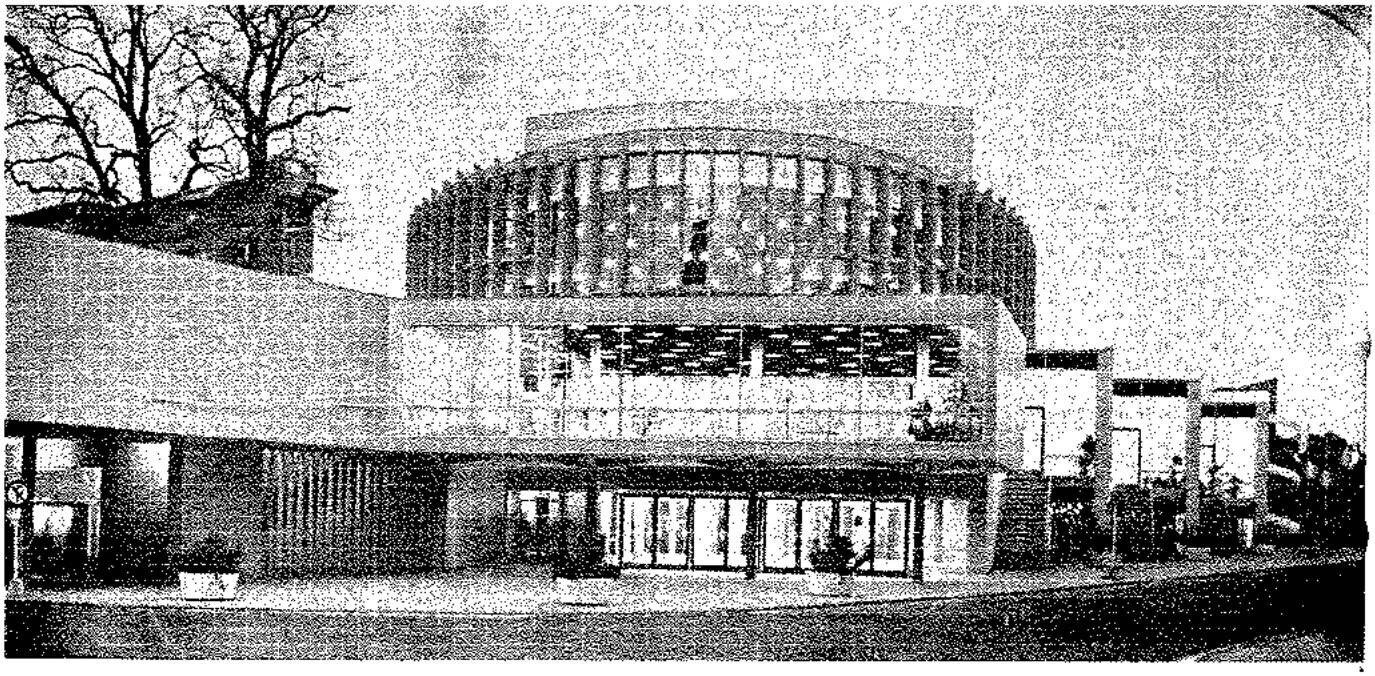

MÜNSTER市立劇場

設計 : H. Delimann
位置 : 독일 MÜNSTER

관람석 座席數는 950席으로 特記할 만한 것은 室內空間을 最大로 축소하여 舞台까지의 거리는 대단히 짧다. 그래서 觀客과 舞台 배우가 公演 때에는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또한 친밀감과 접촉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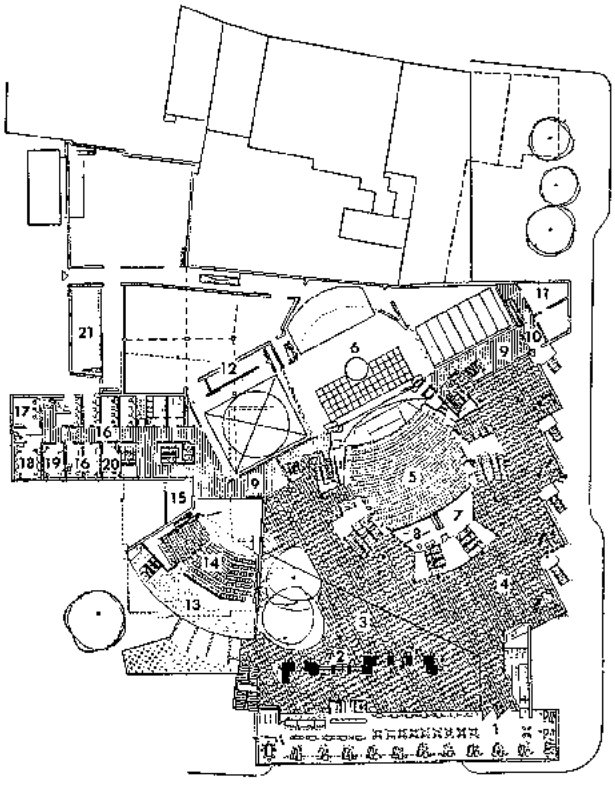

1. 레스토랑
2. 전 정
3. 입구 홀
4. 로 비
5. 관객석
6. 무대밑
7. 조정실
8. 전기실
9. 도구실
10. 사무실
11. 관리실
12. 조명실
13. 휴게실
14. 소무대
15. 조연실
16. 분장실
17. 발레실
18. 합창실
19. 조연실
20. 의상실
21. 관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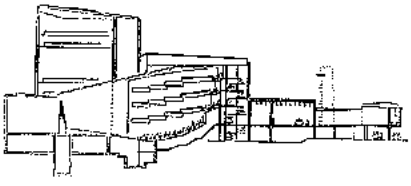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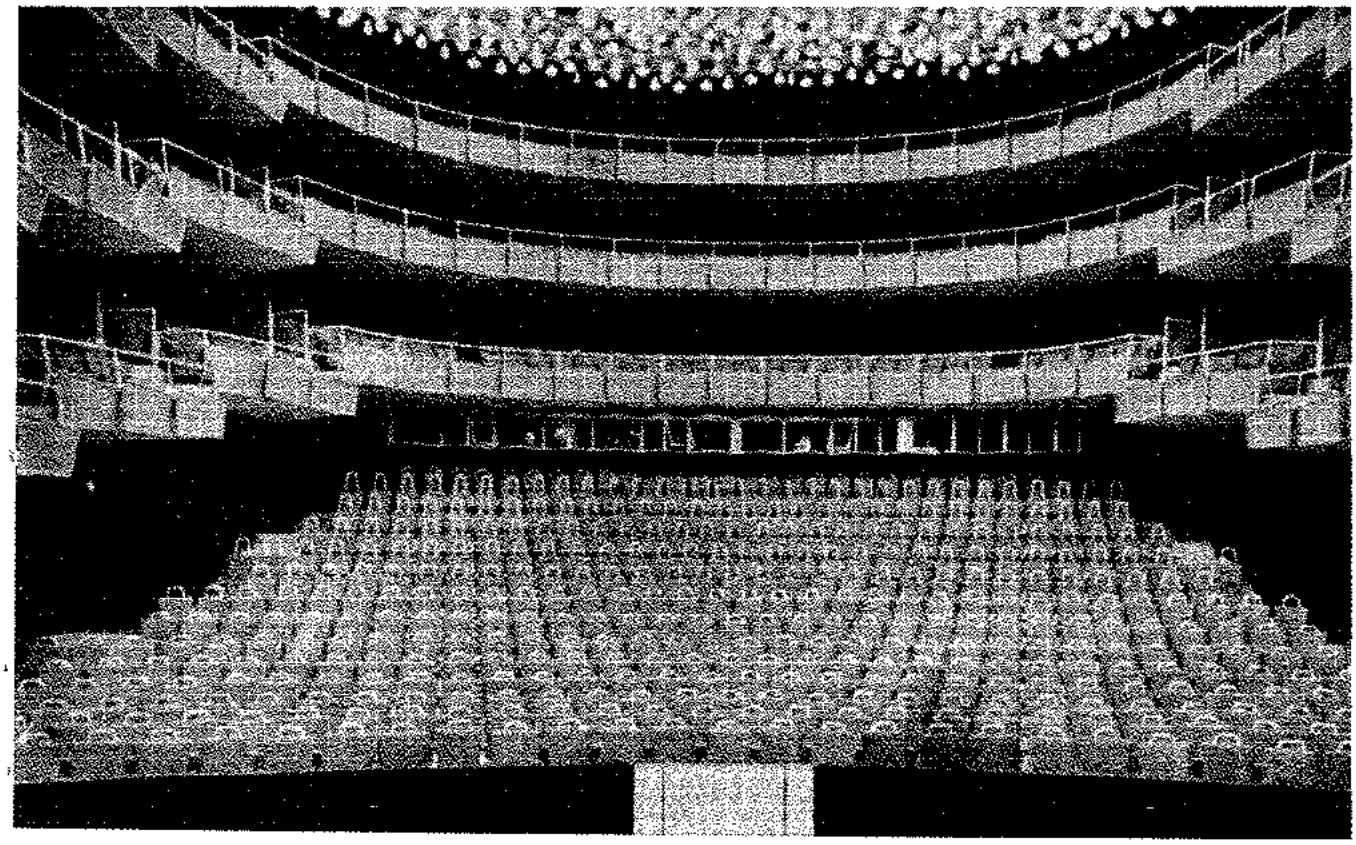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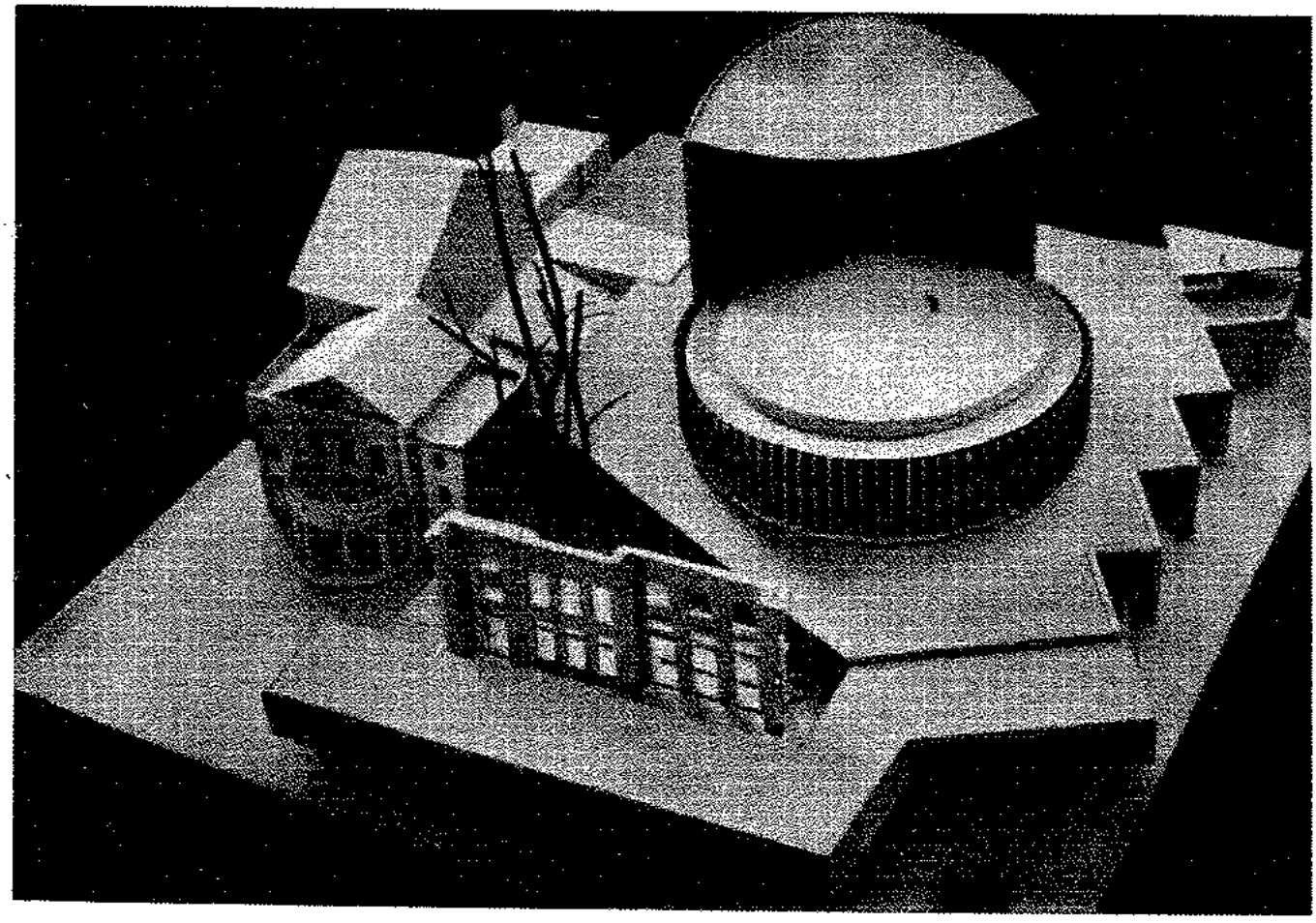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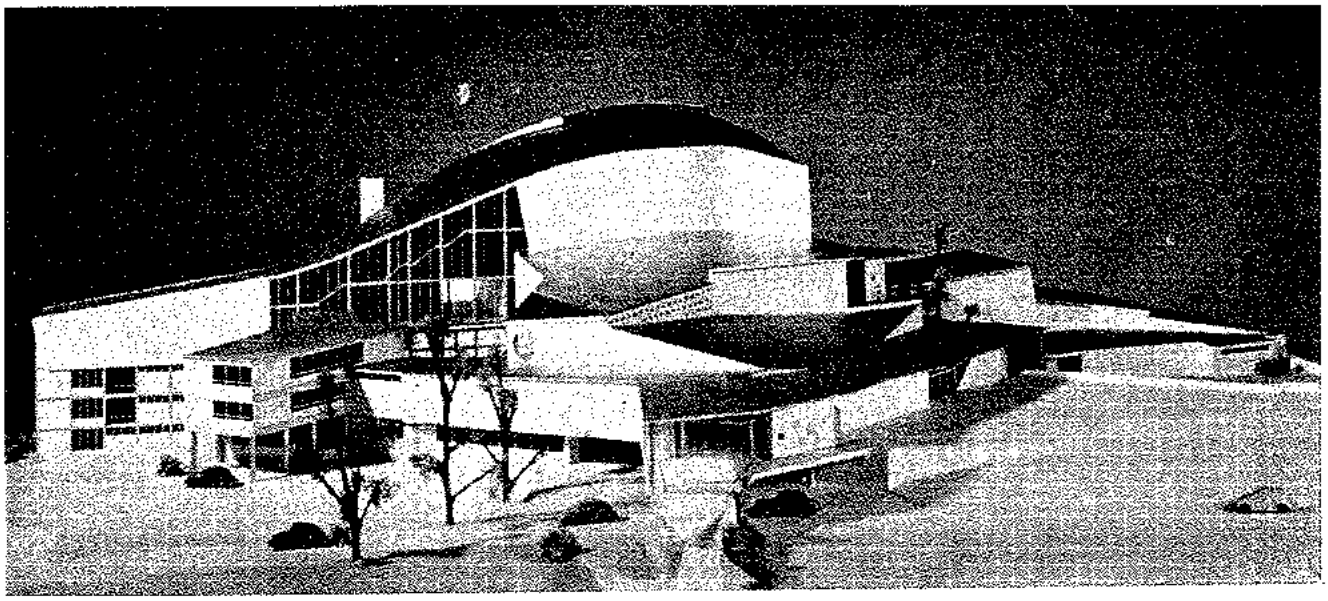

KASSEL 市立劇場

設計 : Hans Scharoun
位置 : 독일 Kassel

언덕진 경사 부지 위에 설립된 이 극장의 曲線 지붕과 各空間을 간막이 지운 벽의 多樣한 變化는 이 劇場 주위의 自然環境과 대지에 아름다운 調和를 이루고 있다. 한스 샤로운의 独特한 非対稱的인 空間의 처리로서 관리사무실, 의상실, 기술적인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기계실 등은 各各 分離된 位置에 정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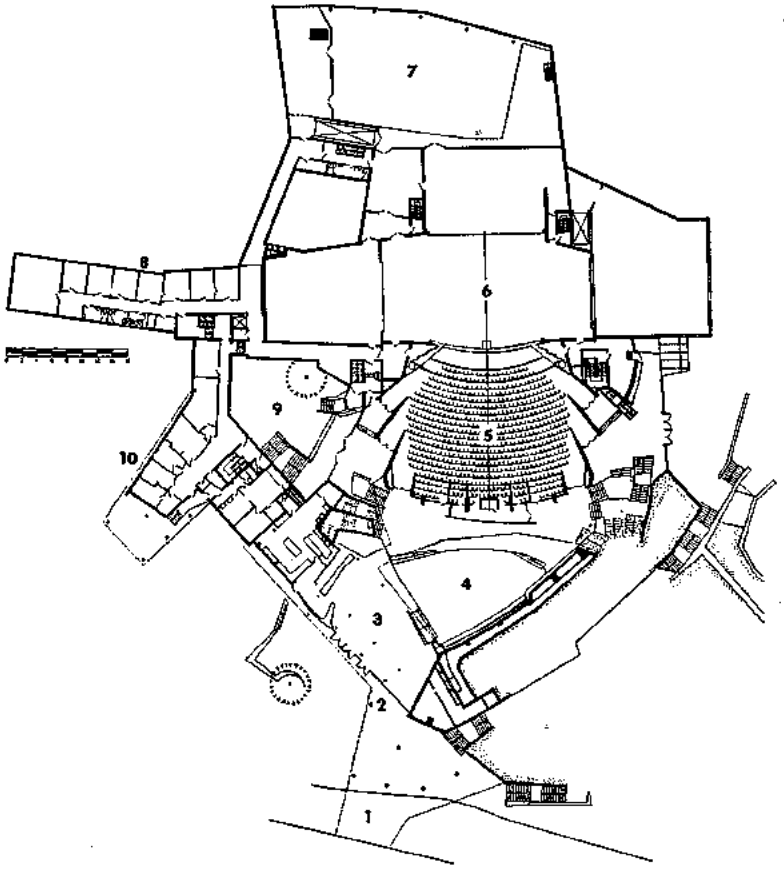

1. 步道 밑의 車道
2. 식당으로 통한 通路
3. 식 당
4. 입구 로비
5. 관람석
6. 무 대
7. 작업실
8. 의상실 벽
9. 내부 정원
10. 관리사무실

建 築 法 解 說①

張泰洙
建設部 建築担当官室 建築技佐

차 례

1. 건축법의 목적과 그 적용
가. 목 적
나. 적용대상물
다. 적용대상 구역
라. 건축 수속
2. 단체규정
가. 대지기준
나. 구조의 안전기준
다. 방화기준
라. 피난시설의 기준
마. 위생상의 기준
바 건축설비의 기준
사. 주차장 및 지하층 설치기준
3. 집단규정
가 도로 및 건축선
나. 용도지역제
다. 형태규제
4. 위반 건축물
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나. 손실보상
다. 행정대집행
라. 위반 건축사, 건설업자 조치
5. 기타규정
6. 건축법개정골자

1. 건축법의 목적과 그 적용

가. 목 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구조, 설비, 용도 등에 관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방화, 피난, 위생 등의 건축물의 개별적인 요건을구비시킴과 동시에 도시 계획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높이, 공지확보 등 도시의 공간개념에 입각한 도시기능과 미관을 유지토록 규제하고 있는것이다.

나. 적용 대상물

1)건축물, 대지 및 설비

본법 적용 대상물에는 법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판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내에 있는 운전안보시설, 파선고, 푸레트홈의 지붕과 당해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제외)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대지로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 및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환기난방, 냉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우편물, 수취함 등 건축설비를 포함한다.

2)공작물

옹벽, 굴뚝, 광고탑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이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즉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높이 15미터를 넘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철주, 목주,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기념탑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싸이로, 망루,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및 담의 축조에 있어서는 법 제5조(건축허가)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제7조(준공검사, 제10조(구조내력), 제21조(피뢰설비), 제23조(피난 및 소화설비),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제26조(재해 위험구역), 제42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43조(보고 및 검사), 제50조(표지의 설

치), 제51조(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예외

전기 대상물중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 자료, 가 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적용 대상구역

본 법중 집단 규정(법 3 장, 내지 5 장)을 제외한 규정은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이나 집단 규정은 도시 계획적용구역과 도시 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 및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 부터 양측 500 미터 구역내에만 적용된다. 다만 법 제 5 조 제 1 호내지 제 3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즉(1)특수 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 평방미터 이상의 것.

(2)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위치에 불구하고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기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시 또는 대수선, 중요변경의행위를 할때에 본 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라. 건축수속

1)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전기한(1) 내지 (3)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함), 대수선 또는중요변경을 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시 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시 그 면적이 10평방미터 이내의 것은 신고로 처리된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도 병행하여야 한다. 즉 소방법에 의한 방화 및 소방설비에 관한 관할소방서장의 의견청취 또는 공해방지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등이 있다. (법 제 5 조 소방법 제 7 조, 공해방지법 제4 조 참조)

2)설계 및 공사감리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는 반드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대상은

(1)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2)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처마 높이 9미터이상인 것, 다만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기한 기준에 불구하고 연면적 150평방미터 내지300평방미터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감리자가 위법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차적으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하고 불응시에는 이를 시장,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 6 조)

3) 중간검사

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건축물(화장장, 도살장,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제외), 3 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기초공사 또는 지붕공사(배근공사) 시 허가청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 7 조 의 2)

4) 준공검사

(1) 건축주는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후 7 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감리대상 건축공사시에는 당해 감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시장, 군수는 신고접수후 7 일이내에 검사를 실시코 합격된 것에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필증 교부전의 건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정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장, 군수가 가사용의 승인을 한때에는 예외다. (4) 준공검 사 필증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책임하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 7 조)

5) 건축물의 유지관리

(1)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가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의무를 가진다.

(2) 연면적 1,000 평방미터 이상의 특수 건축물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장,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법 7조 의3)

2. 단체규정

가. 대지의 기준

(1)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2) 습한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진개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한 토지는 성토나 지반의 개량등으로 위생상, 안전상 지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 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유수탱크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때에는 옹벽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상 법 제9조)

(5) 건축주는 대지조성 기타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경우에는 당해 굴착부분 에 대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굴착부분의 정리 상태가 미비할 때에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으로 이를 정리케하고 소요 경비를징수할 수 있다. (법 제19조 의2)

나. 건축물 구조의 안전기준

1)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 주요구조부, 기타 안전상, 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 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법 제25조)

2) 구조내력

(1) 건축물은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토압, 수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일정규모(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의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 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3) 대규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1)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또는 연면적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지붕 제외) 는 목조로 하면 안된다.

(2) 높이 13미터 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계단 제외)를 석조, 연와조, 콘크리트부록조, 무근 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 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조별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상 준수 하여야할 상세한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상 법11조, 10조, 24조 참조)

다. 방화기준

1) 지붕 불연화 및 방화벽

집단적인 방화조치에 대해서는 후술한바와 같이 방화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구에는 목조건축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도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 공고한 시가지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상기의 방화지구나 준방화지구 (시장, 군수가 지정한 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어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화기준이 있다.

즉

(1)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의 우려가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서 구획하되 각 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이상 법12조, 15조, 16조 참조)

※ 방화구조(영84조) :

(1) 철망몰탈칠 또는 졸대회반죽질로서 바른 두께 2센티미터

(2) 목모 세멘트판 붙임위에 몰탈 또는 회반죽질을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2.5센티 미터 이상의 것.

(3) 세멘트판 붙임, 마그네샤 세멘트판 붙임 또는 개와 위에 세멘트 몰탈칠한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2.5센치미터 이상의 것.

(4) 세멘트 몰탈질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치 미터 이상의 것.

(5) 흙 담조

(6) 흙질한 심벽으로 맞벽질한 것.

(7) 전 각호에 게기하는 것 외에 건설부장관 이 이와 동등 이상의 방화성능을 가진다고 인정하 여 지정한 것.

※ 방화벽 (영89조) :

(1) 내화구조로서 또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목조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무근 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하지 말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건축물의 외벽 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50센치 미터 이상 돌출 시킬것.

(4)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급수관,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방화벽과 이들 관과의 틈을 몰탈로 충진할 것.

※ 방화구획(영88조)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쿨라를 설비한 건축물의 부분인 경우 또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집회장의 객석, 옥내운동장, 공장등은 그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로 한다.

(2) 건축물의 일부가 영9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벽이나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 내화건축물

다음 중의 건축물의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단층인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방화구로 한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제외한다.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옥외 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호텔, 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을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 이상인 것(이상 법17조)

※내화구조(영83조) :

(1) 벽에 있어서는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나) 철골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가 3미터 이상인 것.

(다)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의 양면을 바른 두께가 3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나 철망몰탈 또는 두께가 4미터 이상의 벽돌, 돌 또는 콘크리트 부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콘크리트 부록조

(마) 철재로써 보강된 벽돌조로서 그의 철재에 대한 벽돌, 돌 또는 콘크리트부록의 피복두께가 4미터 이상의 것.

(2) 기둥에 있어서는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나) 철골철근 콘크리트로서 철골에 대한 콘크리트

의 피복 두께가 5미터 이상의 것.

(다) 철골을 두께 7미터 이상의 벽돌, 돌 또는 콘크리트부록으로 덮은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콘크리 트 부록조.

(마) 철재로서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콘크리트 부록조로서 그의 철재에 대한 벽돌, 돌 또는 콘크리트 부록의 피복두께가 7미터 이상의 것.

(3) 바닥에 있어서는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 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두께가 3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부록조

(다) 철재로서 보강된 벽돌조, 석조나 두께 3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부록조로서 철재에 대한 벽돌, 돌이나 콘크리트 부록의 피복두께 4미터 이상의 것 또는 그 철재를 바른 두께가 3미터 이상의 철망몰탈이나 회반죽으로 덮은 것.

(4) 보에 있어서는

(가) 철 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

(나)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철골에 대한 피복 두께가 5미터 이상의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그의 직하에 반자가 없는 것 또는 그의 직하에 불연재료로서 만들어진 반자가 있는 것.

(5) 지붕에 있어서는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 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또는 콘크리트 부록조

(다) 철재로서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콘크리트부록조.

(라) 철망콘크리트나 철망몰탈로 덮은것 또는 철망콘크리트, 철망몰탈이나 망입유리로 만들어진 것.

(6) 계단에 있어서는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 부록조

(다) 철재로서 보강된 벽돌조, 석조 또는 콘크리트 부록조.

(라) 철조

3)내장재료의 제한

(1) 특수 건축물(화장장, 도살장,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제외)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부분 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 23 의2)

(2)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온돌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법 제23 의3)

라. 피난 시설의 기준

1) 2방향피난과 피난 거리

극장, 병원, 학교 백화점등 특수 건축물(화장장, 도살장, 진애 및 오물 처리장 제외)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등 재해가 일어날시 긴급하게 계단을 통하여 피난을 하여야 하는데 각 거실로 부터 계단까지의 거리 가 멀면 원활한 피난이 곤란하므로 건물의 구조, 용도에 따라 다르나 그 거리가 30미터—50미터가 되도록 계단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건물의 용도, 규모 구조에 의하여 반드시 2이상 의 직통 계단을 설치 하여야 한다. 또 지상의 층수가 5층이상의 건축물의 5층 이상의 층에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만 한다. 피난계단 및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에관하여는 영 제100조에 규정하고 있다.

2) 옥외로의 출구

(1)피난층에 있어서는 계단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1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50미터 수치 이하로 한다.

(2)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이나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객용에 쓰이는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 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백화점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폭의 합계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100평방미터에 대하여 6센치 또한 바닥면적이 최대의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평방미터에 대하여 40센 치의 비율로 계산한 수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비상용 승강기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현 장비로는 높

이31미터 이상의 소방활동이 불가능함으로 소방대의 소화, 구조작업을 돕기 위하여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고층 건물에는 화재시 절대로 안전한 비상용 에리베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22조)

4) 대지내의 피난통로

건축물내에서 옥외로 피난했다 하여도 그 건축물의 대지내에서 완전히 안전한 장소로 피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지내에 건축물이 밀접되어 있거나 목조건축물인 경우에는 조속히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대지내의 피난용 통로는 폭원1.5미터 이상으로서 도로, 광장, 공지등에 통하도록 하고있다. 물론 소규모 건축물에는 제외되고 법제23조에 규정한 대규모 건축물에 적용된다. 특히 목조의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 의 경우에는 통로의 폭원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영108조 및 109조 참조)

마. 위생상의 기준

1)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등을 위하여사람이 계속하여 사용하는 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거실을 장시간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위생상의 면을 특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채광의 기준

(가) 거실에 창 기타의 거주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의 바닥면적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거 실 의 종 류	비 율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실	1/5 이상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병실	1/7 이상
(3) 기숙사의 침실 또는 여관의 숙박실	1/7 이상
(4)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여관 기타의 거실	1/10이상

다만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채광을 위한 유효 개구부 면적의 산정 :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채광상 부분에 면하는 개구부로서 이와의 수평거리 5미터 이상 떨어진것.

※여기의 채광장해 부분 : 인지 경계선, 동일 대지내의 다른 건축물 부분,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

(2)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공지 또는 수면에 면하는 개구부, 위에 해당되지 않은 개구부는 다음에 의하여 유효여부를 산정한다. 개구부의 직상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개구부의 직상수직면으로 부터 후퇴 또는 돌출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한다. 반투명의 채양 기타 채광상 지장이 없는 채양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에서 그림과 같이 용도 지역별 해당 구배로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면하는 채광장해 부분의 표면과의 교점을 얻고 그 교점을 지나는 수평면의 윗부분을 유효·아랫부분은 무효로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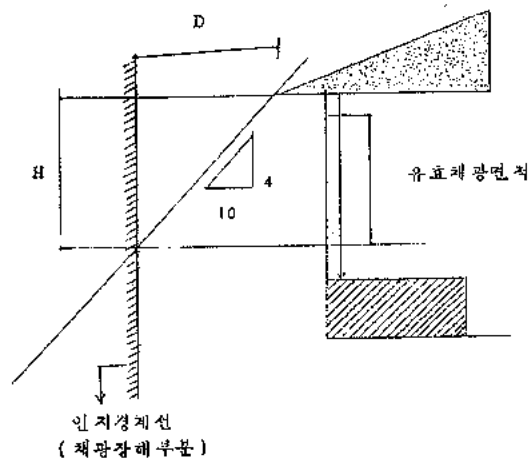

〈주거지역의 경우〉

※지역별 D/H의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지역의 종류	구 배
주거지역	4/10이상
공업지역	2.5/10이상
상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구역	2 /10이상

(채광을 위한 개구부 면적의 산정특례)

(1) 천창은 채광상 능율적이라 본다. 천창의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그 면적의 3배의 면

적이 있다고 보고 산정한다.

(2) 개구부의 바깥쪽에 폭90센치 이상의 마루가 있을 때에는 그 채광에 유효한 부분의 면적은 그 면적의 7/10을 가진것으로 보고 산정한다.
(이상 법 18조 1항 및 영 12조)

② 환기의 기준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거실의 종류, 용도지역의 종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바닥면적의 1/20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환기 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무방하다. 환기에 있어서는 유효한 개구부 면적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로 외기가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산정되어야 할것 이므로 붙박이창은 채광에 대하여 유효하지만 환기에 대하여는 효과가 없다.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다지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1개의 거실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주택의 거실은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설치 못한다. 다만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 이다. (이상 법18조 2항, 3항, 19조)

2) **변소의 구조** : 변소의 설치장소가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 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일 때에는 반드시 수세식구조로 하여야 한다.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제거식변소 또는 오물정화조를 설치하여 수세식 변소로 할 수 있다. 그리고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대치되는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거식 변소의 구조

(가) 대체로 변조 주위의 방수조치, 그리고 제거용개구부주위의 방습, 밀폐뚜껑의 설치와 직접 도로변에 설치금지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21조)

(나) 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 부터 10미터 이상(폐쇄식우물은 3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 폐쇄식 우물 : 지반면하 3미터 이상 매설한 것으로서 그 도수관이 불침투질로 만들어 졌거나 도수관에 안지름 25센치 이하의 외관이 있어 도수관 및 외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만들어 진것. (영26조)

② 제거식 변소의 개량변조의 구조

(가) 이 개량변조는 오물을 100일 이상 저류시키는 동안 혐기성균의 작용으로 약품없이 소화기계통의 병원균을 파괴한 다음 제거하는 구조이다. (영23조)

(나) 이 개량변조는 만수하여 24시간 이상 누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25조)

③ 수세식 변소의 오물정화조의 구조

(가) 오물정화조는 부폐조, 산화조 및 소독조를 차례로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오물정화조의 천정, 바닥, 주벽 및 격벽은 내수 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부폐조 산화조 및 소독조에는 각각 안지름40센치 이상의 망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를 밀폐할 수 있는 내수 재료 또는 주철제의 뚜껑을 하여야 한다.

(라) 부폐조는 침전분리조 및 예비여과조를 조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마) 부폐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의 용적은 당해 수세식 변소의 사용인원 15인분 까지는 0.7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용인원의 증가에 비례하여 이를 증가하여야 한다.

(바) 산화구조는 살포여과상식으로 하고 배기관및 송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통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산화조의 살수흠통의 하면과쇄석층의 상면과의 거리는 10센치 이상 쇄석층의 두께는 90센치 이상, 쇄석층의 체적은 부폐조의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용적의 ½이상, 쇄석받이의 하면과 통발과의 거리는 10센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오물 정화조에 만수하여 24시간 이상 누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24조 및 25조)

바. 건축설비의 기준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한 전기, 까스등 법2조 4호에 게기한 것을 말하는데 이중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 중에서 앞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뢰설비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법21조)

2) 승강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법22조)

3) 국기 게양대의 설치

상업지역내에 있는 폭원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2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는 지상으로부터 8미터 지점의 벽면에 높이 2미터의 국기 게양대를 도로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영 105조 1항)

4) 우편 수취함의 설치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500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때에는 그 건축물의 1층에 있는 출입구, 관리 사무소, 수위실이나 그 부근에 건설부 장관의 협의를 얻어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수취함을설치하여야 한다. (영 105조 2항)

5) 전화국선의 인입배관의 설치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설치장소까지 전화국선의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 105조의 2)

6) 방화, 소화 기타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은 소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사. 주차장 및 지하층 설치 기준

1) 주차장

(1)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개축(일부 개축 제외)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할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항에 규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주차장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22조의 2)

2) 지하층

(1)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 구조,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22조의 3)

(다음호에 계속)

改訂版 새로운 주택
設計의 基本과 應用

印刷및發行所 株式會社 寶 晉 齋
〈값 2,000 원〉

소 방 법

개정 1973. 2. 8 법률제250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주차·선거·항내에 계류된 선박·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차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편 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7.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 군수의 책임과 감독) ①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및 화기취급의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여 있는 그러한 물건의 이동 또는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관계자의 주소·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등의 이동 또는 철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락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승락없이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이를 행할 수 없다.

1. 흥행장·백화점·학교·공장·작업장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산림을 검사할 때.
3.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득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시장 또는 군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손실보상)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의 신축·개축·이전·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인가 또는 확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그 허가·인가 또는 확인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허가·인가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령의 관계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건축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3일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7일이내에 당해 행정청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① 특수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1호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
4. 소방용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정비.
5. 화기취급의 감독.
6.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 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7일이내에 관할소방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공동방화관리) ① 고층건축물 (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또는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점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것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의 작성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대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 고층건축물·학교·공동주택·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 또는 극장·카바레·호텔·병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커텐·실내장식물·전시용 합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목욕탕·연돌·화로·전기시설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의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관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압축아세찌렌까스·액화석유까스 등의 저장 또는 취급신고) 압축아세찌렌까스·액화석유까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 또는 소화가 극히 곤란한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저장수량"이라한다)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저장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10일 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소(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분된 벽이 2이상이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조소등과 제1항 단서의 장소에서의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하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을 설치하였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허가청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제조소등의 양수인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승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 ①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물취급주임은 대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보안·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한 때에는 7일이내에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위험물취급주임면허) ①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한다.

②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대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 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부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보안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시험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부적당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1조 (적성검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3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면허의 취소등)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0조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4. 위험물취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3조 (위험물시설안전원)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의 관계자는 그 제조소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규정을 정하고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청은 제 1 항의 예방규정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허가청은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자위소방조직) ① 내무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서 지정을 받은 사업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제 1 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제조소등의 감독) ① 허가청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위치·구조·설비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청은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 5 조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허가의 취소등) 허가청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2. 제1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8조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소량위험물등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관할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위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수수료)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 위치·구조·설비의 변경허가와 완공검사 또는 위험물 취급주임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소방시설

제33조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①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 소화용수·토사 및 피난설비(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소방시설의 시공) 소방설비사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16조제 1 항 및 제3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할 수 없다.

제35조 (소방설비사 면허) ① 소방설비사 면허의 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한다.

②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 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 부여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소방설비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갑종설비사"라 한다)가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와 을종 소방설비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을종소방설비사"라 한다)가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내무부령으로정한다.

④ 소방설비사의 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와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소방설비사의 면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시공신고) 소방설비사는 제16조제 1 항 및 제3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하기 10일전까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시설의 종류, 시공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소방설비사의 책무등) ① 소방설비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방시설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사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소방설비사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38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①소방용 기계·기구·설비 및 소화약제 방화도료·방화액 기타 방화약품(이하 "소방용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 및 제조소별로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허가) ①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된 소방용기계·기구 등을 실수요자에게 직매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영업정지등) 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청은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시설기준 또는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정지기간내에 행하여야 할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청은 그 자에 대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①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③ 제2항의 검정의 기준이 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분·재료·구조·규격·성능 기타 필요한 사항과 검정합격표시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전열하거나 그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감 독)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소방용 수리시설) ①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관할시 또는 군이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설치·유지와 관리를 한다.

제45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지정)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못·샘물·우물·수조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락을 얻어 이를 소방용 수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화재의 경계

제46조 (소방신호) ① 화재예방·소화활동·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하 "소방신호"라 한다)의 종류·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소방신호 또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화재위험경보)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해당 구역안에 있어서의 불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안에 있어서의 모닥불·흡연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 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하며, 그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토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화재속보설비·소화전·소방용 저수시설 소방용방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손괴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소화활동

제51조 (화재의 통지) ①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통지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 (관계자등의 소화의무)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 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으로 출동한 때에는 제차와 보행자는 이에 통로를 터양 하여야 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6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싸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방자동차가 소방서나 주차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한다.

제54조 (비교통용 도로등의 사용)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5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이와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안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대가 제1항의 방화경계 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56조 (소방응원)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인접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소화종사 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부득이 한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화재의 현장에 있는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강제처분)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화세, 기상의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받은 자는 관할시 또는 군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험이 절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관을 개폐할 수 있다.

제7장 화재의 조사

제61조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피해재산"이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2조 (강제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1조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단서(관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와 동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대한 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검사에의 사건송치 전까지 그 피의자에 대한 질문과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4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보험회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5조 (소방관과 경찰관의 상호협력등) ①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관과 경찰관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1조의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장 의용소방대

제6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징계·훈련·검열·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68조 (보 수)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과 유급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관할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 또는 군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연소의 방지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7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71조 (방공업무의 겸행등) ①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방공업의 규정에 의한 방공업무를 겸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9장 소방력기준등

제72조 (시·군의 소방력기준) 시와 군의 소방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① 시와 군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

② 제1항의 국고보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 칙

제74조 (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망루 또는 경종대를 손괴 또는 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제75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화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시설이나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52조 또는 제57조에 규정된 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76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태만히 한 자.
2. 제25조·제38조 제1항 또는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위반한 자.

제77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자.
2.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제23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7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자.

제78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6조 제2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9조 (동전)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위반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방해한 자.
2.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26조제1항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0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2. 제10조제2항·제13조 또는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수리를 변경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6.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소방훈련 또는 소방설비에 관한 명령에위반한 자.
7.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함부로 소방용의 화재탐지기·소화전·저수시설·망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8.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허위를 통지한 자.
9. 제55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정당한 이유없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판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자.

제81조 (동 전) 제9조제3항·제15조제2항·제18조제4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1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82조 (동 전) 법인의 대표자, 법인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소방서장의 직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의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중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에 있어서는 제4조·제5조·제8조·제9조제3항·제10조·제13조·제14조·제18조제4항·제30조·제33조·제36조·제45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2항·제55조 내지 제59조·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소방서장의직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③(허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저장소·또는 취급소의 설치 허가 및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수하여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구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효력)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⑤(구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의 효력) 이법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본다.

国民住宅債券

電力債券

代納 및 賣買

서울特別市 中区 太平路2가46-5

京一社

(22-3700 (직통)
(23-6000 (〃)
(22-6000 (연결)

注文方法

口座NO. 서울農協中部支所 3700
第一銀行德壽支店 6000

月刊 **建築士** 3月號

通卷 第53號 1973年 3月 31日 發行
發行人兼編輯人 姜 大 雄
登錄番號：第 라—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 23日
登錄變更：1972年 4月 12日
發行所：大韓建築士協会
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1街60－17
(太星빌딩 5층)
☎ (73) 9491, 9492, (74) 1045
印刷所：高麗文化印刷株式会社
(非賣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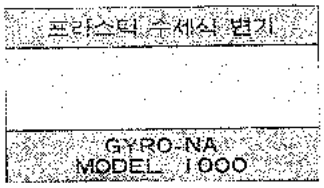

신발매

실용신안등록 제93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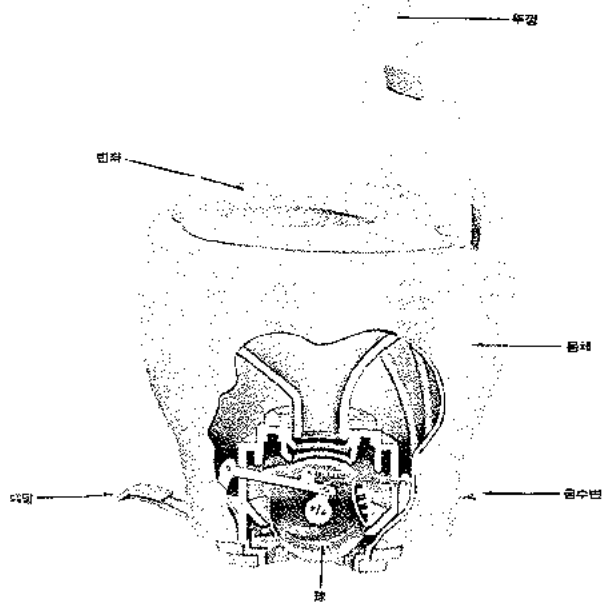

○부분적인 파손시 그 부분 교체사용 가능합니다.
○설치공사 시공이 극히 간단합니다.
○사용 水量은 1~2컵 정도로 만족합니다.
○자이로(GYRO-)볼(Ball)로 악취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자이로—나는 언제 어느 장소든지 얹어서 사용할 수 있읍니다.
○퍼내는식 및 정화조 취부 변소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읍니다.
○자이로—나는 "페달"을 밟으므로서 사용이 간단합니다.
○조용합니다.
○어린이도 상쾌한 기분으로 사용할 수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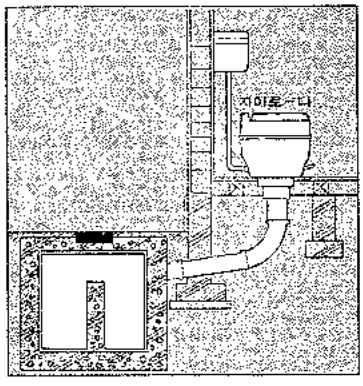

기존 사용의 콘크리트 변조에 변기만 설치하면 위생적인 변소사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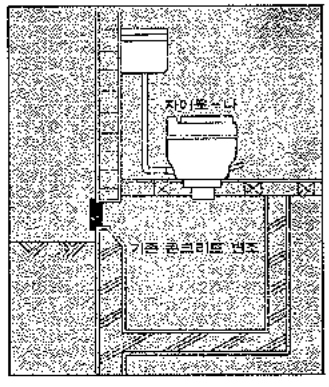

기존 사용의 정화조에 파이프만 연결 설치하여 사용하는 예.

제조원
RJC
이진상사 주식회사
RHI JIN CORPORATION
중구 북창동 93-3
삼옥 BLD. 702호
SEOUL KOREA
TEL. 23-6674, 28-8516

대리점
서울지구 영 진 상 사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125번지
진양 데파트맨숀 가 101호
27-2285, 26-2171~교72 대표 장 호 영
마산지구
경남 마산시 오동동 233의 17
TEL. 6294, 4448
대표 이 수 태

便利하고 合理的인！ —實用新案 特許 第9497號—

東光 DW型 水管式 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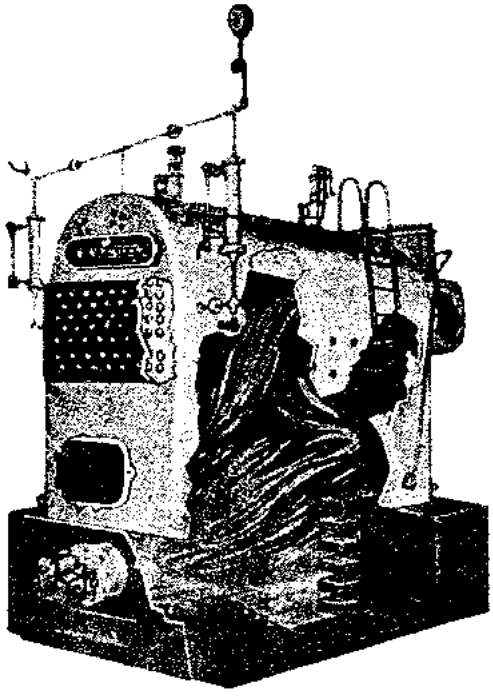

低壓 暖房用으로는 더욱 効率이 좋고 燃料가 현저히 절약됨.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産品生産奬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國會議長의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大法院長의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産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 및 科学技術賞 受賞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国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 要 納 入 處

大韓住宅公社	三岡産業 Co.	大韓染織 Co.	호 수 호 텔	京畿農産 Co.
시온제과 Co.	仁川園藝組合	同和藥品 Co.	韓獨商社 Co.	廣 日 빌 딩
自由센 타	國防部建設本部	柳韓洋行 Co.	聖바오루病院	韓 國 洋 灰
産 業 銀 行	春川聖心大學	韓國유리 Co.	大興섬유 Co.	麗水觀光호텔
大田皮革 Co.	美八軍洗濯所	韓國나일론 Co.	聖心綜合病院	第 一 病 院
서울여자 學院	大韓體育會	大韓콜크 Co.	大韓生命保險	自動車保險
韓一染色 Co.	大韓重石 Co.	清溪商街아파트	公務院訓練院	새 한 빌 딩
世 宗 호 텔	宇盛化學 Co.	大韓造船公社	林業試驗場	江 原 道 庁
中央産業 Co.	東洋紡織 Co.	올림포스호텔	南大門警察署	韓 獨 産 業
釜山鐵道廳	首都醫附屬病院	용 당 산 호 텔	大 韓 産 業	韓国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会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4의 1

電話 ㊷ 1673 ㊷ 9775－6
(용산구청앞)

工場：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

新 刊 案 内

建築計劃各論

朴 春 根 著

4·6倍版 · 500面 · 洋裝製本 · 定価 3500원

- 建築士 受験 準備用
- 建築計劃의 指針書
- 大学教材用
- 附録 : 建築士試験問題収録

지금까지 건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참고서가 출판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建築計劃各論에 대한 참고 서적이 출판된 사실이 없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금반 理工図書出版社에서는 많은 시일과 노력을 함께 하여 장래의 보다 나은 건축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침서를 출판하게 됨을 건축에 종사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서는 충실한 이론과 보다 많은 설계자료를 수록하였으며, 적은 비용으로 알찬 내용이 엮어져 있으므로 본서 한권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무리 없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며 끝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건축사 시험문제인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를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건축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더불어 지도 편달하시기 바랍니다.

理 工 図 書 出 版 社

서울 · 中区乙支路 3 街291(同星빌딩 201 号)

連絡処 : 서울…26－4370 · 69－4823 / 釜山…3－8724 · 4－6546 · 4－0049 / 大邱…2－8702

全国有名書店発売中 !

建築(新刊)書籍 案內

● **建築工事標準示方書(上)(下)** 46倍版 高級洋裝 各卷 1,200원	● **건축텍스트북** (增補版) 建築士·建設技術者 試驗指針書 값 1,800원
現 代 建 築 事 典 民 音 社 4.6倍版 아아트 값 7,000원	**응 용 역 학 문 제 집** 권동진, 백영식 공저 국판 340p 값 1,500원
토 목 구 조 물 의 설 계 구봉근 著 4.6倍版 492p 값 3,500원	**건축구조도해**(건축용어 구조마무리) 건설연구회 편 국판 344p 값 2,500원
建 設 大 法 典 건설대법전 편찬위원회 2,550p 값 4,800원	**建 說 機 械 化 施 工** 전인식 著 4.6倍版 408p 값 5,000원
建 說 大 法 典 (Ⅱ) 건설대법전 편찬위원회 2,550p 값 2,500원	**건 설 기 술 강 좌 1 ~ 9** 1권 800 2권 800원
건 축 적 산 학 장기인 著 4.6倍版 469p 값 3,000원	**공 사 의 검 사** 전인식 著 국판 594p 값 2,800원
건 설 재 료 실 험 장동일, 구봉근 共著 4.6倍版 값 1,800원	**건 축 구 조 계 산 편 람** 건설연구회 편 국판 110p 값 800원
建 築 施 工 学 장기인 著 4.6版 492p 값 3,000원	**건 축 구 조 설 계 법** 金炫山 著 4.6版 407p 값 2,500원
建 築 構 造 学 장기인 著 4.6版 314p 값 2,400원	**건 축 설 비** 김우석 著 4.6倍版 331p 값 2,000원
建 築 材 料 学 홍봉희 著 4.6倍版 263p 값 1,800원	**건 축 계 획 원 론** 朴胤成 著 국판 333p 값 2,100원
建 築 法 規 홍봉희 著 국판 238p 값 1,300원	**건 축, 토 목 용 어 사 전** 新 4.6版 299p 값 1,200원
配管工学(부록기능검정예상문제및해답) 배관협회 発行 4.6倍版 662p 값 2,000원	**韓 國 現 代 建 築 1, 2** 韓國建築家協会 刊 값 (各) 600
建 築 用 語 辞 典 金 平 卓 著 값 1,200원	**韓國建築用語事典**(1.2.3.4) 韓國建築家協会 刊 값 (各) 250

遂 発賣中!
過年度

建築士資格試驗問題集

圖書出版 省安堂 発行 4×6版 값 600원

이 책의 특징

◆ '70. '71. '72 年度에 施行한 一. 二級 建築士 資格試驗問題와 모범해답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정확히 수록하였다.

◇ 最近 改正建築法을 全載하여 수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였다.

◆ 과거의 문제와 해답을 분석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풀이를 해보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한 일이며, 앞으로 출제될 문제가 과거문제의 응용이라 생각할 때 더욱 그 복습의 의의는 크다고 보겠다.

※ 저희 숭문서점에서는 건축에 관한 서적 外에도 전기 및 기계, 자동차등 일체의 공학도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 책을 주문하실 때는 소액환을 동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전화 62-5591으로) 10원 우표 동봉하시면 자세한 도서목록을 보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 **숭 문 서 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
TEL. (62) 5591 (영등포구청 앞)

最新版建築関係原書案内

1 **建築設計資料集成** 全六巻 日本建築学会編

2) **TIME-SAVER STANDARDS**

A HAND BOOK OF ARCHITECTURAL DESIGN
McGROW-HILL BOOK COMPANY
菊倍版 總 1,320page

3) **建築工事標準詳細図** 営繕協会編 菊倍版 總 190page

4) **KARLOTTO, SCHOOL BUILDINGS**

EXAMPLES AND DEVOLOPM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BUILDINGS

菊倍版 總 216page

5) **ONE-FAMILY HOUSING**

Solutions to an Urban Dilemma

總 176page

6) **DETAIL** 全三巻

ARCHITETURAL FINISHES EDITED BY THE DESIGN DEPARTMENT OF KAJIMA CONSTRUCTION CO. LTD.

7) **OFFICE BUILDINGS**

菊倍特大版 總 250page 값 4,500
(三個月 月賦)

8) **MOTEL, HOTEL, RAUS TRANT AND BARS**

McGROW-Hill book Company
(三個月 月賦)
菊倍特大版 總 358 page 값 4,500

"주문 신청은 본사 영업부 사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信和出版社

서울특별시中区乙支路2街101~32
☎ (27) 0905, 3829

▶부 로 베 스 트◀

(Asbestos Spray)

韓國의 元祖

韓一石綿工業株式会社만이 Asbestos Spray를 朝日石綿工業株式会社로부터 伝修받았고 独特한 施工으로 처리되고 있읍니다.

特性

目 的	吸 音 用	断 熱 用	耐 火 用
比 重	0.2	0.25	0.35
熱伝導率 (kcal/m℃)	0.028+0.0001θ	0.03+0.0001θ	0.04+0.0001θ
附 着 力 (gr/cm²)	50이상	70이상	120이상

吸 音 性：騒音公害地域(工場：보이라室, 기계실), 体育館, 보링場, 강당, 집회장, 教会 연주장, 호텔, 도서실, 放送局, 시청각교실, 극장, 학원, 교환실, 병원, 부부침실, 기타 고급주택.

結露防止：목욕탕, 사우나, 터키탕, 식품제조가열실, 지하실, 옥상스라브.

耐 火 性：鉄骨, 鉄筋, 鉄板, 콩크리트, 木材, 耐火被覆.

断 熱 性：工場기관室, 선박, 주택, 빌딩 보이라室, 냉난방 보온.

耐 震 性：各種工場, 其他 震動이 심한 処所의 美装

韓一石綿工業株式会社

서울特別市 中区 乙支路6街18－131
(乙 支 会 館 601号)

TEL. 54-1311